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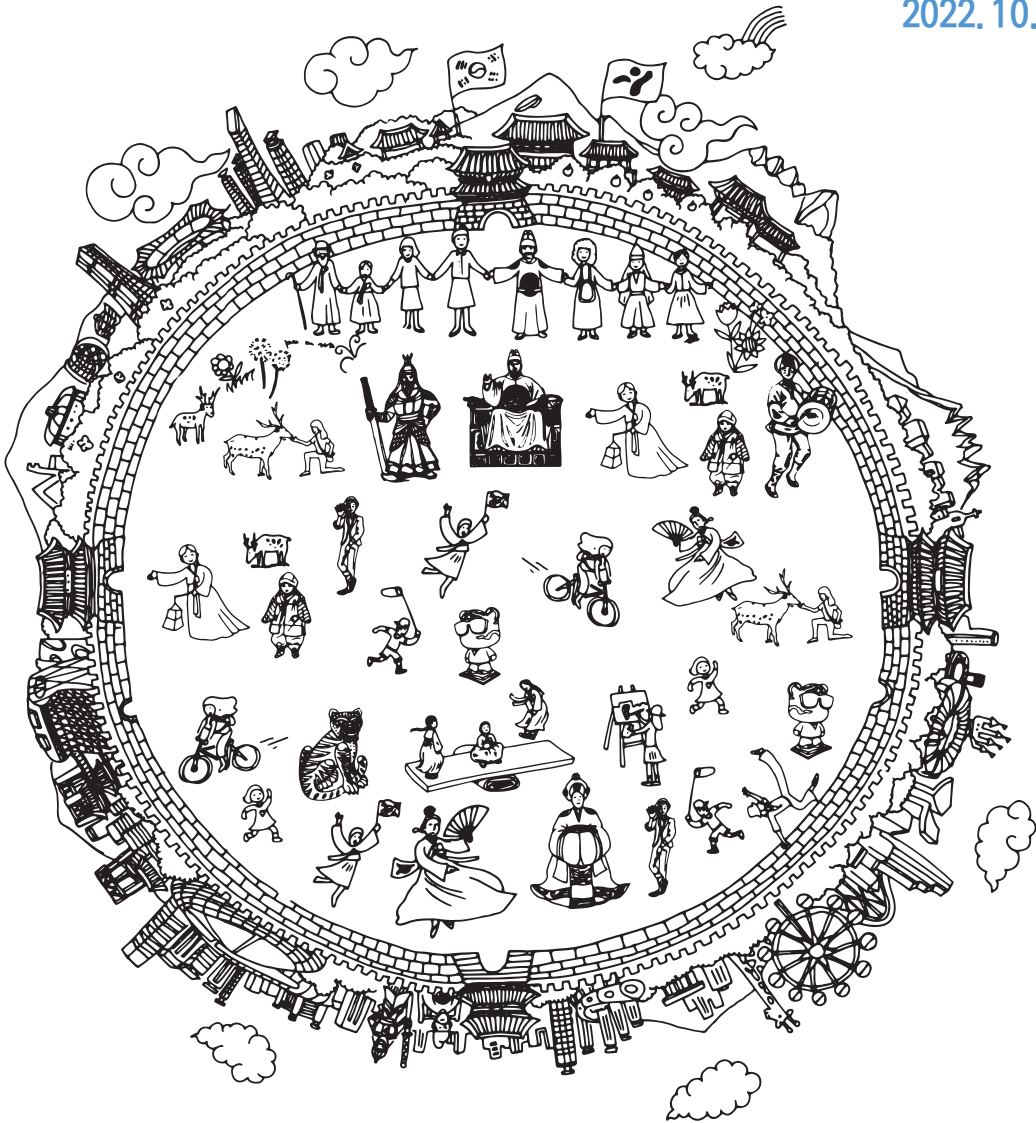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19호
2022. 10. 13.(목)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845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고 시

제2022-409호	도시관리계획(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
제2022-410호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	56
제2022-411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등록 고시	62
제2022-412호	도시관리계획(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5
제2022-413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고시	89
제2022-414호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94

◆ 공 고

제2022-2768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예고	117
제2022-2769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162
제2022-2771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163
제2022-277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164
제2022-277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168
제2022-2777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69
제2022-27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사업기간 정정)	179
제2022-2787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180

◆ 구 고 시

제2022-1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광진구)	181
제2022-193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도봉구)	187
제2022-130호	관리처분계획(환지방식) 변경 인가 및 부분 공사완료 고시(노원구)	190
제2022-1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196

제2022-15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198
제2022-147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폐지(취소) 고시(동작구)	200
제2022-200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공무원9단지)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203

◆ 구 공 고

제2022-1179호	도시공원(인왕산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종로구) ...	213
제2022-14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도봉구)	214
제2022-1268호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서대문구) ..	218
제2022-1825호	도시관리계획(공항동 61-1번지 일원 송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주택법 의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강서구)	239
제2022-18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강서구)	244
제2022-1631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동작구)	245
제2022-165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	246

◆ 사업소고시

제2022-34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49
제2022-34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49
제2022-34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50
제2022-34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50
제2022-34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51
제2022-34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51
제2022-35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52
제2022-3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52

◆ 기 타

제2022-21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53
------------	------------------------------	-----

자치법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45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건립기금”을 “건립 기금”으로 한다.

제2조 중 “건립기금”을 “건립 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용어 띄어쓰기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09호

도시관리계획(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26호(1996.12.10.)로 지구단위계획구역(중전 상세계획구역) 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68호(2000.3.29.)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70호(2013.3.1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된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2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2.7.1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장

I. 결정 취지

- 상계동 1132-11 일대의 토지이용 효율성 향상 및 생활권 중심지의 역할 수행 등 계획적인 개발 유도하고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3종일반주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세부개발계획 수립시)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구 역	수락 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노원구 상계동 1132-9 일대	70,083	감)815	69,268	서울특별시 고시 제326호 (1996.12.10)

※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면적 815㎡ 감소	· 2030 생활권계획에 의해 지구중심으로 위계상향 반영하여 구역명칭 변경 · 구역내 비오름 1등급 제척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0,083	감)815	69,268	100.0	구역면적 감소
주거지역	소 계	56,468	-	56,468	81.5	
	제1종 일반주거지역	8,916	-	8,916	12.9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94	-	1,794	2.6	
	제3종 일반주거지역	15,577	-	15,577	22.5	
	준주거지역	30,181	-	30,181	43.5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615	감)815	12,800	18.5	

※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2)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상계동 산44-106일대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감)815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반영

2.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없음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8	35	간선도로	10,950 (303)	상계동 (대1-15교점)	상계동시계	일반 도로	건고시 제53 (1969.8.27)	동일로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292	상계동 1118-48	상계동 1132-40	일반 도로	서고시 제68 (2000.4.4)	동일로 241길
기정	중로	1	76	20	집산도로	470 (146)	도봉로 (광로17)	도봉로 (대1-18)	일반 도로	건고시 제3875 (1970.8.7)	동일로 243길
기정	소로	3	A	6	국지도로	557 (42)	상계동 1116-1	상계동 1000	일반 도로	서고시 제60 (1974.5.17)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80 (42)	상계동 1117-54	상계동 1117-90	일반 도로	노원구고시 제42 (1994.9.26)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05	상계동 1116-101	상계동 산44-91	일반 도로	노원구고시 제42 (1994.9.26)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27	상계동 1115-18	상계동 1115-4	일반 도로	서고시 제68 (2000.4.4)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98	상계동 1132-144	상계동 1132-28	일반 도로	서고시 제68 (2000.4.4)	
기정	소로	3	5	4	국지도로	48	상계동 1119-99	상계동 1119-17	일반 도로	서고시 제68 (2000.4.4)	
기정	소로	3	B	6	국지도로	760	상계동 1115-1	상계동 1163-9	일반 도로	서고시 제185 (1973.12.11)	
기정	소로	3	6	4	국지도로	64	상계동 1117-14	상계동 1117-9	일반 도로	서고시 제68 (2000.4.4)	
기정	소로	3	7	4	국지도로	25	상계동 1117-11	상계동 1117-45	일반 도로	서고시 제68 (2000.4.4)	
기정	소로	3	8	4	국지도로	74	상계동 1117-13	상계동 1117-16	일반 도로	서고시 제68 (2000.4.4)	
기정	소로	3	9	4	국지도로	27	상계동 1119-14	상계동 1132-35	일반 도로	서고시 제68 (2000.4.4)	
기정	소로	3	10	4	국지도로	27	상계동 1115-3	상계동 1132-101	일반 도로	서고시 제68 (2000.4.4)	
기정	소로	3	11	4	국지도로	36	상계동 1132-9	상계동 1118-80	일반 도로	서고시 제68 (2000.4.4)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242	상계동 1119-9	상계동 1131-37	일반 도로	서고시 제68 (2000.4.4)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7	상계동 1117-86	상계동 1132-113	일반 도로	서고시 제68 (2000.4.4)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621 (56)	상계동 1119-5	상계동 1001	일반 도로	서고시 제185 (1973.12.11)	
기정	소로	2	B	8	구획도로	44	상계동 1119-16	상계동 1119-69	일반 도로	노원구고시 제42 (1994.9.26)	
기정	소로	2	C	8	국지도로	36	상계동 1146-6	상계동 1146-13	일반 도로	노원구고시 제79 (2000.7.6)	
기정	소로	1	A	10	국지도로	31	상계동 1132-16	상계동 1132-16	일반 도로	노원구고시 제27 (2003.5.15)	

주) 괄호내용은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해당사항임

2) 자동차정류장 : 변경없음

가)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자동차 정류장	-	상계동 1132-57	2,756	-	2,756	서울특별시 고시 제278호 (1979.6.29)	

3) 철도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철도	도시 철도	노원구 상계동 1115 일대	5,750	서울특별시 고시 제363호 (95.12.23)	

나. 공간시설

1) 공공공지 : 변경없음

가)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 공지	상계동 1119-12일대	256	-	256	서울특별시 고시 제68호 (2000.4.4)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규모

구분	가구번호		비고
	기정	변경	
가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변경 없음

나. 획지계획

1) 획지계획(변경)조서

구분	획지번호		비고
	기정	변경	
획지	①-1, ①-2, ①-3, ①-4, ①-5, ①-6, ①-7, ①-8, ②-1, ②-2, ②-3, ②-4 ③-1, ③-2, ③-3	-	획지 계획 폐지

2) 획지계획 세부 결정(변경)조서

기정			변경		
획지번호	면적(㎡)	위치(상계동)	획지번호	면적(㎡)	위치
①-4	1,953	1132-1	-		
①-3	343	1132-59	-		
①-1	931	1132-74, 1132-28, 1132-166, 1118-95	-		
①-2	443	1132-71, 1132-63	-		
①-5	857	1118-96, 1132-162, 1132-23	-		
①-6	1,810	1118-93, 1132-144, 1132-148, 1132-149	-		
①-7	673	1132-73, 1118-97, 1118-99, 1132-170	-		
①-8	839	1132-34, 1118-100	-		
②-1	385	1115-5, 1119-141, 1132-143	-		
②-2	515	1115-3, 1115-13, 1132-101, 1119-142, 1132-171	-		
②-3	742	1115-14, 1132-102, 1119-119, 1115-4	-		
②-4	487	1115-6, 1115-17, 1119-119, 1132-105	-		
③-1	591	1117-4, 1117-8, 1117-86, 1117-92, 1119-121, 1132-2, 1132-107	-		
③-2	834	1119-4	-		
③-3	301	1119-95	-		

☐ 획지계획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획지계획 폐지	• 공동개발 활성화 유도 및 동일소유자(기공동개발 포함) 대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완화

다. 공동개발

■ 지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치	면적(㎡)	비고
①	①	상계동 1132-66대	891.0	◦공동개발 지정 : 1132-75, 112 ◦공동개발 권장 : 1132-66, 75
		상계동 1132-75대		
		상계동 1132-112대		
②		상계동 1132-61전	1,067.0	◦공동개발 권장
		상계동 1132-14대		
①	②	상계동 1115-2대	594.0	◦공동개발 지정
		상계동 1115-10대		
		상계동 1119-140대		
②		상계동 1132-35대	965.0	◦공동개발 지정 (1119-14는 1132-35로 합필)
		상계동 1119-146도		
③	③	상계동 1132-35대	1,380.0	◦공동개발 지정 : 1118-1, 1119-66 ◦공동개발 권장 : 1132-35, 1119-66
		상계동 1118-1대		
		상계동 1119-66대		
①		상계동 1119-116도	759.0	◦공동개발 지정
		상계동 1131-13대		
		상계동 1131-37대		
		상계동 1131-104대		
②		상계동 1131-14대	238.0	◦공동개발 지정
		상계동 1131-78대		
		상계동 1131-81대		
③	④	상계동 1115-7대	552.0 (구적면적)	◦공동개발 지정 ※ 1115-7, 1119-28 획지분할 가능선 (도면참조)
		상계동 1115-8대		
		상계동 1115-27대		
		상계동 1119-28도		
④		상계동 1115-7대	282.0 (구적면적)	◦공동개발 지정 ※ 1115-7, 1119-28 획지분할 가능선 (도면참조)
		상계동 1115-21전		
		상계동 1115-23대		
		상계동 1119-28도		
①	⑥	상계동 1117-9대	255.0	◦공동개발 지정 : 1117-10, 45, 46 ◦공동개발 권장 : 1117-9, 10
		상계동 1117-10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상계동 1117-45대		
		상계동 1117-46대		
②		상계동 1117-9대	220.0	◦공동개발 지정
		상계동 1117-11대		
③		상계동 1117-22대	169.0	◦공동개발 지정
		상계동 1117-48대		
④		상계동 1119-17대	310.0	◦공동개발 권장
		상계동 1119-22대		
⑤		상계동 1119-16대	483.0	◦공동개발 권장 ※ 대지교환 가능성(도면참조)
		상계동 1119-26대		
⑥		상계동 1119-9전	276.0	◦공동개발 지정
		상계동 1119-107전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치	면적(㎡)	비고
①	①	상계동 1132-66대	891.0	◦공동개발 지정 : 1132-75, 112 ◦공동개발 권장 : 1132-66, 75
		상계동 1132-75대		
		상계동 1132-112대		
②		상계동 1118-95전	931.0	◦공동개발 지정 : 1132-28, 74 ◦공동개발 권장 : 1132-28, 1118-95 / 1132-28, 166
		상계동 1132-28대		
		상계동 1132-74대		
		상계동 1132-166대		
③		상계동 1132-63대	443.0	◦공동개발 지정
		상계동 1132-71대		
④		상계동 1132-61전	1,067.0	◦공동개발 지정 : 1132-14, 61 ◦공동개발 권장 : 1132-14, 59
		상계동 1132-14대		
		상계동 1132-59대		
⑤		상계동 1118-96전	857.0	◦공동개발 권장 : 1132-23, 162 / 1132-23, 1118-96
		상계동 1132-23대		
		상계동 1132-162대		
⑥		상계동 1118-93대	1,787.0	◦공동개발 지정
		상계동 1132-144대		
		상계동 1132-148대		
		상계동 1132-149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치	면적(㎡)	비고
⑦		상계동 1118-97대	673.0	◦공동개발 지정
		상계동 1118-99대		
		상계동 1132-73대		
		상계동 1132-170대		
①	②	상계동 1115-2대	594.0	◦공동개발 지정 : 1115-10, 1119-140 ◦공동개발 권장 :1115-2, 10
		상계동 1115-10대		
		상계동 1119-140대		
②		상계동 1115-5대	385.0	◦공동개발 지정
		상계동 1119-141대		
		상계동 1132-143전		
③		상계동 1115-3전	515.0	◦공동개발 지정 : 1115-3, 13 / 1132-171, 1132-101 ◦공동개발 권장 : 1119-142, 1132-171 / 1119-142, 1115-13
		상계동 1115-13전		
		상계동 1119-142대		
		상계동 1132-101전		
		상계동 1132-171전		
④		상계동 1115-4대	742.0 (구적면적)	◦공동개발 권장 ※ 1119-119 획지분할 가능성 (도면참조)
		상계동 1115-14도		
		상계동 1119-119도		
		상계동 1132-102대		
⑤		상계동 1115-6대	487.0 (구적면적)	◦공동개발 권장 ※ 1119-119 획지분할 가능성 (도면참조)
		상계동 1119-119도		
		상계동 1132-105대		
①	③	상계동 1117-4도	662.0	◦공동개발 지정 : 1132-2, 107 / 1117-4, 8, 86, 92 ◦공동개발 권장 : 1119-121, 1132-2 / 1119-121, 1117-92
		상계동 1117-8대		
		상계동 1117-86도		
		상계동 1117-92도		
		상계동 1119-121대		
		상계동 1132-2대		
		상계동 1132-107대		
②		상계동 1132-35대	965.0	◦공동개발 권장
		상계동 1119-146도		
③		상계동 1118-1대	1,380.0	◦공동개발 지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상계동 1119-66대		
①	④	상계동 1131-13대	403.0	◦공동개발 지정
		상계동 1131-37대		
		상계동 1131-104대		
②		상계동 1131-14대	238.0	◦공동개발 지정
		상계동 1131-78대		
		상계동 1131-81대		
③		상계동 1115-7대	471.0	◦공동개발 권장
		상계동 1115-8대		
		상계동 1115-27대		
④		상계동 1115-21전	179.0	◦공동개발 권장
		상계동 1115-23대		
①	⑤	상계동 1115-18대	901.0	◦공동개발 권장
		상계동 1115-31대		
①	⑥	상계동 1117-9대	255.0	◦공동개발 권장
		상계동 1117-10대		
②		상계동 1117-9대	220.0	◦공동개발 권장
		상계동 1117-11대		
③		상계동 1117-22대	169.0	◦공동개발 권장
		상계동 1117-48대		
④		상계동 1117-16대	925.0	◦공동개발 지정
		상계동 1117-17대		
⑤		상계동 1119-17대	330.0	◦공동개발 지정 : 1119-22, 147 ◦공동개발 권장 : 1119-17, 22
		상계동 1119-22대		
		상계동 1119-147대		
⑥		상계동 1119-16대	483.0	◦공동개발 권장
		상계동 1119-26대		
⑦		상계동 1119-9전	276.0	◦공동개발 권장
		상계동 1119-107전		
⑧		상계동 1117-6	601.0	◦공동개발 지정
		상계동 1117-57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불허용도

구분	기정		변경		비고
	A	B	A	B	
불허 용도	• 단독주택	• 공장 • 정신병원 및 요양소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주차장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장례식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주거복합 제외)	• 공장 •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옥외에 철타이 있는골프연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공동주택 불허(주거복합 제외) • 옥외에 철타이 있는골프연습장 불허 • 요양소, 장례식장 불허용도에서 제외	• 동일로변 상업가로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제한 및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세차장, 옥외에 철타이 있는골프연습장 불허 • 생활지원기능으로 요양소, 장례식장 허용

나. 권장용도

■ 기정

구분	가	나	1(1층권장)	비고
권장 용도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아동관련시설	• 소매시장(쇼핑센터) • 병원 • 학원 •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2층이상),사무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상점	

주) 권장용도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20%이상(1층권장은 바닥면적의 40%) 권장용도를 수용해야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봄

■ 변경

구분	가	나	1(1층권장)	비고
권장 용도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소매시장(쇼핑센터) • 병원 • 학원 •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2층이상),사무소)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 권장용도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20%이상(1층권장은 바닥면적의 40%) 권장용도를 수용해야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봄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층 권장용도 일반 및 휴게음식점으로 제한 - 판매, 업무, 문화시설(공연장, 전시장) - 권장용도 계획	- 생활권 계획 변경 및 가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해 동일로변으로 1층 권장용도 조정 및 정비 - 지구중심 활성화를 위해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권장용도 도입

다. 건축물 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1) 건폐율 : 변경 없음

구분	적 용 기 준		비고
	기정	변경	
준주거지역	60% 이하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2) 용적률 : 변경 없음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기준	허용	상한	기준	허용	상한	
준주거지역	300%	360%	400%	300%	360%	400%	

주) 준주거지역(변경시점:1991.5.11이후)의 주거부분의 용적률은 250%이하 적용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기정

가) 용적률 완화 항목 - 공통사항

- ①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20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00분의5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 ④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의무형 인센티브	유도형 인센티브	규제형 인센티브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이내	친환경계획 준수시(20%이상)	특정목적 유도계획 준수시(30%이상)	규제성격의 계획 준수시(50%이내)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 ⑤ 권장용도의 면적은
 - 전층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 1층 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 4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⑥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 시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⑦ 미관지구내 건축선 보다 추가하여 건축한계선으로 결정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 시 제외)
- ⑧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나) 용적률 완화 항목 - 지역별 적용사항

< 환경친화적 건축물 항목(의무형) >

항목	조건	완화기준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1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1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2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12이내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02이내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12	기준용적률×0.02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12	기준용적률×0.02
신재생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0.12	기준용적률×0.02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1등급	기준용적률×0.24	기준용적률×0.04
	2등급	기준용적률×0.12	기준용적률×0.02

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유형

구분(위치)	유형	비고
특별계획구역	A1	
특별계획구역(자동차경주장 시설부지)	A2	
준주거지역 ①(동일로 간선부)	A3	
준주거지역 ②,③(동일로 간선부+이면부)	A4	
준주거지역 ④,⑤,⑥(동일로 이면부)	A5	

① 인센티브 유형 A1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예정)	
위치특성	간선도로변	
기준/허용용적률	50/110	

구분		계획내용	비고
중점계획목표		•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녹지축 형성 • 공동개발을 통한 적정개발 규모 확보 • 지하철출입구 대지내 이전유도	
항목	세분	원화기준	
규제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3
		획지분할개발	기준용적률×0.2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도시경관개선	지하철출입구	기준용적률×0.3
유도	획지계획	필지교환	기준용적률×0.4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div \text{주차장제외 건축면적}) \times 3$ • 건축면적의 20%이상

② 인센티브 유형 A2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특별계획구역2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예정)	
위치특성		간선도로변, 자동차정류장	
기준/허용용적률		50/110	
중점계획목표		• 자동차정류장 시설의 활성화	
항목	세분	원화기준	
규제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3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유도	획지계획	필지교환	기준용적률×0.5
	건축물 용도	특정층개방 (휴게공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div \text{해당층바닥면적}) \times 1.2$ • 건축바닥면적 50%이상

③ 인센티브 유형 A3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Ⅰ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동일로 간선부, 철쭉길변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구분		계획내용	비고
중점계획목표		- 역세권 활성화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완충적인 용도 필요로 인한 권장용도 유도 -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씬지형공지,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조성유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규제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06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0.1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0.1
유도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0.1
		자율	기준용적률× α - 자율공동개발통합 - 토지소유자(α) - 2인 0.06 - 3인 0.07 - 4인 0.08 - 5인 이상 0.10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 건축면적)}×0.3
	대지내 공지	씬지형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α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α
			- 건축면적의 20%이상 - 피로티=0.5 - 침상형=0.8 - 개방형=1
			- 피로티=0.5 - 침상형=0.8 - 개방형=1
			- 피로티=0.5 - 개방형구조=1

④ 인센티브 유형 A4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②,③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동일로 간선부,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중점계획목표	- 역세권 활성화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완충적인 용도 필요로 인한 권장용도 유도 -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씬지형공지, 공개공지 조성유도	

구분		계획내용		비고
항목	세분	완화기준		
규제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06	
	대지내 공지	건축 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0.06	
유도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0.06	
		자율	기준용적률× a	- 자율공동개발통합 - 토지소유자(a) - 2인 0.06 - 3인 0.07 - 4인 0.08 - 5인 이상 0.10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 건축면적)}×0.3	건축면적의 20%이상
		1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해당층 바닥면적)×0.15	건축바닥면적의 40%이상
	대지내 공지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a	피로티=0.5 /침상형=0.8/개방형=1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a	피로티=0.5 /침상형=0.8/개방형=1

⑤ 인센티브 유형 A5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④, ⑤, ⑥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등일로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중점계획목표		- 역세권 활성화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완충적인 용도 필요로 인한 권장용도 유도 -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조성유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구분			계획내용	비고
규제	획지계획	획지단위 개발	기준용적률×0.06	
		필지분할	기준용적률×0.08	
	대지내 공지	건축 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2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0.06	
유도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0.06	
		자율	기준용적률× α	• 자율공동개발통합 • 토지소유자(α) - 2인 0.07 - 3인 0.08 - 4인 0.09 - 5인이상 0.10
	획지계획	필지교환	기준용적률×0.06	
	건축물용도	1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해당층 바닥면적)×0.3	• 건축바닥면적의40%이상

■ 변경

가) 용적률 완화 항목 - 공통사항

- ①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의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의 인센티브는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친환경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고 100분의 30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을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할 수 없다.
- ③ 친환경 인센티브를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친환경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 가능하다.
- ④ 권장용도의 면적은
 - 전층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 1층 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 4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⑤ 획지계획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 시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⑥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으로 조성된 대지내 공지 면적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다.
- ⑦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유형

구분(위치)	유형	대상범위
준주거지역 (동일로 서측)	A1	
준주거지역 (동일로 동측 간선부)	A2	
준주거지역 (동일로 이면부)	A3	

① 인센티브 유형 A1

항목	세분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0.1	
	권장	기준용적률×0.1	
	자율	기준용적률× α	- 자율공동개발통합 - 토지소유자(α) - 2인 0.06 - 3인 0.07 - 4인 0.08 - 5인 이상 0.10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 건축면적)}×0.3	건축면적의 20%이상
	1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해당층 바닥면적)×0.15	건축바닥면적의 40%이상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0.5 - 침상형=0.8 - 개방형=1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0.5 - 침상형=0.8 - 개방형=1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 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0.5 - 개방형구조=1
주차계획	공동주차 출입구	기준용적률×0.1	
	화물 조업주차	기준용적률×0.05	서울특별시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준수시

② 인센티브 유형 A2

항목	세분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 $\times 0.06$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0.06$	
	자율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자율공동개발통합 - 토지소유자(α) - 2인 0.06 - 3인 0.07 - 4인 0.08 - 5인 이상 0.10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div \text{주차장제외 건축면적}) \times 0.3\}$	건축면적의 20% 이상
	1층권장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div \text{해당층 바닥면적}) \times 0.15$	건축바닥면적의 40% 이상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0.5$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피로티=0.5 - 침상형=0.8 - 개방형=1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 \text{의무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피로티=0.5 - 침상형=0.8 - 개방형=1
주차계획	화물조업 주차	기준용적률 $\times 0.05$	서울특별시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준수시

③ 인센티브 유형 A3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 $\times 0.06$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0.06$	
	자율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자율공동개발통합 - 토지소유자(α) - 2인 0.07 - 3인 0.08 - 4인 0.09 - 5인 이상 0.10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3$	
주차계획	화물조업 주차	기준용적률 $\times 0.05$	서울특별시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준수시

다)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 공통사항

구분	세 분	계획내용		비 고
환경 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 건축 인증	최우수등급 : 기준용적률 × 0.12 우수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우량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기준용적률 × 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대상 준수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1등급 : 기준용적률 × 0.08 2등급 : 기준용적률 × 0.06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2등급 : 기준용적률 × 0.10 3등급 : 기준용적률 × 0.08 4등급 : 기준용적률 × 0.06 5등급 : 기준용적률 × 0.04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신재생에너지 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준용 공급의무 비율 ※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3% 초과시
	중수도 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x 0.02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 관리 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x 0.02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0.05 또는 대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지면적 × 0.02 지면적이 되도록 설치 -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 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2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 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02		- 기준용적률 × 0.05 이내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용적률 완화 적용 기준, 항목 및 완화량 조정	• 교통영향평가 반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계획 수립

4) 최고높이 결정에 관한 변경(변경)조서

구분	적용기준		비고
	기정	변경	
동일로 243길(노원교갈)	45m이하	45m이하	
동일로(간선부)	55m이하	55m이하	
동일로(이면부)	35m1)이하	30m이하	

- 1)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지면적 약 500㎡ 이상 및 정형화)에 의해 최고높이적용(‘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배제)하며 그 외는 개별필지별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 $H = (W + L/2) \times A$

※ H : 건축물의 높이

W : 대지가 접한 전면(前面)도로의 너비

－ 대상대지가 2개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

·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

를 적용

－ 막다른 도로의 경우 막다른 도로의 너비를 전면도로로 정함

－ 폭이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 = 대상대지의 전면도로 면적/대지와 접한 전면도로 길이

L : 가로구역 내 당해 대지 기준 좌우 2필지씩 합계 5필지 내 평균 종심(縱深) 길이

－ 주변 필지와와의 조화를 위해 대상대지와 같은 전면도로에 접한 좌우 필지의 길이 반영

A :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의 너비별 높이 계수

용도지역	전면도로 너비별 계수
전용일반주거지역	6m 이하 1.8 / 6m 초과 1.5
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4m 이하 2 / 6m 이하 1.8 / 6m 초과 1.5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동일로 이면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변경	• 지구중심 위계 상향 및 용도지역(준주거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동일로 이면부 최고높이계획 변경

3.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배치계획 : 변경없음

구분	적용지역	기정	변경	비고
건축한계선	동일로변(간선부)	3m	3m	결정도면 참고
	동일로243길	2m	2m	
	동일로241길	2m	2m	
	동일로변(이면부)	1m	1m	
	공공보행통로	3m	3m	

4.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계획내용	공동주차 출입구	인접필지간 공동조성	결정도면 참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동일로 간선부(243길 일부)	
	차량출입 허용가능구간	-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 허용가능구간	- 주요도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를 위해 확대 - 공동개발 미이행시 간선변 차량진출입 불가피한 경우 차량출입 허용

나.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공지	쌈지형공지	7개소	결정 도면 참고
	공개공지	2개소	
통로	공공 보행통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1개소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대지내공지	• 주요 결절부 공지 확보 및 개발규모를 고려하여 기존 공지계획 조정 및 추가 신설

다. 생태면적률: 변경 없음

건축유형	생태면적률 기준	비고
일반주택(개발면적 660㎡미만)	20%이상	
일반주택(개발면적 660㎡이상)	30%이상	
일반건축물(업무판매·공장 등)	20%이상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운전학원)	20%이상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30%이상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총괄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1	• 상계동 1146-26 일대	4,470	-	4,470	
기정	특별계획구역2	• 상계동 1138-5 일대	3,229	-	3,229	
기정	특별계획구역3	• 상계동 1132-11 일대	1,499	-	1,499	
기정	특별계획구역4	• 상계동 1131-4 일대	2,546	-	2,546	
변경	특별계획구역5	• 상계동 산44-90 일대	1,871	감)815	1,056	

주)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지적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구역면적 감소 - 개발지침 변경	- 비오톱 1등급 제척 - 용도지역 세분 조정계획으로 개발지침 변경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특별계획구역 1

가) 구역 : 변경 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 1	상계동 1146-26 일원	4,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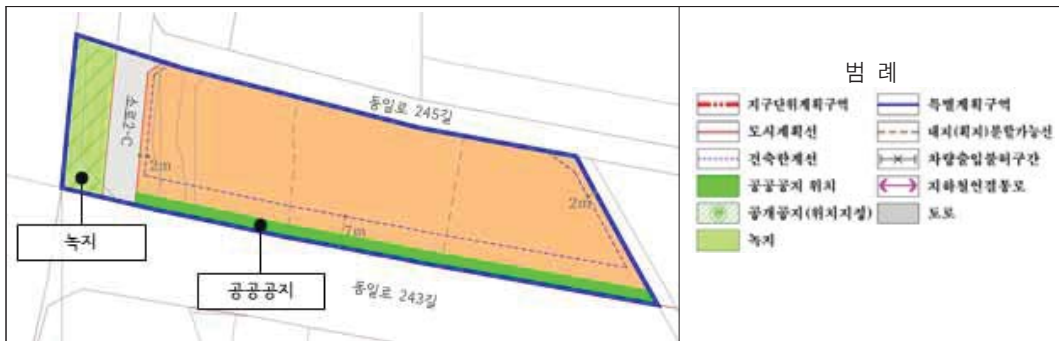
나) 계획지침

■ 지정

구분		계획지침	비고
용도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공공공지, 녹지, 도로) 위치지정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순부담: 10%이상 기부 채납
획지 계획	획지분할 가능선	• 1146-13,1141-18,1141 사이에 획지분할가능선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전시장, 아동관련시설	
	불허용도 (B)	• 공장, 정신병원 및 요양소,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식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50% 이하 / 허용 110% 이하 / 상한 150% 이하	
	최고높이	• 4층 이하	
기타 사항	건축 한계선	• 동일로 243길변: 4m • 소로2-C변: 2m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가(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채납 면적 및 선형 변경 가능

<특별계획구역1 계획도>



■ 변경 : 통합개발

구 분		개 발 지 침	비고
면적		4,470㎡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공공기여 주)		• 순부담30%이상 도시기반시설(도로, 녹지 등) 및 공공시설(건축물)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결정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가)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1층 권장용도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불허용도 (B)	• 공장,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2층근린생활시설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건축물 밀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 50% 이하 / 허용 180% 이하 / 상한 250% 이하	
	최고높이	• 45m 이하	
기타 사항	건축한계선	• 동일로 243길변 3m, 동일로 245길변 2m • 소로2-C변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2m	
	건축물 형태	• 고층부(3층 이상) 건축선 후퇴(대지경계선에서 9m)	
	차량출입 불허구간	• 동일로243길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공공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4m) 조성	
	대지내공지	• 공개공지: 설치의무면적 + 5%	
	정차공간	• 세부개발계획수립시 동일로 245길 일방도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차량 정차공간 등 조성 방안 검토	시행지침 예시 참조

주)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전면공지, 건축선 후퇴, 공개공지 추가 설치 등 건축계획 관련지침과 건축디자인 개선 등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5%p 이내에서 완화 가능

<특별계획구역1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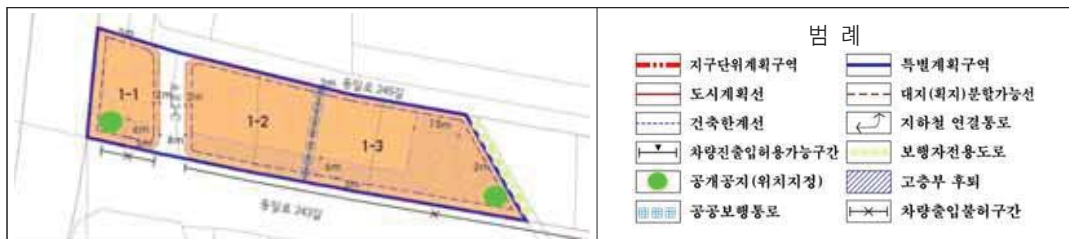


■ 변경 : 분할시행

구 분		개 발 지 침	비고
면적		1-1 : 801㎡	
		1-2 : 1,404㎡	3,355㎡
		1-3 : 1,951㎡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공기여 주)		• 순부담30%이상 도시기반시설(도로, 녹지 등) 및 공공시설(건축물)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결정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가)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1층 권장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불허용도 (B)	• 공장,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옥외 철타이 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있는 골프연습장, 제2종근린생활시	
건축물 밀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 50% 이하 / 허용 180% 이하 / 상한 250% 이하	
	최고높이	• 45m 이하	
기타 사항	건축 한계선	• 동일로 243길변 3m, 동일로 245길변 2m • 소로2-C변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2m	
	건축물 형태	• 고층부(3층 이상) 건축선 후퇴(대지경계선에서 9m)	
	차량출입 불허구간	• 동일로243길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공공 보행통로	• 1-2 및 1-3 사이 공공보행통로(4m) 조성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설치의무면적 + 5%(분할시행시 시행지구별로 확보)	
	정차공간	• 세부개발계획수립시 동일로 245길 일방도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차량 정차공간 등 조성 방안 검토	시행지침 예시 참조

주)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전면공지, 건축선 후퇴, 공개공지 추가 설치 등 건축계획 관련지침과 건축디자인 개선 등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5%p 이내에서 완화 가능

<특별계획구역1 계획도>



2) 특별계획구역 2

가) 구역 : 변경 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 2	상계동 1138-5 일원	3,229	자동차정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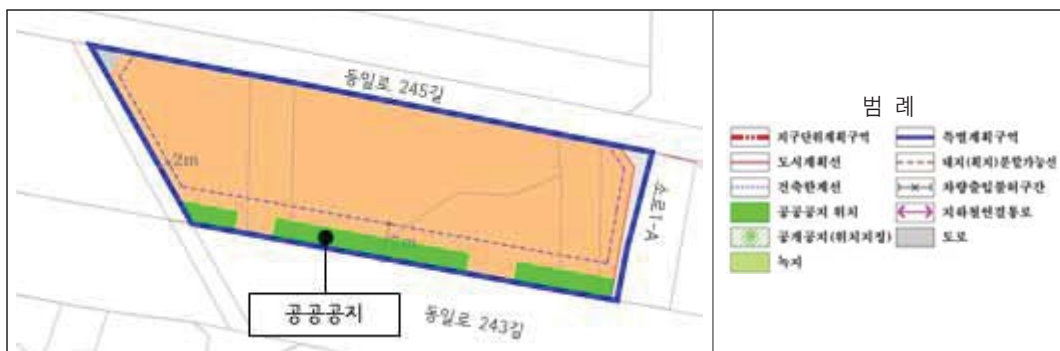
나) 계획지침

■ 기정

구분	계획지침	비고
용도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도로, 공공공지) 위치지정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순부담 : 10%이상 기부채납
건축물 용도	관장용도 (가)	-
	불허용도 (B)	공장, 정신병원 및 요양소,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식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50% 이하 / 허용 110% 이하 / 상한 150% 이하
	최고높이	• 4층 이하
기타 사항	건축한계선	- 동일로 243길변 : 4m, 3m - 소로 1-A변 : 2m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채납 면적 및 선형 변경 가능

<특별계획구역2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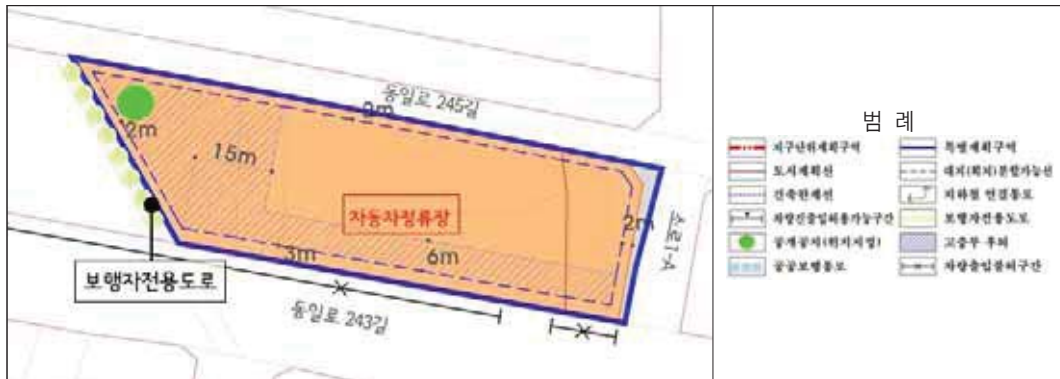


■ 변경

구 분		개 발 지 침	비고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공공기여 주)		• 순부담30%이상 도시기반시설(도로, 녹지 등) 및 공공시설(건축물)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버스터미널 공간적 범위결정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가)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1층 권장용도	-	
	불허용도 (B)	• 공장,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옥의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축물 밀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존 50% 이하 / 허용180% 이하 / 상한 250% 이하	
	최고높이	• 45m 이하	
기타 사항	건축한계선	• 동일로 243길변 3m, 동일로 245길변 2m • 소로1-A변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2m	
	건축물형태	• 고층부(3층 이상) 건축선 후퇴(대지경계선에서 9m)	
	차량출입 불허구간	• 동일로243길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대지내공지	• 공개공지: 설치의무면적 + 5%	
	정차공간	• 세부개발계획수립시 동일로 245길 일방도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차량 정차공간 등 조성 방안 검토	시행지침 예시 참조

주)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전면공지, 건축선 후퇴, 공개공지 추가 설치 등 건축계획 관련지침과 건축디자인 개선 등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5%p 이내에서 완화 가능

<특별계획구역2 계획도>



3) 특별계획구역 3

가) 구역 : 변경 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 3	상계동 1132-11 일원	1,499	

나) 계획지침

■ 기정

구분		계획지침	비고
용도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도로, 공공공지) 위치지정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순부담 :10%이상 기부채납
획지계획	획지분할 가능선	• 1132-11,1132-12,1132-13,1132-15사이에 획지분할가능	
건축물 용도	관장용도 (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전시장, 아동관련시설	
	불허용도 (B)	• 공장, 정신병원 및 요양소,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식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50% 이하 / 허용 110% 이하 / 상한 150% 이하	
	최고높이	• 4층 이하	
기타 사항	건축한계선	• 동일로 243길변 : 4m • 동일로변: 3m • 소로 1-A변: 2m	
	차량출입 불허구간	• 동일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채납 면적 및 선형 변경 가능

<특별계획구역3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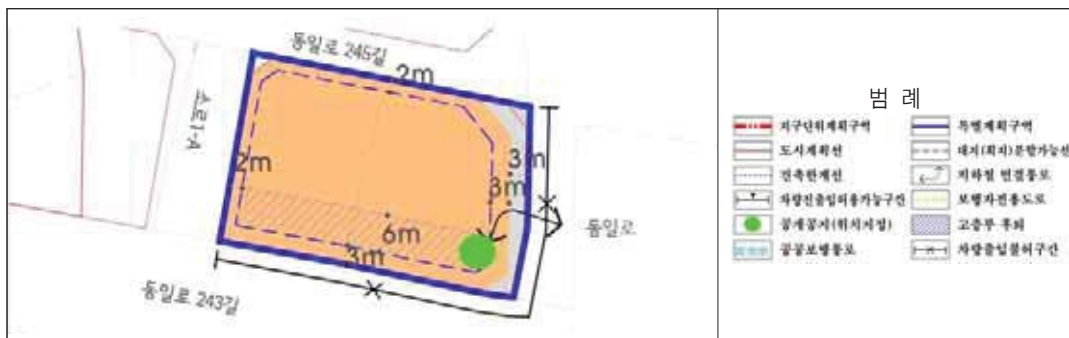


■ 변경

구 분		개 발 지 침	비고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세부개발계획수립시준주거지역)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공기여 주)		• 순부담40%이상 도시기반시설(도로, 녹지 등) 및 공공시설(건축물)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가)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1층 권장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불허용도 (A,B)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공장,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50% 이하 / 허용 280% 이하 / 상한 400% 이하	
	최고높이	• 55m 이하	
기타 사항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및 동일로 243길변 3m, 동일로 245길변 2m • 소로1-A변 2m	
	건축물형태	• 고층부(3층 이상) 건축선 후퇴(대지경계선에서 9m)	
	차량출입 불허구간	• 동일로 및 동일로243길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지하철 연결통로	• 지하철출입구와 연계한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권장)	
	대지내공지	• 공개공지: 설치의무면적 + 5%	

주)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전면공지, 건축선 후퇴, 공개공지 추가 설치 등 건축계획 관련지침과 건축디자인 개선 등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5%p 이내에서 완화 가능

<특별계획구역3 계획도>



4) 특별계획구역 4

가) 구역: 변경 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 4	상계동 1131-4 일원	2,546	

나) 계획지침

■ 기정

구분		계획지침	비고
용도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도로, 공공공지) 위치지정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순부담 : 10%이상 기부채납
획지 계획	획지분할 가능선	• 1131-5, 1131-6, 1131-40사이에 획지분할가능선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전시장, 아동관련시설	
	불허용도 (B)	• 공장, 정신병원 및 요양소,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식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50% 이하 / 허용 110% 이하 / 상한 50% 이하	
	최고높이	• 4층 이하	
기타 사항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 소로3-B 및 동일로 246길변 1m	
	차량출입 불허구간	• 동일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지하철 연결통로	• 지하철출입구와 연계한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가(개발주제)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채납 면적 및 선형 변경 가능

<특별계획구역4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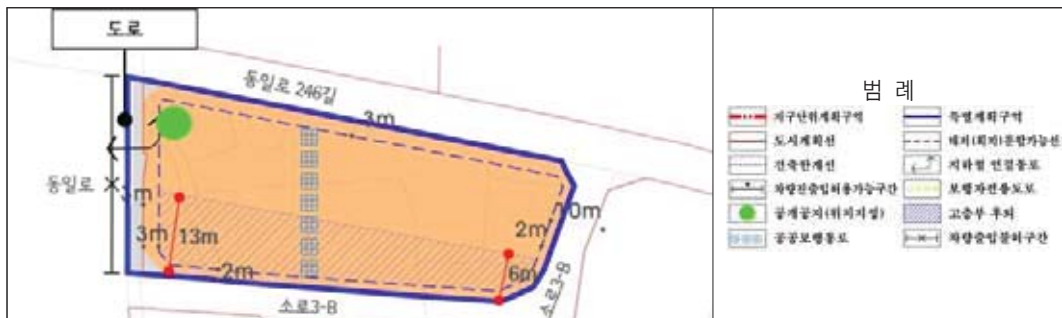


■ 변경

구 분		개 발 지 침	비고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세부개발계획수립시준주거지역)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공공기여 주)		• 순부담40%이상 도시기반시설(도로, 녹지 등) 및 공공시설(건축물)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운동시설	
	1층 권장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불허용도 (A,B)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공장,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50% 이하 / 허용 280% 이하 / 상한 400% 이하	
	최고높이	• 55m 이하	
기타 사항	건축한계선	• 동일로 및 동일로 246길변 3m, 소로3-B변 2m	
	건축물형태	• 고층부(3층 이상) 건축선 후퇴(대지경계선에서 6~13m)	
	차량출입 불허구간	• 동일로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지하철 연결통로	• 지하철출입구와 연계한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권장)	
	공공보행통로	• 대지내 폭 4m, 건축배치에 따라 출구 위치 조정 가능	
	대지내공지	• 공개공지: 설치의무면적 + 5%	

주)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전면공지, 건축선 후퇴, 공개공지 추가 설치 등 건축계획 관련지침과 건축디자인 개선 등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5%p 이내에서 완화 가능

<특별계획구역4 계획도>



5) 특별계획구역 5

가) 구역 : 변경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특별계획구역 5	상계동 산44-90 일원	1,871	1,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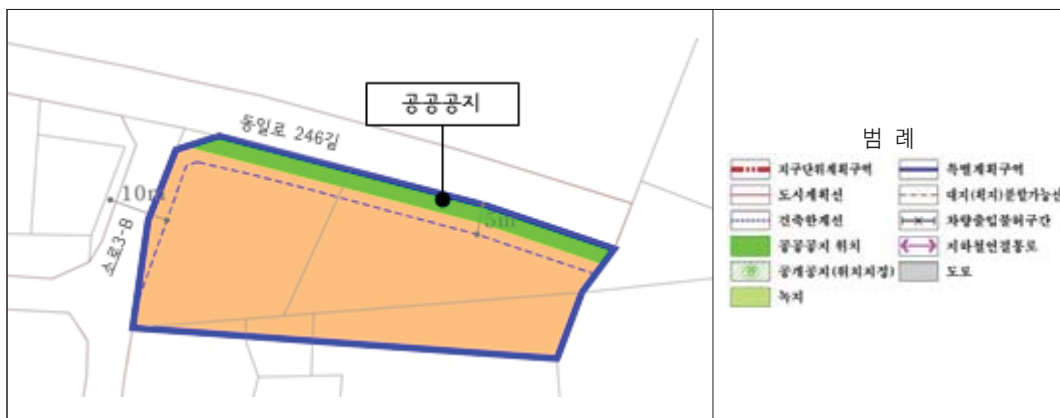
나) 계획지침

■ 기정

구분		계획지침	비고
용도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도로, 공공공지) 위치지정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순부담 : 10%이상 기부채납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전시장, 아동관련시설	
	불허용도 (B)	공장, 정신병원 및 요양소,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식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축물 밀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 50% 이하 / 허용 110% 이하 / 상한 150% 이하	
	최고높이	4층 이하	
기타사항	건축한계선	- 소로3-B변 맞은편 대지경계선에서 10m 확보 - 동일로 246길변 2m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자(개발주제)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채납 면적 및 선형 변경 가능

<특별계획구역5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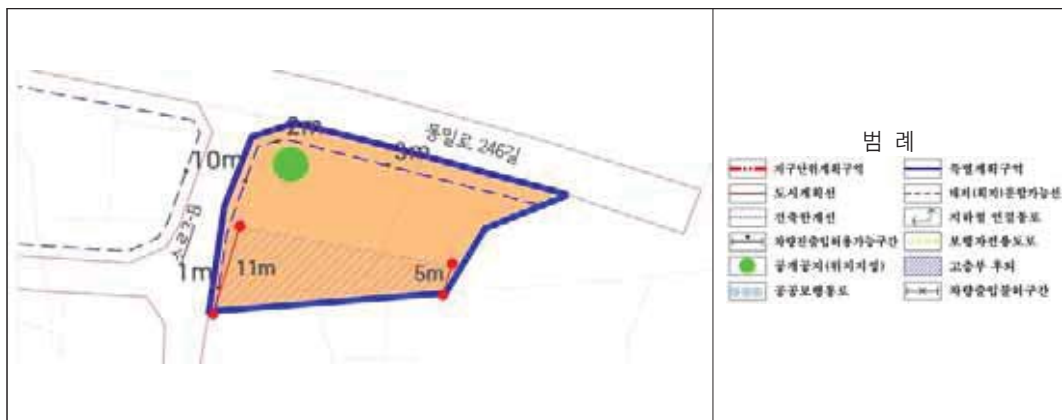


■ 변경

구 분		개 발 지 침	비고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공공기여주)		• 순부담 25%이상 도시기반시설(도로, 녹지 등) 및 공공시설(건축물)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가)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1층 권장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불허용도 (B)	• 공장,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50% 이하 / 허용150% 이하 / 상한 200% 이하	
	최고높이	• 20m 이하	
기타 사항	건축한계선	• 소로3-B변 맞은편 건축한계선에서 10m 확보 • 동일로 246길변 3m	
	건축물형태	• 고층부(3층 이상) 건축선 후퇴(대지경계선에서 5~11m)	
	대지내공지	• 공개공지: 설치의무면적 + 5%	

주)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전면공지, 건축선 후퇴, 공개공지 추가 설치 등 건축계획 관련지침과 건축디자인 개선 등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5%p 이내에서 완화 가능

<특별계획구역5 계획도>



6) 용적률 인센티브

■ 기정

가) 용적률 완화 항목 - 공통사항

- ①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20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00분의5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 ④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의무형 인센티브	유도형 인센티브	규제형 인센티브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내	친환경계획 준수시(20%이상)	특정목적 유도계획 준수시(30%이상)	규제성격의 계획 준수시(50%이내)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⑤ 권장용도의 면적은

- 전층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 1층 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 4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⑥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 시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⑦ 미관지구내 건축선 보다 추가하여 건축한계선으로 결정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 시 제외)
- ⑧ 조정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나) 용적률 완화 항목 - 지역별 적용사항

환경친화적 건축물 항목(의무형)

항목	조건	완화기준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1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1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2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12이내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02이내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12	기준용적률×0.02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12	기준용적률×0.02
신재생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0.12	기준용적률×0.02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1등급	기준용적률×0.24	기준용적률×0.04
	2등급	기준용적률×0.12	기준용적률×0.02

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유형

구분(위치)	유형	비고
특별계획구역	A1	
특별계획구역(자동차정류장 시설부지)	A2	
준주거지역 ①(동일로 간선부)	A3	
준주거지역 ②,③(동일로 간선부+이면부)	A4	
준주거지역 ④,⑤,⑥(동일로 이면부)	A5	

① 인센티브 유형 A1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세부개발계획수립시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예정)	
위치특성		간선도로변	
기준/허용용적률		50/110	
중점계획목표		-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녹지축 형성 - 공동개발을 통한 적정개발 규모 확보 - 지하철출입구 대지내 이전유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규제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3
		획지분할개발	기준용적률×0.2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도시경관개선	지하철출입구	기준용적률×0.3
유도	획지계획	필지교환	기준용적률×0.4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div \text{주차장제외 건축면적}) \times 3$

• 건축면적의
20%이상

② 인센티브 유형 A2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특별계획구역2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예정)	
위치특성		간선도로변, 자동차정류장	
기준/허용용적률		50/110	
중점계획목표		자동차정류장 시설의 활성화	
항목	세분	완화기준	
규제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3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유도	획지계획	필지교환	기준용적률×0.5
	건축물용도	특정층개방 (휴게공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div \text{해당층바닥면적}) \times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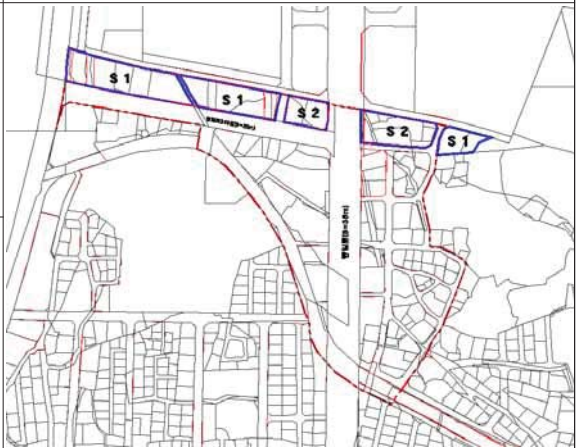
• 건축바닥
면적 50%
이상

■ 변경

가) 용적률 완화 항목 - 공통사항

- ①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의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의 인센티브는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친환경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고 100분의 30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을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할 수 없다.
- ③ 친환경 인센티브를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친환경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 가능하다.
- ④ 권장용도의 면적은
 - 전층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 1층 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 4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⑤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 시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⑥ 건축법에 의해 지정된 건축선 보다 추가하여 건축한계선으로 결정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⑦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유형

구분(위치)	유형	대상범위
특별계획구역 1,2,5	S1	
특별계획구역 3,4	S2	

① 인센티브 유형 S1

< 계획항목 >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획지 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4	
	획지분할개발	기준용적률×0.4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 건축면적)×1	• 건축면적의 20%이상
	1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해당층 바닥면적)×1.5	• 건축바닥면적의 40%이상
대지내 공지	섬지형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3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도시경관 개선	옥상정원, 옥외계단, 고층부후퇴	기준용적률×0.3	• 옥상정원 공공개방시
주차계획	화물조업주차	기준용적률×0.3	• 서울특별시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준수시
인센티브 패키지		50%(권장용도 30%이상인 경우 추가로 제공)	1층권장용도 포함

< 친환경항목 >

구분	세 분	계획내용		비 고
환경 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 건축 인증	최우수등급 : 기준용적률 × 0.12 우수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우량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기준용적률 × 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1등급 : 기준용적률 × 0.08 2등급 : 기준용적률 × 0.06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2등급 : 기준용적률 × 0.10 3등급 : 기준용적률 × 0.08 4등급 : 기준용적률 × 0.06 5등급 : 기준용적률 × 0.04		※ 「산·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산·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준용 ※ 산·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3% 초과시
	중수도 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2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 관리 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2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 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 법정 조정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구분	세 분	계획내용	비 고
	자연 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 기준용적률 × 0.05 이내
인센티브 패키지		30%(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3개 이상 계획시 추가로 제공)	

② 인센티브 유형 S2

< 계획항목 >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획지 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4	
	획지분할개발	기준용적률×0.4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 건축면적)×1	• 건축면적의 20% 이상
	1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해당층 바닥면적)×1.5	• 건축바닥면적의 40% 이상
대지내 공지	빚지형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3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도시 경관 개선	옥상정원, 옥외계단 고층부 후퇴	기준용적률×0.3	• 옥상정원 공공개방시
	지하철출입구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주차 계획	화물조업주차	기준용적률×0.3	• 서울특별시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 준 준수시
인센티브 패키지		100% (권장용도 30%이상, 차하철출입구 설치, 공개공지(빚지형공지) 설치시 추가로 제공)	1층권장용도 포함

< 친환경항목 >

구분	세 분	계획내용	비 고
환경 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 건축 인증	최우수등급 : 기준용적률 × 0.12 우수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우량등급 : 기준용적률 ×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1등급 : 기준용적률 × 0.08 2등급 : 기준용적률 × 0.06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2등급 : 기준용적률 × 0.10 3등급 : 기준용적률 × 0.08 4등급 : 기준용적률 × 0.06 5등급 : 기준용적률 × 0.04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준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3% 초과시

구분	세 분	계획내용	비 고
	중수도 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2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 관리 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2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 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 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 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 기준용적률 × 0.05 이내
인센티브 패키지		60%(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3개 이상 계획시 추가로 제공)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경미한 사항 : 변경없음

1. 필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씀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결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Ⅲ.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88) 및 노원구 도시관리과 (☎02-2116-3868)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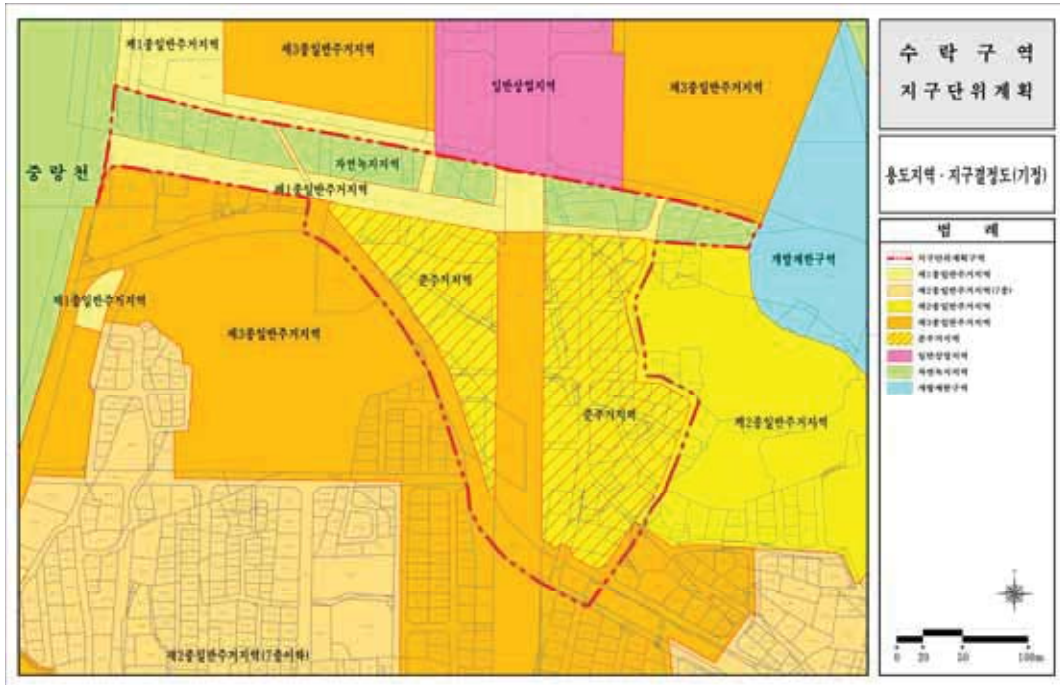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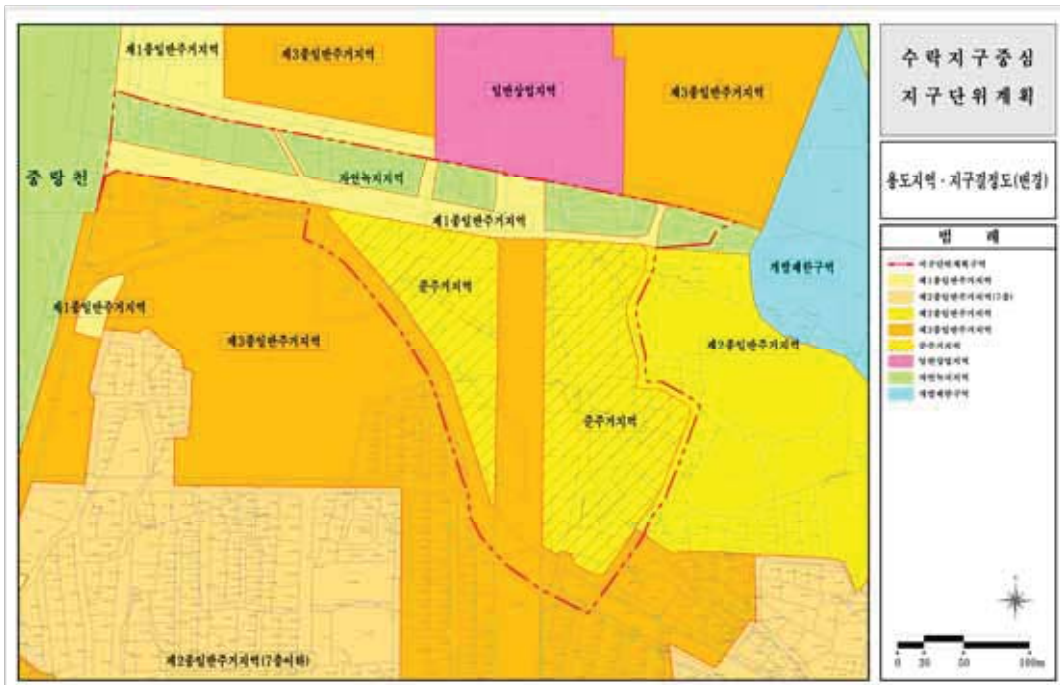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



**수탁구역
지구단위계획**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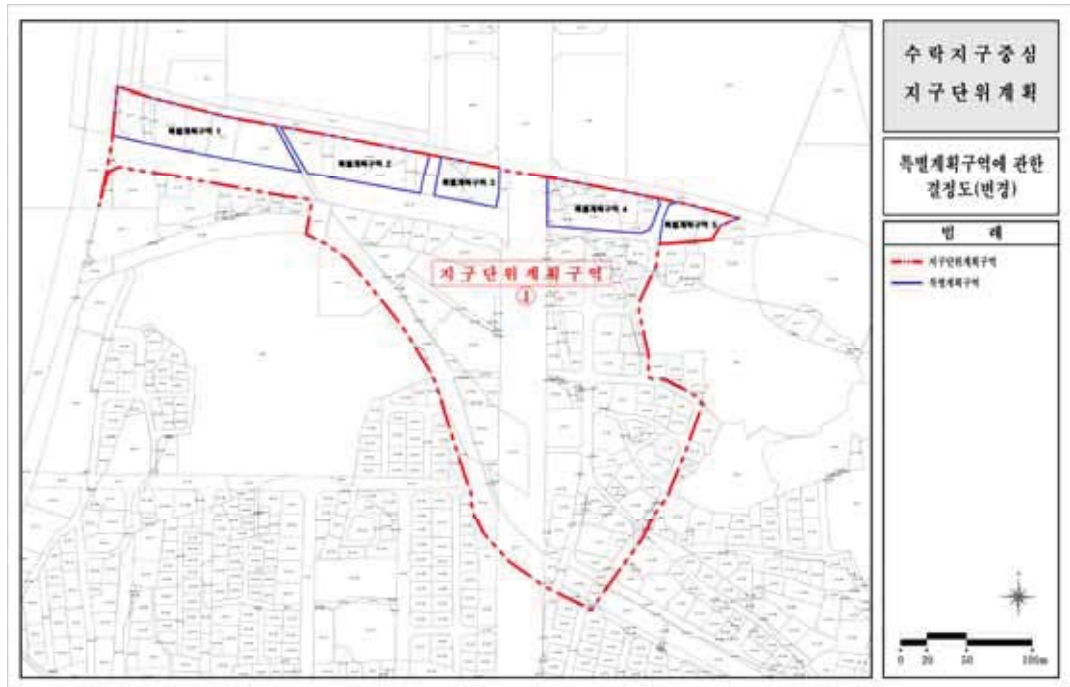
- 도로: 국·도, 구·군·시·구·읍·면 단위 도로, 지방도, 군·시·구·읍·면 단위 도로, 마을길
- 경계선: 구역별 경계선, 블록별 경계선, 건물경계선
- 시설물: 공공시설, 문화·체육·관광시설, 교육·연구·의료·복지시설, 산업·제조·창고·판매시설, 농업·축산·농림·수산·어업시설, 기타시설
- 기타: 기타시설, 기타시설, 기타시설

0 20 40 60 80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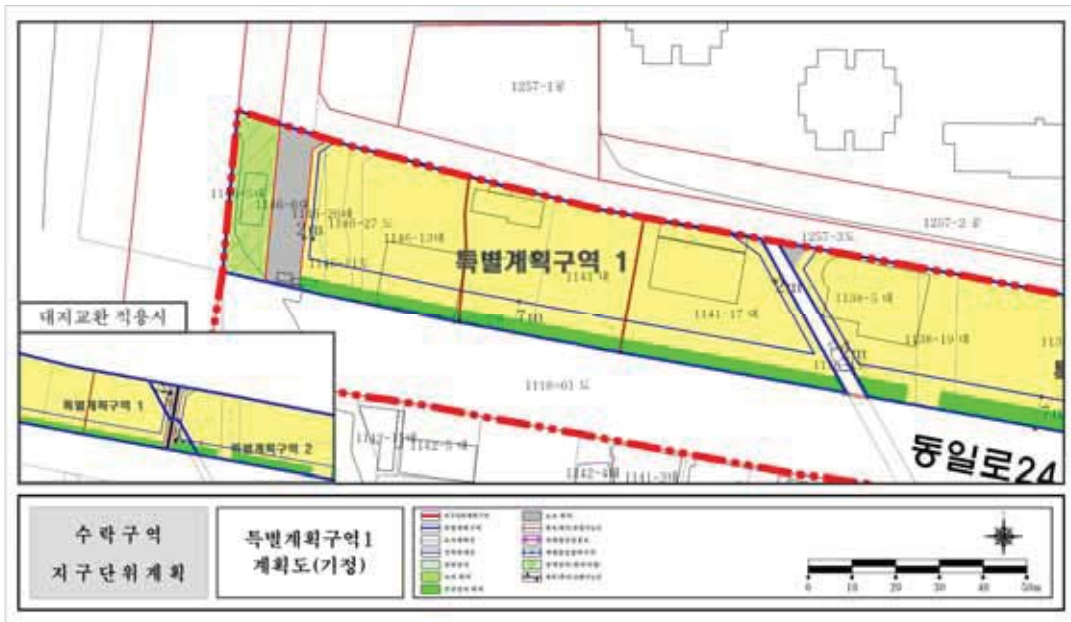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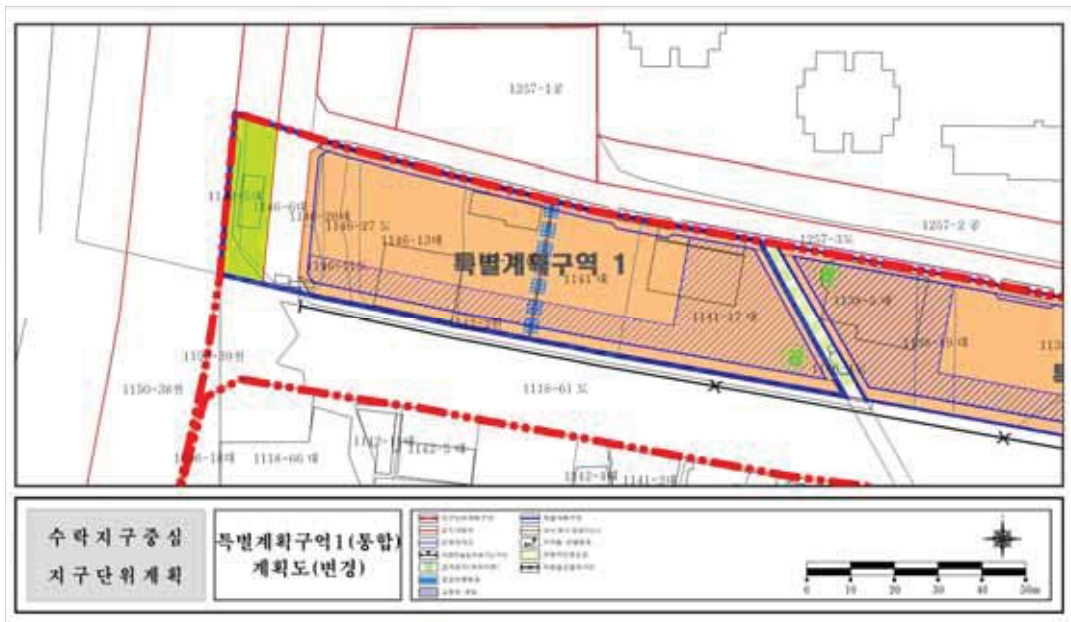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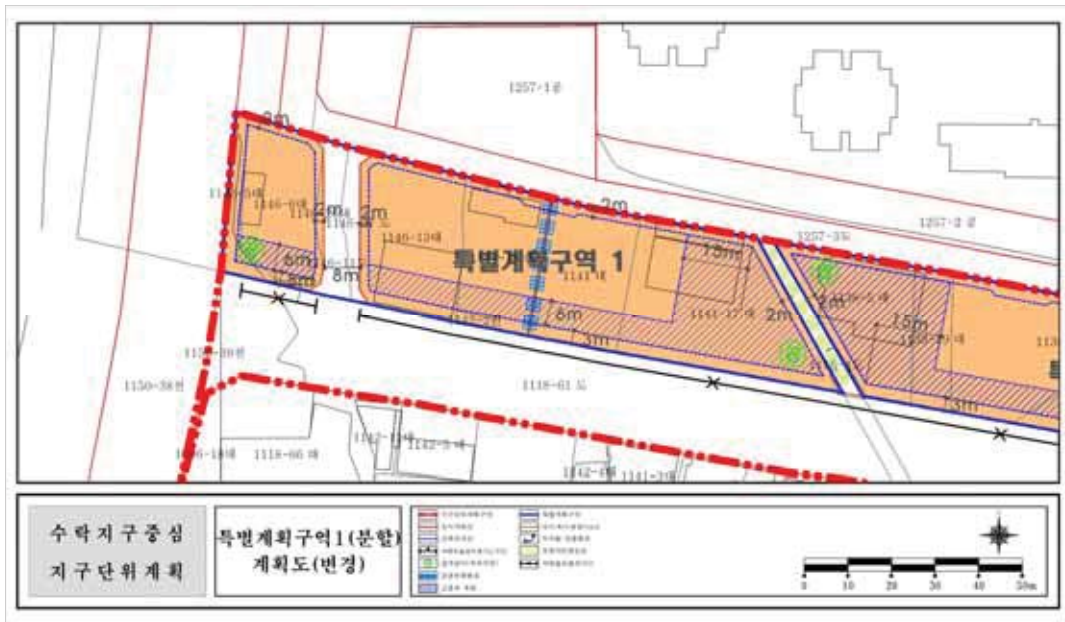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1 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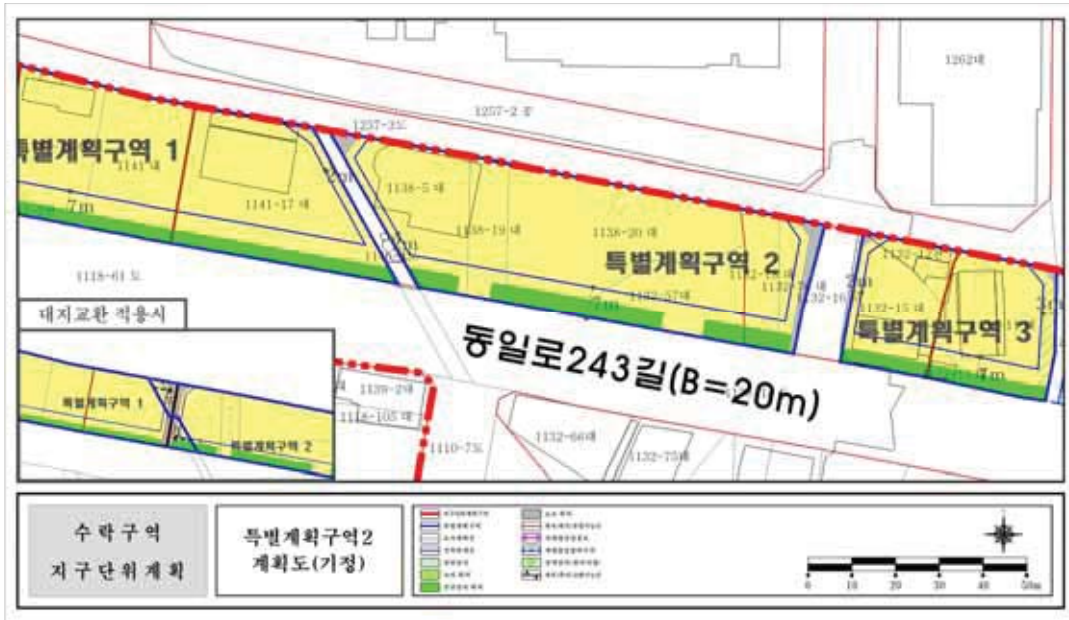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1 계획도(변경)-통합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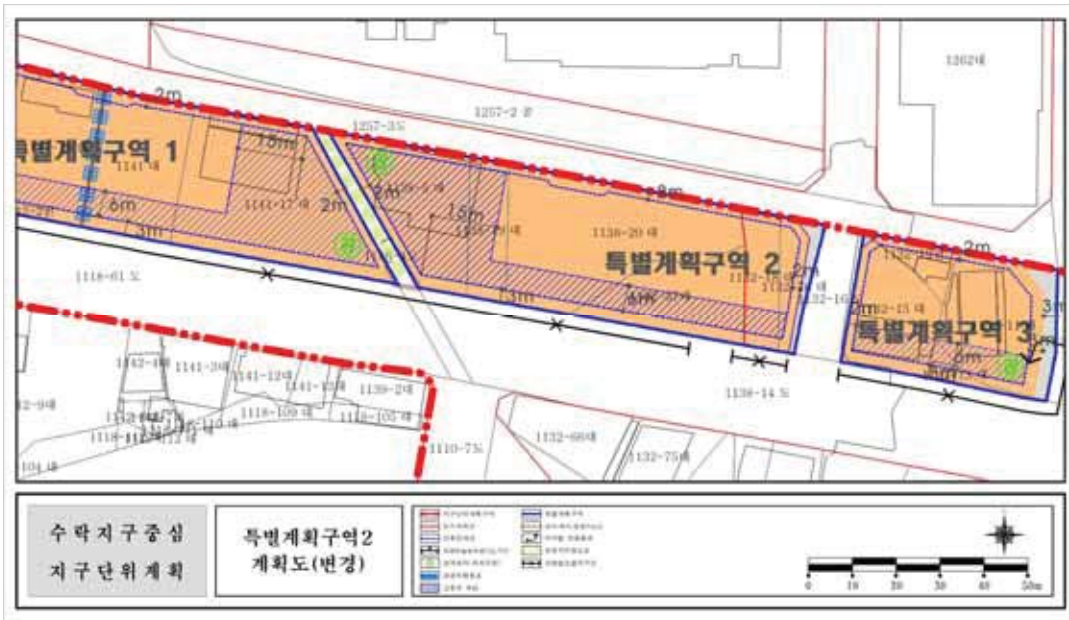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1 계획도(변경) -분할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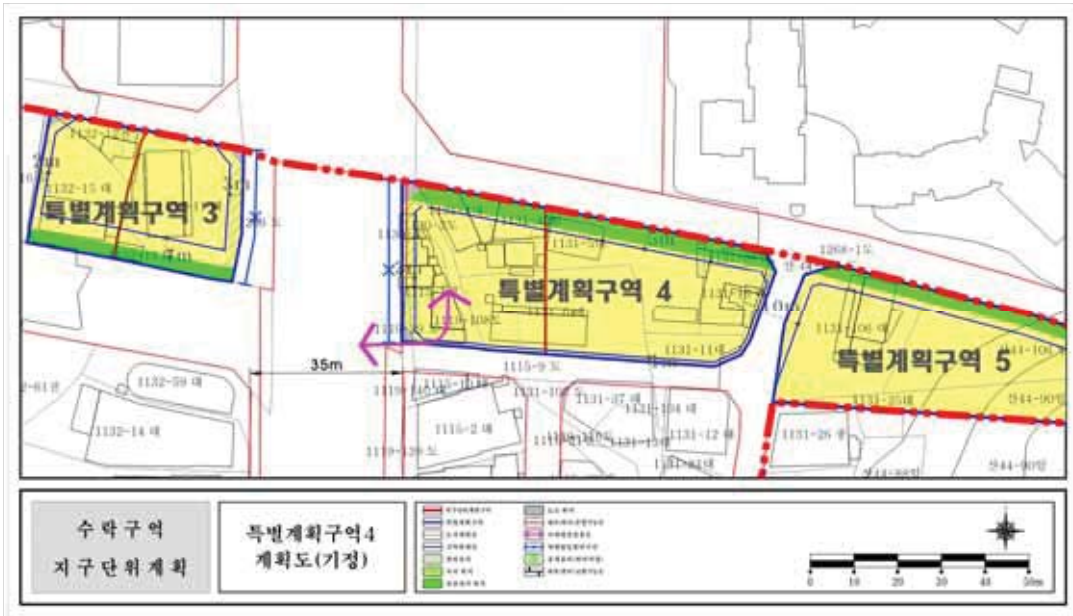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2 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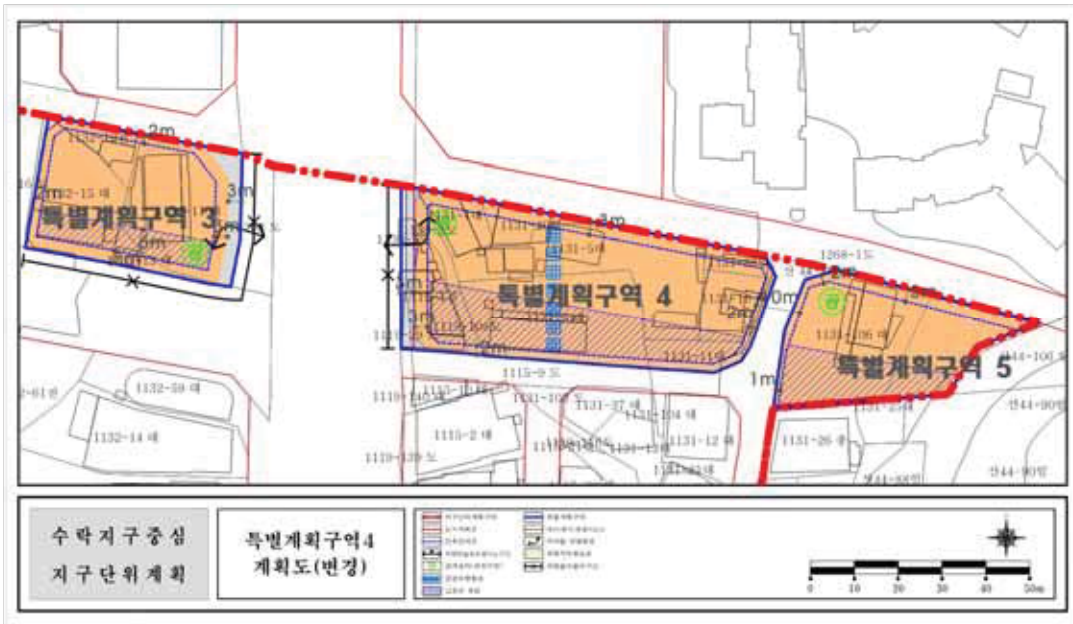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2 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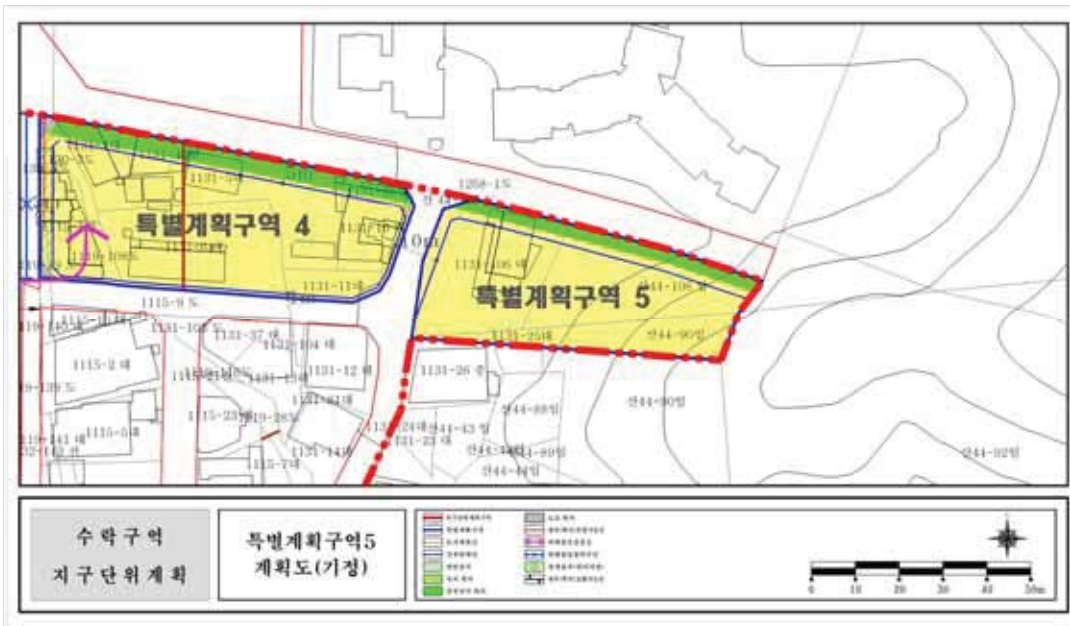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4 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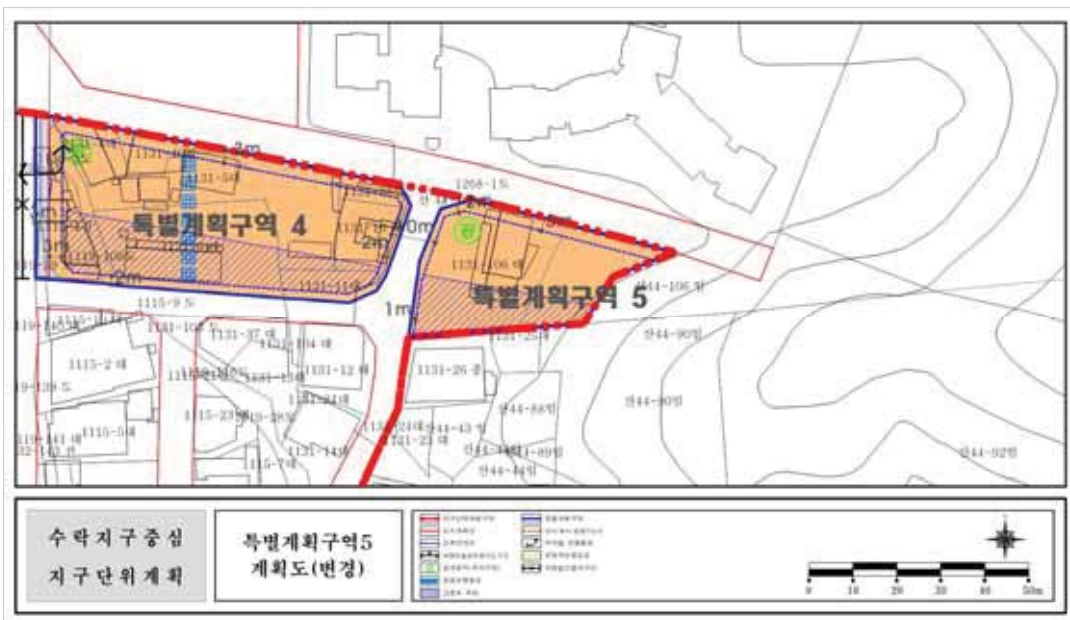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4 계획도(변경)>



〈특별계획구역5 계획도(기정)〉



〈특별계획구역5 계획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10호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근거 및 대상

☐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시대상 :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88개소

2.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

소 관 부 서	시 설 명	위 치	주 요 기 능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목로 5 (신정동)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동일로250길 44-142	저소득 어르신 보호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저소득 어르신 보호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마장로23길 12 (홍익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섬발로 313 (중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5 (성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군포시 교산로 589 (산본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소 관 부 서	시 설 명	위 치	주 요 기 능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37 (삼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황물로 12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동구 올림픽로 703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예방 기관
	서울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역말로10길 30-1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예방 기관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예방 기관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북구 노해로 69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예방 기관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삼양로92길 40 (인수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화곡로61길 85 (등촌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보라매로 35 (봉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로 88 (군자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새말로16길 7 (구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시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노원로16길 15 (하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쌍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제기로33길 25 (청량리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소 관 부 서	시 설 명	위 치	주 요 기 능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상도로11길 7 (대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서강로 68 (서강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천연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로15길 10 (종암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한남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연서로 415 (진관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겸재로9길 45 (면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중증장애인 보호
	시립서대문장애인단거주시설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홍은동)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시립중랑장애인단거주시설	중랑구 겸재로61길 81 (망우동)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	비공개	피해장애인 일시보호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성북)	비공개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남아전용	비공개	피해장애아동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치료, 학업활동 지원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여아전용	비공개	피해장애아동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치료, 학업활동 지원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소 관 부 서	시 설 명	위 치	주 요 기 능
	뇌성마비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북부장애인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2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73 (상계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남가좌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 (영등포동2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남부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로 201 (고덕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서울금두리체육센터	송파구 동남로 27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활프로그램 등 제공
	시립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양천구 목동서로 33 (목동)	장애인생산물판매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성북구 화랑로 134 1층 (하월곡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변동보호작업장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시립장애인영능직업재활시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472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거리노숙인 상담 일시보호, 기타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거리노숙인 상담 일시보호, 기타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소 관 부 서	시 설 명	위 치	주 요 기 능
	시립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거리노숙인 상담 일시보호, 기타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성동구 가람길 125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및 노동능력 있는 노숙인에게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시립양평센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및 노동능력 있는 노숙인에게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및 알코올의존증, 정신질환 노숙인 대상 자립기반 조성 지원
	시립은평의마을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및 단기간 가정, 사회 복귀 어려운 노숙인에게 상담, 치료, 요양 서비스 제공
	시립돈의동쪽방상담소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20-2	쪽방상담소 운영 및 쪽방주민생활안정지원
	시립창신동쪽방상담소	종로구 종로54길 29-3	쪽방상담소 운영 및 쪽방주민생활안정지원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중구 세종대로 30	쪽방상담소 운영 및 쪽방주민생활안정지원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용산구 후암로57길 9-12	쪽방상담소 운영 및 쪽방주민생활안정지원
	시립영등포쪽방상담소	영등포구 경인로 823-2	쪽방상담소 운영 및 쪽방주민생활안정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시립여성보호센터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영보자재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대방동)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비공개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소 관 부 서	시 설 명	위 치	주 요 기 능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시흥동)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마리공동체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등
	서울시가족센터	서울시 중구 소파로4길 6	건강가정교육·상담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시립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시립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시립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시립서부아동복지센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	동대문 답십리로69길 106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학대피해아동쉼터(중랑)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관악)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강서)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서울특별시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키움센터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31다길 10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제2호 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스페이스살림 內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제3호 종로 거점형 키움센터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시 성북구 회기로3길 17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정신요양시설 운영
	시립은혜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정신요양시설 운영

3.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조태순 주무관
(02-2133-7325 / cho3069250@seoul.go.kr)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11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등록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지정문화재)·제62조(등록문화재의 등록)과 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등록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등록 개요

가. 문화재 지정·등록 개요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관리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33호	미타사 칠성각 현왕도 (彌陀寺 七星閣 現王圖)	1점	전체: 157×116 그림: 142.5×108.7	1899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34호	척화비 (斥和碑)	1기	전체높이: 185	19세기 말	용산구 ((재)천주교한국순교복자 수녀회 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35호	석천암 지장시왕도 (石泉庵 地藏十王圖)	1점	전체: 154.8×148	1848년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36호	금강반야바라밀다경 (金剛般若波羅蜜多經)	1책 (32장)	27.6×15.0	1410년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제19호	시대일보	1건 154점	가로 44 세로 57.5	19세기 말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나. 지정 사유

1) 유형문화재

【 미타사 칠성각 현왕도(彌陀寺 七星閣 現王圖) 】

<미타사 칠성각 현왕도>는 18.5×97cm의 무명천 두 폭을 잇대어 만든 바탕에 그린 불화로 부분적으로 보수 흔적이 엿보지만 유리 액자에 넣은 채 걸어 두어 비교적 손상도가 작고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또한 화기가 잘 남아 있어 1899년으로 조성연대가 분명함은 물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약상을 보인 ‘궁법’에 의해 조성되었음이 확인된다. 도상 역시 1846년 조성된 <남양주 홍국사 현왕도>를 수용하여 변용시킨 작품으로,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의 화승 계보와 화풍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이에 <미타사 칠성각 현왕도>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척화비(斥和碑) 】

척화비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대원군의 강력한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드러내고, 전국적인 척양(斥洋) 의지를 집결하려는 상징적인 조치였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문화재이다. 본 조사대상 척화비는 원래의 장소에서 이전한 것이어서 환지본처(還至本處)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원래의 장소 역시 ‘강원도 횡성읍 읍상리 횡성성당 정문 앞 개울에 버려져 있었던 것’이어서 횡성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에 환지본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척화비는 비수 3면에 구름 문양을 새긴 관석이 비신 칠체형으로 만들어졌고, 비문이 최초 척화비와 같은 내용이며, 비좌 역시 안상과 구름 문양이 잘 남아 있어, 비석의 비율과 조형성이 잘 남아 있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석천암 지장시왕도(石泉庵 地藏十王圖) 】

남양주 천보산 석천암 지장시왕도는 1848년(道光 28年)에 조성된 불화로 어느 시기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오래전에 해외로 반출되어 독일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원으로 2016년 6월에 낙찰받아 7월에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운되어 소장중에 있다. <석천암 지장시왕도>는 전체적인 구도와 도상 형태, 색채와 필선, 문양 등 19세기 불화의 편년을 기준할 수 있는 형식과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화기가 잘 남아 있어 1848년의 조성연대가 분명함은 물론, 19세기 후반에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약상을 보인 ‘법총’ 등에 의해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그 당시 매우 뛰어난 기량을 갖춘 화승들이 참여하여 조성한 불화로 예술적인 가치 또한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석천암 지장시왕도>는 1802년 조성된 <파주 보광사 수구암 지장시왕도> 도상을 수용하여 변용시킨 작품으로 불화 화승의 계보와 19세기 불화 화풍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에 <석천암 지장시왕도>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금강반야바라밀다경(金剛般若波羅蜜多經) 】

종로도서관 소장의 조사 대상본은 후진의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한 금강경에 천로가 송(頌)을 부친 <천로금강경>으로 1410년에 전라도 고창의 문수사에서 고려본(1387년) <천로금강경>을 저본으로 번각한 자료로 추정된다. 이와 동일본이 불갑사에만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존본이 매우 희귀한 실정이다. 다만 불갑사본과 비교하여 권말의 발원문 반엽이 결락되어 있는 점은 결점으로 보이나, 동일본과 비교하여 자체에 완결이 없이 전체적으로 인쇄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아 개판 초기에 인쇄된 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종로도서관 소장의 조사 대상본인 <천로금강경>은 전존본이 거의 없는 희귀한 귀중본으로 인쇄 및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등록문화재

【시대일보】

《시대일보》의 창간 목적은 민족의 성장과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고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민족의 단합과 협동을 사명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과 김원봉의 의열단, 통의부, 대한청년단 등 국내외 독립단체와 함께 무장 독립운동으로서 만주와 국내에서 일어난 일본 군경과의 교전, 친일파 사살 등을 자세하게 보도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을 보도하였다. 1926년 6월 10일과 11일에는 순종 인산일의 상황과 6.10만세 운동을 보도하였고, 사설에서 항일 민족운동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다분히 민족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보도 성향에 따라 1924년 49건, 1925년 38건, 1926년 26건 등 발행 기간 중 103건 정도의 기사가 보도되지 못하였다. 또한 《시대일보》는 1925년 대홍수 때 다른 신문들과 함께 수재민 구호 운동을 하고, 학술강연회, 전 조선 축구전 등의 운동경기를 주최하기도 하는 등 민족지로서 구실을 하였다. 현재 종로도서관 소장본은 2판이지만 창간호가 남아 있고, 발행된 신문의 55% 이상으로 현존 가장 많은 양을 소장하고 있으며, 원형도 잘 보존되어 있다. 《시대일보》는 언론사에서 1920년대 당시 3대 민간신문으로서 민족지 역할을 하여 언론사적 의미가 있고, 역사적 사건의 기사화 등의 역사적 사료가치, 자료의 희귀성 등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문화재 지정 일자 : 서울시보 고시 일자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12호

도시관리계획(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2호(2014.12.26.)로 결정되고 제2016-166호(2016.11.24.)로 결정(변경)된 ‘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021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12.09.) 심의 및 2022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2022.02.1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강북구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북구 미아동 197-5 일대	132,786.9	-	132,786.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2호 (2014.12.26)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32,786.9	-	132,786.9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32,786.9	감) 5,107.8	127,679.1	96.15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증) 5,107.8	5,107.8	3.85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미아동 194-2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5,107.8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함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45	미아동 195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소로	1	가	10	국지도로	45	미아동 195대	대1-8	일반도로	-	-	-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0	소로 1-가	●폭원 확폭 : 8m → 10m (증 2m)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폭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대지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에 관한 결정(변경)

구 분	가구번호	비 고
기 정	1 ~ 19	가구 9는 특별계획구역
변 경	1, 2, 2-1, 3 ~ 19	가구 2-1, 4, 9는 특별계획구역

나.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 생략

다. 가구 및 대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 필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 치		대지 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2	4,939.4	194	도봉로	3,379.7	-	-
			194-2	도봉로	1,559.7	-	-
변경	2	3,379.7	194	도봉로	3,379.7	-	-
	2-1	1,473.4	194-2	도봉로	1,473.4	획지 A 신설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 치		대지 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4	3,634.4	195	도봉로 222	3,634.4	-	-
변경	4	3,634.4	195	도봉로 222	3,634.4	획지 B 신설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 면적은 공부상(토지대장)면적임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 치	대지 면적(㎡)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2	3,379.7	194	3,379.7	●4,939.4㎡ → 3,379.7㎡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신 설에 따른 가구 및 획지 조정
	2-1	1,473.4	194-2	1,473.4	●4,939.4㎡ → 1,473.4㎡ ●획지번호 A 신설 ●기부채납도로(86.30㎡) 제척	
변경	4	3,634.4	195	3,634.4	●획지번호 B 신설	

나. 획지에 관한 결정(신설)

■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획지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획지 신설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차량흐름 및 보행안전 확보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획지번호	획지면적(㎡)	변경 사유
신설	2-1	1,473.4	194-2	A	1,473.4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획지 신설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차량흐름 및 보행안전 확보
	4	3,634.4	195	B	3,634.4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변경)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기 정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석유 판매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 차장, 세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	-
	B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 설	C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아목(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관주택, 안마사술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시설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신 설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불허용도 신설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공급되는 주거시설, 거점형 키움센터 및 청소년 문화센터의 환경보호를 위한 불허용도 계획	-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변경)

■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권장용도	비 고
기정	A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서점·독서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 ●교육연구시설	대 학문화 지원권역
	B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거점중심권역
	C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1층부 금융업소 제외)	상업·업무권역
신설	D*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음원·미용원·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서점·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학원·독서실·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 ●판매시설 중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거점형 키움센터)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문화센터)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하 1층 ^주) ~ 지상 3층)

주) 대상지의 단차로 인해 지하1층이 간선로(도봉로)변의 지반 높이와 같음

※ 권장용도 외 타용도 전환 시 區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승인받도록 함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신 설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권장용도 신설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주) 지하 1층 ~ 지상 3층)에 가로활성화 용도 및 지역필요시설 용도 등 도입	-

주) 대상지의 단차로 인해 지하1층이 간선로(도봉로)변의 지반 높이와 같음

다. 건축물의 지정용도(변경 없음) : 생략

라. 건축물의 용도완화(변경 없음) : 생략

3.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변경)

가. 건폐율(변경)

■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적용지역		건폐율	비 고
기 정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신 설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나. 용적률(변경)

■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용도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 정	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250% 이하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
신 설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250% 이하 ^{주 1)}			600% 이하 ^{주 2)}

주1)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기준(허용)용적률

주2)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상한용적률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신설)

구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기여율	기준(허용) 용적률 250%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주거비율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상한 용적률 6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구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고
주민 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100㎡ 이상 설치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 인센티브 적용유형(변경 없음) : 생략

다. 높이 계획(변경)

■ 최고높이 결정 조서(변경)

구 분	용도지역	높 이	간선부	이면부		비 고
				-	A	
기 정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높이	60m 이하	20m 이하	24m 이하	사선제한 배제
		최고높이	70m 이하	30m 이하	35m 이하	
신 설	근린상업지역	최고높이	83m 이하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신 설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최고높이 83m 이하	용도지역(근린상업지역) 및 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한 높이계획

－ 기준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변경 없음) : 생략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가.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변경)

■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건축 한계선	도봉로변	3m	3m	변 경
	도봉로 이면부	2m (솔매로 45길, 솔매로 49길) 1m	^{주1)} 2~5m(솔매로 49길, 소로 1-가) 2m(솔매로 45길, 솔매로 49길, ^{주2)} 소로 1-가, ^{주2)} 소로 2-1) 1m	
벽면 한계선	도봉로 이면부	-	^{주2)} 1m(소로 1-가)(^{주3)} 지하 1층 ~ 지상 3층)	신 설

※ 단, 도봉로 이면부 건축한계선 지정 적용 시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세장형필지, 과소필지 등)에 한하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한계선을 조정할 수 있다.(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주1)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주2) 건축한계선 상세 계획은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으로 별도로 결정함

주3) 지하 1층 벽면한계선의 경우 보행로로 사용되는 지상부분에 한함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 경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건축한계선 변경 도봉로 이면부 ^{주1)} 2~5m(술매로 49길), 4m(소로 1-가), 2m(술매로 45길, 술매로 49길, 소로 1-가, 소로 2-1)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벽면한계선 신설 도봉로 이면부 1m(소로 1-가)(^{주2)} 지하 1층 ~ 지상 3층)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내 교통처리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 추가 지정 및 변경	-

주1)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건축한계선 상세 계획은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으로 별도로 결정함

주2) 지하 1층 벽면한계선의 경우 보행로로 사용되는 지상부분에 한함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변경 없음) : 생략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변경)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적용기준	비 고
기 정	전면 공지	간선 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3m	-
		이면 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1~2m	-
변 경		이면 도로변	-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1~5m, ^{주1)} 벽면한계선 1m(지하1층 ^{주2)} ~지상3층)	-
기 정	공개 공지	공개공지의 위치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보행결절점 및 전면도로 각각부, 전면도로변에 설치	-	-
		공개공지의 조성	- 공개공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조성 - 공개공지는 소공원(쌔지공원)의 형태로 조성토록 권장	-	-
신 설		쌔지형공지의 위치 및 조성	- 위치 : 주요 보행결절점에 쌔지형공지 위치 지정 - 조성방법 : 쌔지형공지는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의 시행지침에 따라 조성	-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구 분			계 획 내 용	적용기준	비 고
기 정	통로	보차 혼용통로	- 보차혼용통로는 「건축법」 제2조(정의), 동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성 - 통과도로형 : 4m - 막다른 도로형 : 2~3m · 길이 10m 미만 : 2m · 길이 10m 이상 ~ 35m 미만 : 3m	폭원 2~4m	-

주1)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주2) 대상지의 단차로 인해 지하1층이 간선로(도봉로)변의 지반 높이와 같음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전면공지	이면도로변 계획내용 변경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이면도로변 적용기준 변경 건축한계선 1~2m → 건축한계선 1~5m	미아역세권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선 변경에 따른 전면공지 조성 변경을 위해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 기준 추가	변 경
공개 공지	쌈지형 공지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내 쌈지형공지 조성지침 신설	주요 보행결절점에 휴게공간을 확보하여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하기 위함
			신설

2. 차량 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 생략

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특별계획구역 ①	미아동 197-14 일대	3,676.8	-
신 설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미아동 194-2 일원	5,660.02	-

－ 결정 사유서

구 분	구역명	변경사유
신 설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 특별계획구역 ① (변경 없음) : 생략

■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계획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600% ●공공기여율: 부지면적 ^{주1)} 의 29% 이상 (계획: 35.46%)		-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C)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아목(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시설		전층	
	권장용도 [※] (D)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용원·미용원·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서점·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학원·독서실·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 ●판매시설 중 상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거점형 키움센터)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문화센터)		지하 1층 ^{주2)} ~ 지상 3층	
건축물 밀도	건폐율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기준(허용) : 250% 이하 ●상한용적률 : 600% 이하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높이	●83m 이하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건축물 배치	건축선	건축한계선	간선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도봉로변
			이면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5m	솔매로 49길, 소로1-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소로 1-가, 소로 2-1
		벽면한계선	이면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지하1층 ^{주3)} ~지상3층)	소로 1-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건축한계선(3m)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2~5m) 및 벽면한계선(1m)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
	공개공지	섬지형공지	●위치 : 주요 보행결절점에 섬지형공지 위치 지정 ●조성방식 : 섬지형공지는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조성		-
차량동선 및	차량출입	●도봉로변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주차계획	불허구간		
운용기준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사업추진시 적용되는 계획지침으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 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주1)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부지

주2) 대상지의 단차로 인해 지하1층이 간선로(도봉로)변의 지반 높이와 같음

주3) 지하 1층 벽면한계선의 경우 보행로로 사용되는 지상부분에 한함

※ 권장용도 외 타용도 전환시 區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승인받도록 함

○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신 설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미아동 194-2 일원	5,660.02	-	-

※ 전체면적 중 일부(465.92㎡)는 도로면적임

－ 결정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신 설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미아동 194-2 일원	5,660.02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위 치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5,660.02	-	5,660.02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미아동 194-2일원	5,660.02	감) 5,107.8	552.22	9.76	도로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증) 5,107.8	5,107.8	90.24	획지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미아동 194-2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52.22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함
			근린상업지역	5,107.8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45	미아동 195대	대1-8	일반도로	-	2014.12.26.	-
변경	소로	1	가	10	국지도로	45	미아동 195대	대1-8	일반도로	-	-	-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0	소로 1-가	●폭원 확폭 : 8m → 10m (증 2m)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폭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대지규모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대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필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 치		대지 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2	4,939.4	194	도봉로	3,379.7	-	-
			194-2	도봉로	1,559.7	-	-
변경	2	3,379.7	194	도봉로	3,379.7	-	-
	2-1	1,473.4	194-2	도봉로	1,473.4	획지 A 신설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기정	4	3,634.4	195	도봉로 222	3,634.4	-	-
변경	4	3,634.4	195	도봉로 222	3,634.4	획지 B 신설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 면적은 공부상(토지대장)면적임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 치	대지 면적(㎡)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2	3,379.7	194	3,379.7	●4,939.4㎡ → 3,379.7㎡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신 설에 따른 가구 및 획지 조정
	2-1	1,473.4	194-2	1,473.4	●4,939.4㎡ → 1,473.4㎡ ●획지번호 A 신설 ●기부채납도로(86.30㎡) 제척	
변경	4	3,634.4	195	3,634.4	●획지번호 B 신설	

나. 획지에 관한 결정

■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획지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획지 신설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차량흐름 및 보행안전 확보

- 결정 사유서

구 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획지번호	획지면적(㎡)	변경 사유
신설	2-1	1,473.4	194-2	A	1,473.4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획지 신설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차량흐름 및 보행안전 확보
	4	3,634.4	195	B	3,634.4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 건축물의 용도 결정 조서

구 분	내 용		비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파괴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아목(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시설	좌동	전층
권장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용원·미용원·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서점·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학원·독서실·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 ●판매시설 중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거점형 키움센터)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문화센터)	좌동 주 1)	지하 주 2) ~ 1층 지상 3층

주1) 권장용도 외 타용도 전환시 區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승인반도록 함

주2) 대상지 단차로 인해 지하1층이 간선로(도봉로)변의 지반 높이와 같음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

1) 건폐율

■ 건폐율 결정 조서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좌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2) 용적률

■ 용적률 결정 조서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준(허용)용적률 주1)	●250% 이하	좌동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상한용적률 주2)	●600% 이하	좌동	

주1)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기준(허용)용적률

주2)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상한용적률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9.0% 이상	●부지면적의 35.46%	기준(허용) 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6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지상용적률 10% 이상	●주거 : 비주거 = 78.41% : 21.59%		
		●전체 연면적 20% 이상	●주거 : 비주거 = 76.41% : 23.59%		
	주거비율	●제한 없음	-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 34세대 49㎡(10세대), 59㎡(18세대), 74㎡(4세 대), 84㎡(2세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TF회의 결과 반영		
		●민간주택(임대, 분양): 기준 없음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 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등 2가지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에너지효율 건축물 이행, 친환경 건축물 이행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 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 설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100㎡ 이상 설치	●주민공동시설 568.38㎡ 계획 - 커뮤니티시설, 주민운동시설 (휘트니스), 카페 등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 상기 사항은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위치, 면적(규모)은 조정될 수 있음

3) 높이

■ 높이 결정 조서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근린상업지역	83m 이하	좌동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용

- 결정 사유서

구 분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신 설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최고높이 83m 이하	응도지역(근린상업지역) 및 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한 높이계획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 배치 및 건축선 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 한계선	도봉로변	3m	좌 동	도면참조
	도봉로변 이면부	2 ~ 5m (솔매로 49길, 소로 1-가) 2m (소로 1-가, 소로 2-1)	4m (소로 1-가) 2 ~ 5m (솔매로 49길) 2m (소로 1-가, 소로 2-1)	
벽면 한계선	도봉로변 이면부	1m (* 지하1층 ~ 지상3층) (소로 1-가)	좌 동	

※ 지하 1층 벽면한계선의 경우 보행로로 사용되는 지상부분에 한함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결정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지상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간선가로변에 개방형 소원도우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함 - 건축물의 지상1층 바닥높이 :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 등 장애인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단, 경사지의 경우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 높이의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등으로 차폐	-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 지하1층 ~ 지상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간선가로변에 개방형 소원도우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함 - 건축물의 * 지하1층 ~ 지상1층 바닥높이 :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 등 장애인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단, 경사지의 경우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 높이의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등으로 차폐	-
건축물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은 원칙적으로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됨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조립식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 됨 (단, 벽면에 조정,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이용 권장	- 건축물의 외벽은 원칙적으로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됨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조립식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 됨 (단, 벽면에 조정,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이용 권장	-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 지상1층에 차양시설의 설치 및 창문부착 광고물을 금지	• * 지하1층 ~ 지상1층에 차양시설의 설치 및 창문부착 광고물을 금지	
기타 사항	옥외 광고물	• 통합간판 설치 유도 • 폭 20m이상 도로변의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 준수	좌 등	-
	야간 조명	• 투시형벽면 설치시 내·외부 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조성하며, 특히 이면부의 야간경관 향상 및 보행 활동 활성화 유도	좌 등	-

※ 대상지의 단차로 인해 지하1층이 간선로(도봉로)변의 지반 높이와 같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 대지내 공지 결정 조서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전면 공지	간선부	건축한계선(3m)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3m)(도봉로변)을 통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 전면가로 활성화를 위해 주차·진·출입,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일반인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주요 보행결절점에 썸지형공지 위치 지정	-
	이면부	건축한계선(1~5m) 및 벽면한계선(1m, 지하1층* ~ 지상3층 ^{주)})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2~5m) 및 벽면한계선(1m, 지하1층* ~ 지상3층)을 통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 건축한계선(4m)을 통한 차도부속형 전면공지(3m) 및 보도부속형 전면공지(1m) 확보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대상지 북측의 학교에서부터 이어지는 보행체계와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이면도로부의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	
	적용 기준	간선부 : 건축한계선 3m(도봉로변) 이면부 : 건축한계선 2m (솔매로 49길) : 건축한계선 1m	간선부 : 건축한계선 3m(도봉로변) 이면부 : 건축한계선 4m(소로1-가변) : 건축한계선 2m (소로 1-가변, 소로 2-1변) : 건축한계선 2~5m (솔매로49길변) : 벽면한계선 1m(지하1층* ~지상3층) (소로 1-가변)	
썸지형공지	적용 기준	위치 : 주요 보행결절점에 썸지형공지 위치지정 조성방식 : 썸지형공지는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조성	위치 : 주요 보행결절점에 썸지형공지 위치지정 조성방식 : 최소면적 45㎡ 이상, 폭 5m 이상으로 조성	도면 및 시행지침 참조

주)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 지하 1층 벽면한계선의 경우 보행로로 사용되는 지상부분에 한함

■ 소로 1-가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에 대한 지역권 설정

- － 소로 1-가 차도부속형 전면공지(3m)에 대해서는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구 분	내 용
위치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94-2번지 일부
규모*	너비 : 3m, 길이 : 42.57m, 면적 : 139.60㎡
보 상	도로 존속기간 내 무상제공
시행주체	사업시행자 조성
관리운영주체	도로관리청 (강북구청)

※ 규모의 경우 향후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

1) 차량출입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 조서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부에서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을 불허함	좌동	도봉로변

다. 공공기여 계획에 관한 결정

■ 공공기여 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용도지역		용적률		공공기여율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기준 (허용)	상한	기준	계획	
신설	제3종일반 주거지역	근린 상업지역	250%	600%	부지면적 ^{주1)} 의 29% 이상	35.46%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운영기준」 준용

주1)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부지

－ 공공기여 세부계획

구분		공공기여 내역				건축물 연면적	위치 및 규모	비고 (귀속주체)
		계	부속토지	환산면적	구성비			
공공임대주택		470.46㎡	470.46㎡	－	9.21%	4,554.91㎡	34세대	서울시
도로 기부채납		86.30㎡	86.30㎡	－	1.69%	－	－	강북구
지역 필요	거점형 키움센터	875.07㎡	288.33㎡	586.74㎡	17.13%	2,358.50㎡	195번지 지상 3층	서울시

구분		공공기여 내역				건축물 연면적	위치 및 규모	비고 (귀속주체)
		계	부속토지	환산면적	구성비			
시설	청소년 문화센터	379.64㎡	132.78㎡	246.86㎡	7.43%	1,060.77㎡	195번지 지상 2층	강북구
합계		1,811.47㎡	977.87㎡	833.60㎡	35.46%	7,974.18㎡	-	-

※ 공공임대주택의 토지는 기부채납하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 그 외 공공기여시설(기반시설 포함)은 토지, 건물 모두 기부채납토록 함.

※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위치, 면적(규모)은 조정될 수 있음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고

IV. 관계서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과(☎02-2133-2597) 와 강북구청 도시계획과(☎02-901-6873)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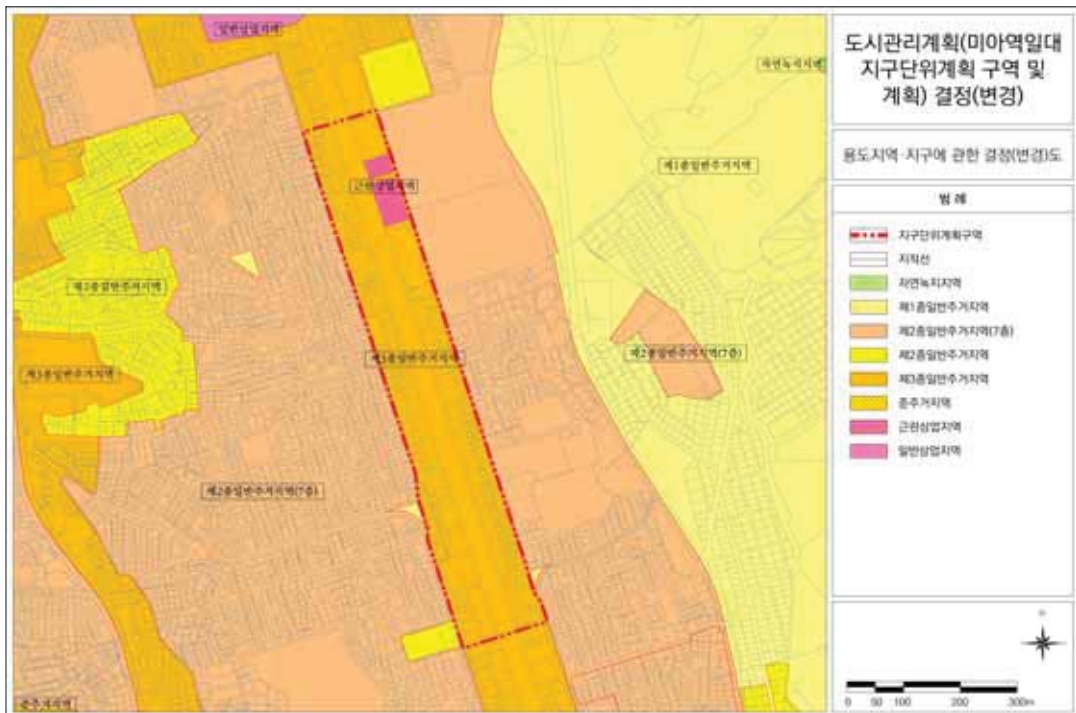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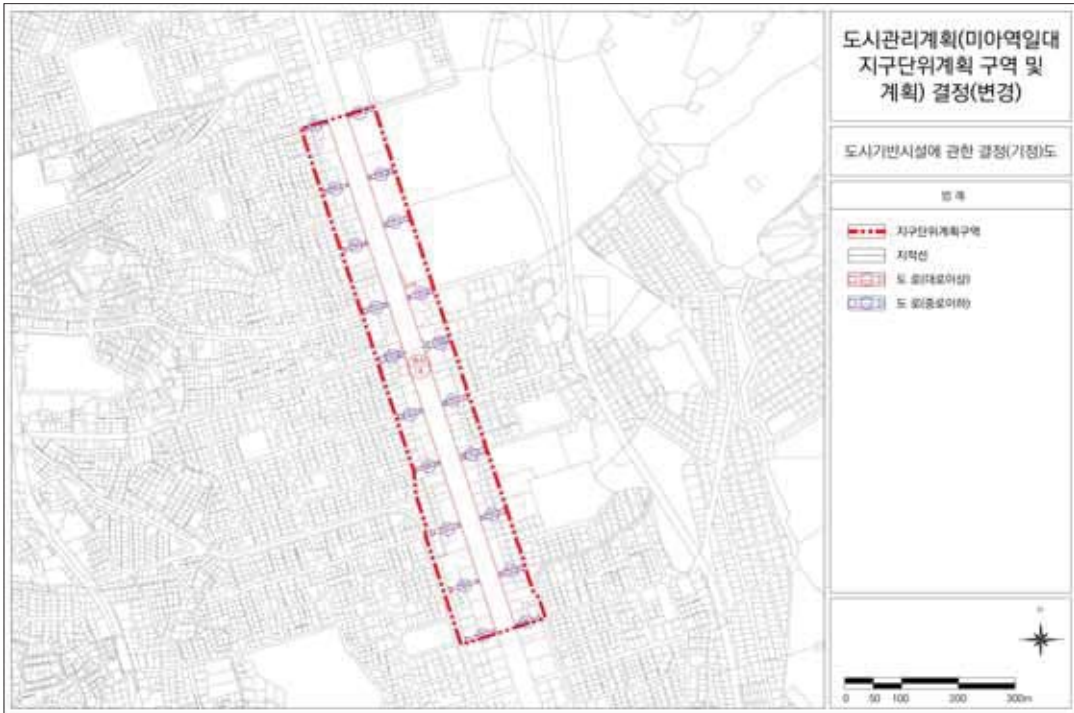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없음)]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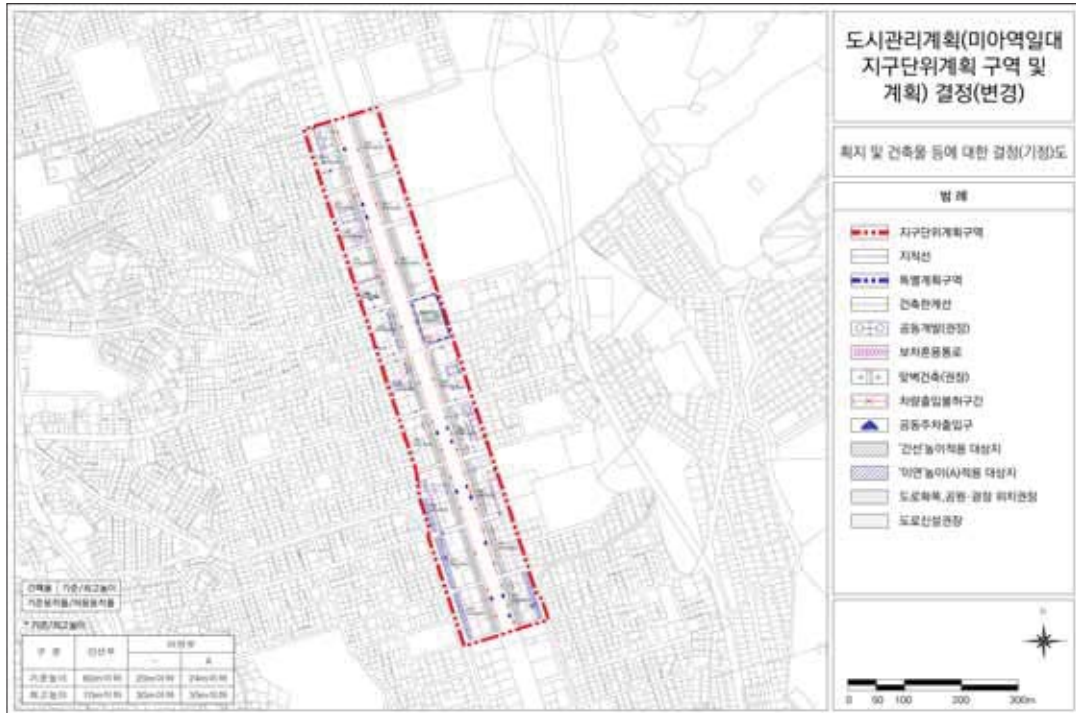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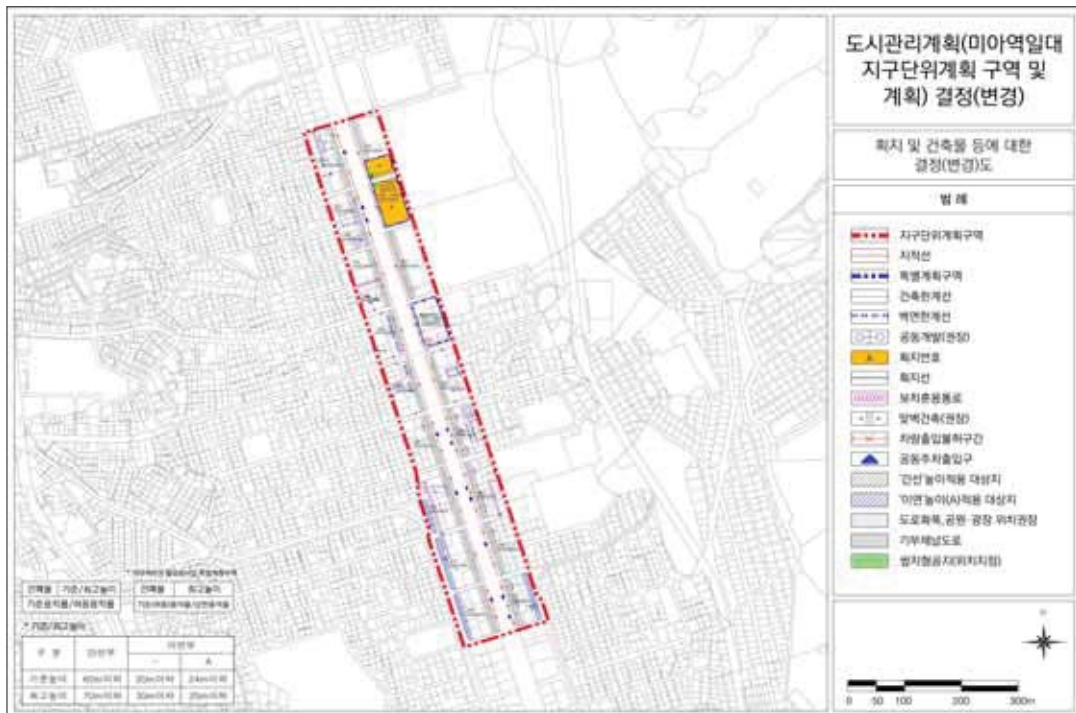
[도시기본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도시기본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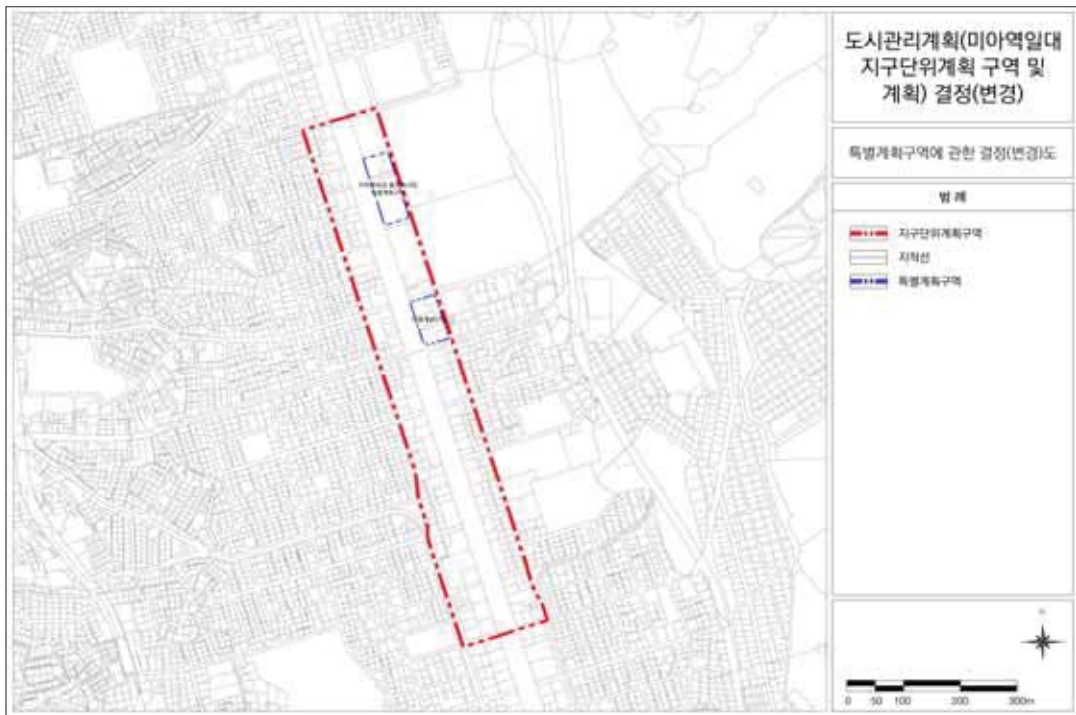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기정)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도]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면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총합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13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고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행정협의회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2. 내 용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별표)에서 서울시 탈퇴에 따른 변경

3. 목 적

○ 서울시는 행정협의회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를 이행하고, 협의회 규약변경 사항(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시 절차 이행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 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71조(협회의 의 규약)
- 「지방자치법」 제175조(협회의 의 규약변경 및 폐지)

5. 문 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02-2133-6888)

붙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2016.01.22.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자치분권분야의 협의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부회장과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자치분권 업무담당부서의 부서장과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국·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 회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1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자치분권 및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제3조 관련)

지역	지자체명
서울(13)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강동구, <u>서울특별시</u> , 강서구, 마포구, 광진구, 강북구, 송파구
인천(4)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3)	서구, 광산구, 남구
대전(2)	서구, 유성구
경기(15)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오산시, 양평군, 부천시, 구리시, 여주시, 화성시, 하남시, 파주시
충남(4)	아산시, 논산시, 공주시, 당진시
부산(1)	연제구
전북(2)	원주군, 진안군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14호

**수색·중산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제2007-177호(2007.06.07)로 변경지정, 제2008-173호(2008.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10-449호(2010.12.0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1-126호(2011.05.19), 제2011-187호(2011.07.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133호(2012.05.2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195호(2012.07.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255호(2012.09.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282호(2012.10.25), 제2013-76호(2013.03.14), 제2013-112호(2013.04.0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68호(2013.05.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84호(2013.06.1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290호(2013.09.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6호(2014.01.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55호(2014.02.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97호(2014. 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17호(2014.06.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99호(2014.08.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445호(2014.12.18.)로 수색·중산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6-126호(2016.04.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6-134호(2016.05.0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6-165호(2016.06.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제2017-28호(2017.01.26)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7-97호(2017.03.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8-58호(2018.03.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8-59호(2018.03.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26호(2019.01.1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143호(2019.05.09)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216호(2019.07.0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282호(2019.08.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365호(2019.11.07.)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0-177호(2020.05.01.)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0-528호(2020.12.10.)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54호(2021.02.0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101호(2021.02.2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제2021-163호(2021.04.01.)로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434호(2021.08.12.)로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566호(2021.10.1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661호(2021.12.09.)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결정, 제2022-231호(2022.05.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22-391호(2022.09.29.)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수색동 증산동	791,310.8	감) 28.0	791,282.8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 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91,310.8	감) 28.0	791,282.8	100.0	
주거 용지	소 계	544,856.5	감) 29.3	544,827.2	68.9	
	공동주택	475,830.7	감) 22.0	475,808.7	60.2	
	상업용지	13,685.0	-	13,685.0	1.7	
	복합용지	34,171.6	감) 7.3	34,164.3	4.3	
	유 치 원	2,273.8	-	2,273.8	0.3	
	종교용지	6,873.6	-	6,873.6	0.9	
	존 치	12,021.8	-	12,021.8	1.5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46,454.3	증) 1.3	246,455.6	31.1	
	도 로	110,328.4	감) 6.5	110,321.9	13.9	
	보행자도로	5,583.3	증) 10.7	5,594.0	0.7	
	공 원	35,339.9	감) 2.9	35,337.0	4.5	
	녹 지	23,032.3	-	23,032.3	2.9	
	광 장	1,001.0	-	1,001.0	0.1	
	전기공급설비	【1.4km중 0.73km】	-	【1.4km중 0.73km】		수색~향동
	변 전 소	542.0	-	542.0	0.1	
	공공청사	3,967.0	-	3,967.0	0.5	
	학 교	56,971.7	-	56,971.7	7.2	
	사회복지시설	4,220.9	-	4,220.9	0.5	
	도 서 관	3,801.8	-	3,801.8	0.5	
	문화시설	1,666.0	-	1,666.0	0.2	
	체육시설	(4,023.0)	-	(4,023.0)	-	복합용지내 복합화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조정

※ 【 】 중괄호결정 또는 지중시설임

※ () 는 복합용지 내 체육시설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890㎡)과 부지 환산면적(3,133㎡)의 합산 면적임

2)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3)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

구분	시설 세분	시설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봉산도시자연 공원			수색동 산17-1임 일대	173,855.3 (지구내3,162.6)		173,855.3 (지구내3,162.6)	
생활권공 원	근린 공원	1 개소		18,194.0		18,194.0	
		3	증산동 207-8대 일대	18,194.0		18,194.0	
	어린이공 원	3 개소		5,038.1		5,038.1	
		1	수색동 135-3대 일대	1,502.0		1,502.0	
		3	증산동 171-10대 일대	1,503.0		1,503.0	
		4	증산동 131-142대 일대	2,033.1		2,033.1	
	문화공원	1 개소		4,448.2	감) 2.9	4,445.3	
		2	증산동 211-11대 일대	4,448.2	감) 2.9	4,445.3	측량 결과
	소공원	2 개소		4,497.0		4,497.0	
		1	수색동 25-15대 일대	925.5		925.5	
		2	수색동 361-10 일대	3,571.5		3,571.5	
녹지	완충 녹지	1 개소		3,015.1		3,015.1	
		4	증산동 160-1대 일대	3,015.1		3,015.1	
	연결 녹지	4 개소		17,416.2		17,416.2	
		6	증산동 188-9대 일대	1,503.0		1,503.0	
		7	증산동 205-33대 일대	4,501.0		4,501.0	
		8	증산동 193-23대 일대	6,137.2		6,137.2	
		9	증산동 131-95대 일대	5,275.0		5,275.0	
	경관 녹지	1 개소		2,601.0		2,601.0	
		5	수색동 321임 일대	2,601.0		2,601.0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가) 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없음)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건폐율	계획용적률		높이(층수)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고		
								층수	최고층수(m)					
기정	21	수색동	341	7.0	60%	242.5%이하		15.1층	20층 (65m이하)	3	전면개발	수색13축진		
기정	22	수색동	115	6.6	50,60%	268.1%이하		19.9층	30층 (92m이하)	2	전면개발	수색6축진		
기정	23	수색동	412	3.1	60%	249.95%이하		17.9층	22층 (66m이하)	2	전면개발	수색7축진		
기정	24	수색동	16	3.0	60%	263.9%이하		18.7층	22층 (66m이하)	2	전면개발	수색8축진		
기정	25	수색동	30	3.6	9-1	50%	9-1	274.0% 이하	25.4층	9-1	30층 (92m이하)	2	전면개발	수색9축진
					9-2	60%	9-2	439.9% 이하		9-2	22층 (85m이하)			
기정	29	수색동	361	6.1	60%	257.63%이하		18.5층	25층 (80m이하)	2	전면개발	수색4축진		
기정	30	증산동	216	7.9	2-1 2-2 2-3	50%	2-1 2-2 2-3	247.7% 이하	22층	2-1 2-2 2-3	30층 (92m이하)	2	전면개발	증산2축진
					2-4	60%	2-4	290.9% 이하		2-4	25층 (90m이하)			
기정	31	증산동	205	17.2	60%	247.0%이하		18.1층	30층 (92m이하)	3	전면개발	증산4축진		
기정	32	증산동	157	11.3	60%	263.7%이하		19.7층	30층 (92m이하)	3	전면개발	증산5축진		

나)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 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791,310.8	감) 28.0	791,282.8	
재정비 촉진 구역	합계 (15개 구역)		-	683,032.6	감) 28.0	683,004.6	
	주택 재개발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1-10일대	61,519.3		61,519.3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15-5일대	65,977.0		65,977.0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412일대	31,402.8		31,402.8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7-28일대	29,884.0		29,884.0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0-2일대	36,348.1		36,348.1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41-6일대	69,681.0		69,681.0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216-10일대	78,755.2	감) 28.0	78,727.2	측량결과 반영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205-33일대	172,932.0		172,932.0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157-34일대	112,804.2		112,804.2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시장정비 사업	수색1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6-11일대	4,422.0		4,422.0	
		수색2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7-6일대	5,026.0		5,026.0	시장정비사업
		수색3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06-1일대	3,704.0		3,704.0	
		수색5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02-20일대	2,961.0		2,961.0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2-13일대	3,163.0		3,163.0	
		수색12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9-3일대	4,453.0		4,453.0	
준치 관리 구역	합계		-	108,278.2	-	108,278.2	
	지구단위계획	수색1준치관리구역	수색동 160일대	52,343.0	-	52,343.0	
	준치	준치	-	55,935.2	-	55,935.2	준치건축물

※ 변경사유 :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 준치 건축물 : 수색초, 증산초·중, 두산위브APT, 문영1차APT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가) 수색1~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나) 증산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8,755.2	감) 28.0	78,727.2	100.0	●측량결과 면적 정정
일반 주거지역	제2종	70,831.0	감) 23.5	70,807.5	90.0	
	제3종	4,274.9	감) 3.5	4,271.4	5.3	
준주거지역		3,649.3	감) 1.0	3,648.3	4.7	

※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다) 증산3~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라) 수색1 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최대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m)	
기정	수색1 재정비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353	400.00이하	-/24이하	104이하	
기정	수색2 재정비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	-	-	-	
기정	수색3 재정비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600	780.00이하	-/35이하	130이하	
기정	수색4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57.63이하	18.50이하/25이하	80이하	
기정	수색5 재정비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549	750이하	-/35이하	130이하	
기정	수색6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60이하	228.1	268.10이하	19.90이하/30이하	92이하	
기정	수색7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9.95이하	17.90이하/22이하	66이하	
기정	수색8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63.90이하	18.70이하/22이하	66이하	
기정	수색9 재정비 촉진구역	9-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31.3	275.00이하	25.40이하/30이하	92이하	
		9-2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60이하	281.8	442.90이하	-/22이하	85이하	
기정	수색11 재정비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360.0	400이하	-/22이하	104이하	
기정	수색12 재정비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553.0	760이하	-/28이하	110이하	
기정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2.50이하	15.10이하/20이하	65이하	
기정	증산2 재정비 촉진구역	2-1,2-2 2-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10.0	247.70이하	22이하/30이하	92이하	
		2-4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60이하	261.09	290.90이하	-/25이하	90이하	
기정	증산4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7이하	18.10이하/30이하	92이하	
기정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63.70이하	19.70이하/30이하	92이하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가) 추진지구 기반시설 (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46,454.3	증) 1.3	246,455.6	
도로	110,328.4	감) 6.5	110,321.9	
보행자도로	5,583.3	증) 10.7	5,594.0	
공원	35,339.9	감) 2.9	35,337.0	봉산근린공원 포함
녹지	23,032.3	-	23,032.3	6개소
광장	1,001.0	-	1,001.0	2개소
전기공급설비	【1.4km중 0.73km】	-	【1.4km중 0.73km】	수색~향동(기설치)
변전소	542.0	-	542.0	
공공청사	3,967.0	-	3,967.0	5개소
학교	56,971.7	-	56,971.7	4개소
사회복지시설	4,220.9	-	4,220.9	6개소
도서관	3,801.8	-	3,801.8	1개소
문화시설	1,666.0	-	1,666.0	1개소
체육시설	(4,023.0)	-	(4,023.0)	1개소(복합운동지내 포함)

※ 【 】는 중복결정 또는 이중시설임

※ ()는 복합운동지내 체육시설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890㎡)과 부지환산면적(3,133㎡)의 합산 면적임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조정

나)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 (변경)

구 분	역명	구역면적 (㎡) A	계획기반시설면적(㎡) ①	계획기반시설내국 공유지(㎡) ②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계획 기반시설중 유상매입시설 ④	순부담 면적(㎡) B=①-②-③-④	기반시설 부담률(%) B/A
합계		683,004.6	184,427.3	42,089.4	61,768.1		88,846.2	13.0
기정	수색1	4,422.0	1,162.0	354.0	371.0		437.0	9.9
기정	수색2	5,026.0	931.0	38.0	128.0		765.0	15.2
기정	수색3	3,704.0	1,342.0	768.0	18.0		556.0	15
기정	수색4	61,519.3	13,477.5	2,099.5	7,051.0		7,666.0	12.4
기정	수색5	2,961.0	1,366.0	444.0	468.0		454.0	15.3
기정	수색6	65,977.0	18,203.0	5,222.0	6,099.0		6,882.0	10.4
기정	수색7	31,402.8	6,240.6	1,963.0	-		4,277.6	13.6
기정	수색8	29,884.0	9,072.0	2,638.0	2,727.0		3,707.0	12.4
기정	수색9	36,348.1	9,114.8	1,023.6	1,729.0		6,362.2	17.5

구 분	역명	구역면적 (㎡) A	계획기반시설면적 (㎡) ①	계획기반시설내국 공유지(㎡) ②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계획 기반시설중 유상매입시설 ④	순부담 면적(㎡) B=①-②-③-④	기반시설 부담률(%) B/A
기정	수색11	3,163.0	315.0	-	-		315.0	9.95
기정	수색12	4,453.0	2,079.0	874.0	495.0		710.0	15.9
기정	수색13	69,681.0	14,280.0	2,375.0	7,698.0		9,144.4	13.1
기정	증산2	78,755.2	23,154.1	7,057.8	7,699.6		8,396.7	10.7
변경		78,727.2	23,155.4	7,057.8	7,699.6		8,398.0	10.7
기정	증산4	172,932.0	51,957.0	10,812.0	16,710.0		24,435.0	14.1
기정	증산5	112,804.2	31,732.0	6,420.5	10,574.5		14,737.0	13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조정

12) 공공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수색1~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나) 증산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 분	촉진사업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주택재개발사업	증산동 216번지 일원	78,755.2	감) 28.0	78,727.2	

※ 변경사유 :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조정

(2) 정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8,755.2	감) 28.0	78,727.2	100.0%	
기 간 사 설	소 계	23,154.1	증) 1.3	23,155.4	29.4%	
	도 로	15,478.4	감) 6.5	15,471.9	19.7%	
	보행자도로	3,227.5	증) 10.7	3,238.2	4.1%	
	공 원	4,448.2	감) 2.9	4,445.3	5.6%	
택지 (획지)	소 계	55,601.1	감) 29.3	55,571.8	70.6%	
	2-1	12,674.3	감) 0.8	12,673.5	16.1%	
	2-2	14,093.1	감) 4.4	14,088.7	17.9%	
	2-3	24,465.3	감) 18.7	24,446.6	31.1%	
	2-4	4,295.9	감) 7.3	4,288.6	5.4%	
	2-5	72.5	증) 1.9	74.4	0.1%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① 도로

－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기정	중로	1	443	21 (10.5)	집분산 도로	82	증산동 198-6구 일원	증산동 198-7구 일원	일반 도로	-	서고제2008-173호 (08.05.22)	
기정	중로	1	444	21	집분산 도로	1,480 (480)	증산동 222-4대 일원	증산동 158-26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제2008-173호 (08.05.22)	
기정	중로	2	467	15	국지 도로	619 (113)	수색동 145.2대 일원	수색동 218-8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제2008-173호 (08.05.22)	
기정	중로	2	469	15 (7.5)	국지 도로	132	증산동 219-28대 일원	증산동 219-15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제2008-173호 (08.05.22)	
기정	중로	2	475	15 (7.5)	특수 도로	41	증산동 32-34대 일원	증산동 217-32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제2008-173호 (08.05.22)	
기정	중로	3	458	12	국지 도로	27	증산동 217-4대 일원	증산동 217-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제2008-173호 (08.05.2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기정	중로	3	459	12~15	국지 도로	104	증산동 233도 일원	증산동 233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제2008-173호 (08.05.22)	
기정	소로	1	1	10~15 (15)	국지 도로	154 (70)	증산동 24-3대 일원	증산동 216-14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제2008-173호 (08.05.22)	
기정	소로	1	3	6~10	특수 도로	150	증산동 217-28대 일원	증산동 217-4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제2008-173호 (08.05.22)	
기정	소로	1	4	10	특수 도로	180	증산동 236도 일원	증산동 233도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제2008-173호 (08.05.22)	

※ ()는 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변경은 없음

②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2	공원	문화 공원	증산동 211-11대 일원	4,448.2	감) 2.9	4,445.3	서고제2008-173호 ('08.05.22)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문화공원	•면적 정정 - 4,448.2㎡ → 4,445.3㎡(감 2.9㎡)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증산2 재정비 촉진구역	78,755.2	계	55,601.1	증산동 216	246	-	-	246	-	
			2-1	12,674.3							
			2-2	14,093.1							
			2-3	24,465.3							
			2-4	4,295.9							
			2-5	72.5							
변경	증산2 재정비 촉진구역	78,727.2	계	55,571.8	증산동 216	246	-	-	246	-	
			2-1	12,673.5							
			2-2	14,088.7							
			2-3	24,446.6							
			2-4	4,288.6							
			2-5	74.4							

②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증산2 재정비 촉진구역	78,755.2	소계	55,601.1							
			2-1	12,674.3	-	126,903	공동주택	50%이하	247.7% 이하	22/30 (92m이하)	
			2-2	14,093.1	-						
			2-3	24,465.3	-						
			2-5	72.5	-	-	공동주택	50%이하	247.7% 이하	22/30 (92m이하)	
			2-4	4,295.9	-	12,496	복합용도	60%이하	290.9% 이하	-/25 (90m이하)	
변경	증산2 재정비 촉진구역	78,727.2	소계	55,571.8							
			2-1	12,673.5	-	126,843	공동주택	50%이하	247.7% 이하	22/30 (92m이하)	
			2-2	14,088.7	-						
			2-3	24,446.6	-						
			2-5	74.4	-	-	공동주택	50%이하	247.7% 이하	22/30 (92m이하)	
			2-4	4,288.6	-	12,419	복합용도	60%이하	290.9% 이하	-/25 (90m이하)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구 분			세 대 수						
					기정		변경			변경후	
		2-1 2-2 2-3	건립예정 세대수 소계		1,256		-			1,256	
			전용면적 40㎡이하		98		-			98	
			전용면적 40~50㎡		42		-			42	
			전용면적 50~60㎡		266		-			266	
			전용면적 60~85㎡		850		-			850	
			전용면적 85㎡초과		-		-			-	
		2-4	건립예정 세대수 소계		132		-			132	
			전용면적 40㎡이하		16		-			16	
			전용면적 40~50㎡		57		-			57	
			전용면적 50~60㎡		59		-			59	
		■주택의 규모별 건설계획 적용기준 · 전체 세대수의 20%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2호 기준준수) · 전체 세대수의 6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1항1호 기준준수) ·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증가하는 세대수는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하여야 함. ※ 2-4의 주된용도 중 업무시설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용도를 뜻함.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6m(연도형 상가 구성 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격)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없음)

(마)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획지면적(㎡)		연면적(㎡)	세대규모	세대수	
계	기정	55,528.6	14,441.30	계	237	
	변경	감) 31.2				
	변경후	55,497.4				
2-1	기정	51,232.7	10,021.47	소 계	164	
2-2	변경	감) 23.9		전용면적 40㎡이하	98	
2-3	변경후	51,208.8		전용면적 40~50㎡	42	
				전용면적 50~60㎡	24	
2-4	기정	4,295.9	4,419.83	소 계	73	
	변경	감) 7.3		전용면적 40㎡이하	16	
	변경후	4,288.6		전용면적 40~50㎡	57	
				전용면적 50~60㎡	-	
적용 기준	·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주거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40%이상을 건설할 것					

다) 증산4~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라) 수색1 준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음)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형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수색동, 증산동	791,310.8	감) 28.0	791,282.8	서고제2008-173호 (2008.05.22)

※ 변경사유 :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조정

나) 용도지역 결정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91,310.8	감) 28.0	791,282.8	100.0	
주거 지역	소 계	776,609.8	감) 27.0	776,581.8	98.1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3,972.6	83,972.6	10.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49,940.4	149,940.4	18.9	
		제2종일반주거지역	414,625.7	감) 23.5	414,602.2	52.4
		제3종일반주거지역	74,591.0	감) 3.5	74,587.5	9.4
	준주거지역		53,480.1	감) 1.0	53,479.1	6.8
일반상업지역		14,701.0		14,701.0	1.9	

※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조정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변경없음)

(가) 도로 (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기정	대로	1	4	34~40	주간선도 로	1,700	남가좌동 (사천교)	신도읍 강매리	일반 도로	-	건고738호 (63.12.24)	
기정	중로	2	61	15	보조간선 도로	5,615	갈현동 (신:388-1)	수색동 (신:109-1)	일반 도로	-	서고 2002-262호 (02.06.27)	
기정	중로	1	442	21	집산 도로	72	수색동 411-9도 일원	수색동 411-9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3	18~21	집산 도로	82	증산동 198-6구 일원	증산동 198-7구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4	10~21	집산 도로	1,480	증산동 222-4대 일원	증산동 158-26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5	21	집산 도로	91	증산동 197-5도 일원	증산동 197-5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6	9~21	국지 도로	48	증산동 168-4대 일원	증산동 168-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7	10.5~ 21	집산 도로	102	증산동 196-1도 일원	증산동 196-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1	15~19	국지 도로	733	수색동 325-21대 일원	수색동 11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2	15	국지 도로	484	수색동 358-3대 일원	수색동 136-5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3	15	국지 도로	202	수색동 115-11대 일원	수색동 136-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4	15	국지 도로	212	수색동 160대 일원	수색동 165-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5	15~21	국지 도로	57	수색동 101-7대 일원	수색동 16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6	15	국지 도로	481	수색동 172도 일원	수색동 28-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7	15	국지 도로	619	수색동 145-2대 일원	수색동 218-8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8	15	국지 도로	50	수색동 77-5대 일원	수색동 160-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9	15	국지 도로	132	수색동 219-28대 일원	수색동 219-15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기정	중로	2	470	15	국지 도로	80	증산동 산21-3임 일원	증산동 206-4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1	11~15	국지 도로	91	증산동 197-18도 일원	증산동 174-1주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3	15	국지 도로	115	증산동 198-1구 일원	증산동 198-1구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5	15	국지 도로	41	수색동 32-34도 일원	수색동 217-32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6	15	국지 도로	44	수색동 76-1대 일원	수색동 32-6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58	12	국지 도로	27	증산동 217-4대 일원	증산동 27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59	12~15	국지 도로	104	증산동 233도 일원	증산동 233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1	6~12	국지 도로	146	증산동 197-18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3	12	국지 도로	170	증산동 197-6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5	12	국지 도로	215	증산동 200-1도 일원	증산동 197-23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6	6~12	국지 도로	283	증산동 197-5도 일원	증산동 197-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1	10~15	국지 도로	154	수색동 24-3대 일원	수색동 216-14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2	11	국지 도로	115	증산동 254-1도 일원	증산동 201-7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3	6~10	특수 도로	150	증산동 217-28대 일원	증산동 217-4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4	10	특수 도로	185	증산동 236도 일원	증산동 233도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60	증산동 197-6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2	2	9	특수 도로	49	수색동 102-20대 일원	수색동 104-1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6	수색동 129-4학 일원	수색동 129-4학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2	7	특수 도로	63	수색동 368-4대 일원	수색동 411-9도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기정	소로	3	4	4.5	특수 도로	65	수색동 366-5대 일원	수색동 365-8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53	증산동 131-95대 일원	증산동 254-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12-195호	
기정	소로	3	6	6~8	국지 도로	185	수색동 153-1일원	수색동 76-27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2-262호	

(2) 공간시설 (변경)

(가) 공원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봉산도시 자연공원	수색동 산17-1임 일대	173,855.3 (지구내 3,162.6)	-	173,855.3 (지구내 3,162.6)	서고제513호 (83.09.29)	
기정	3	근린공원	증산동 207-8대 일대	18,194.0	-	18,194.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1	어린이 공원	수색동 135-3대 일대	1,502.0	-	1,502.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변경	2	문화공원	증산동 211-11대 일대	4,448.2	감) 2.9	4,445.3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3	어린이 공원	증산동 171-10대 일대	1,503.0	-	1,503.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4	어린이 공원	증산동 131-142대 일대	2,033.1	-	2,033.1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1	소공원	수색동 25-15대 일대	925.5	-	925.5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2	소공원	수색동 361-10 일대	3,571.5	-	3,571.5	서울시고시 제2016-134호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문화공원	•면적 정정 - 4448.2㎡ → 4,445.3㎡(감 2.9㎡)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나) 녹지 (변경없음)

(3) 유통공급시설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없음)

마) 수색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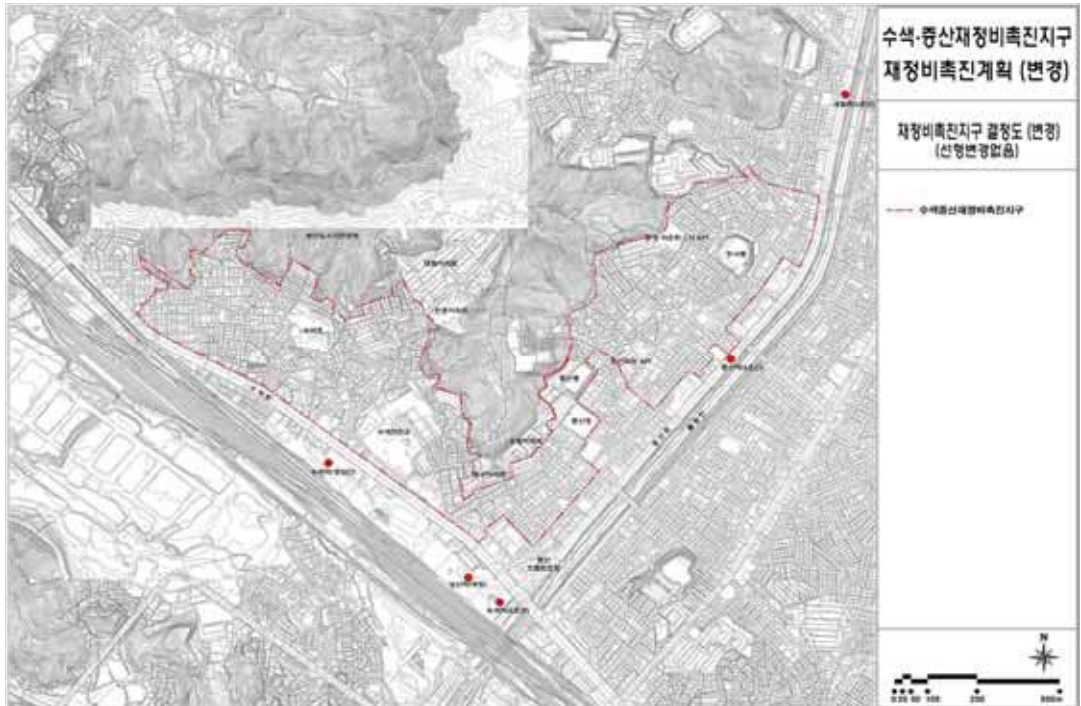
마.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도서」에 명시

바.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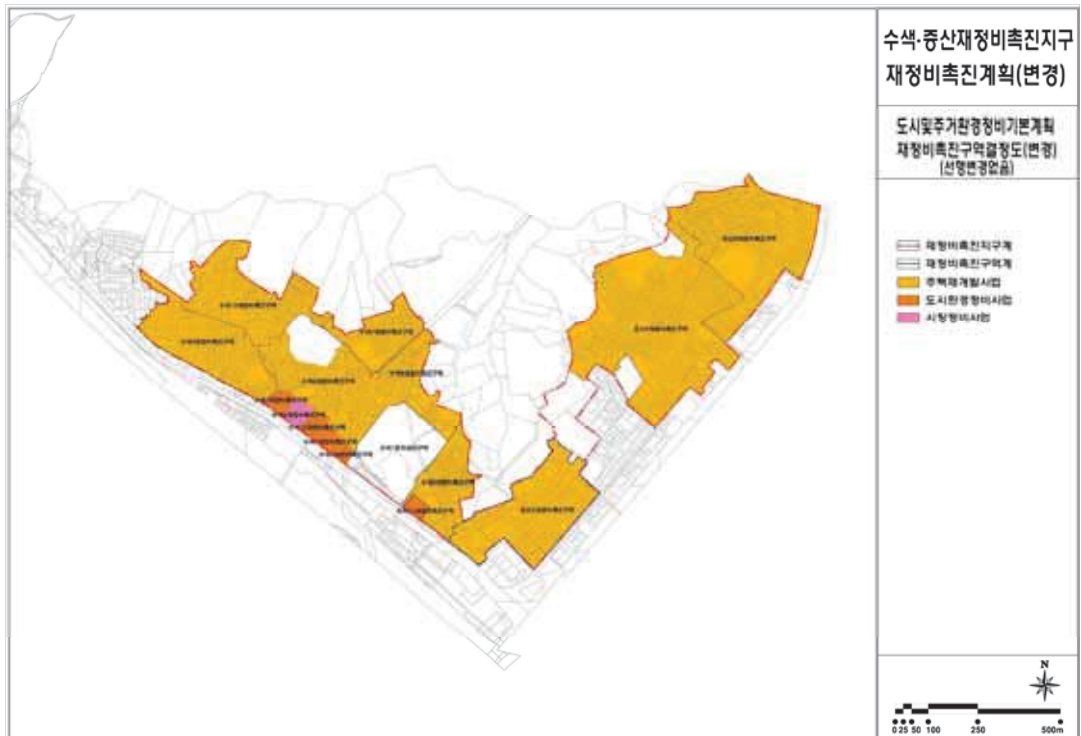
※ 첨부된 “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02)2133-7223)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 02)351-742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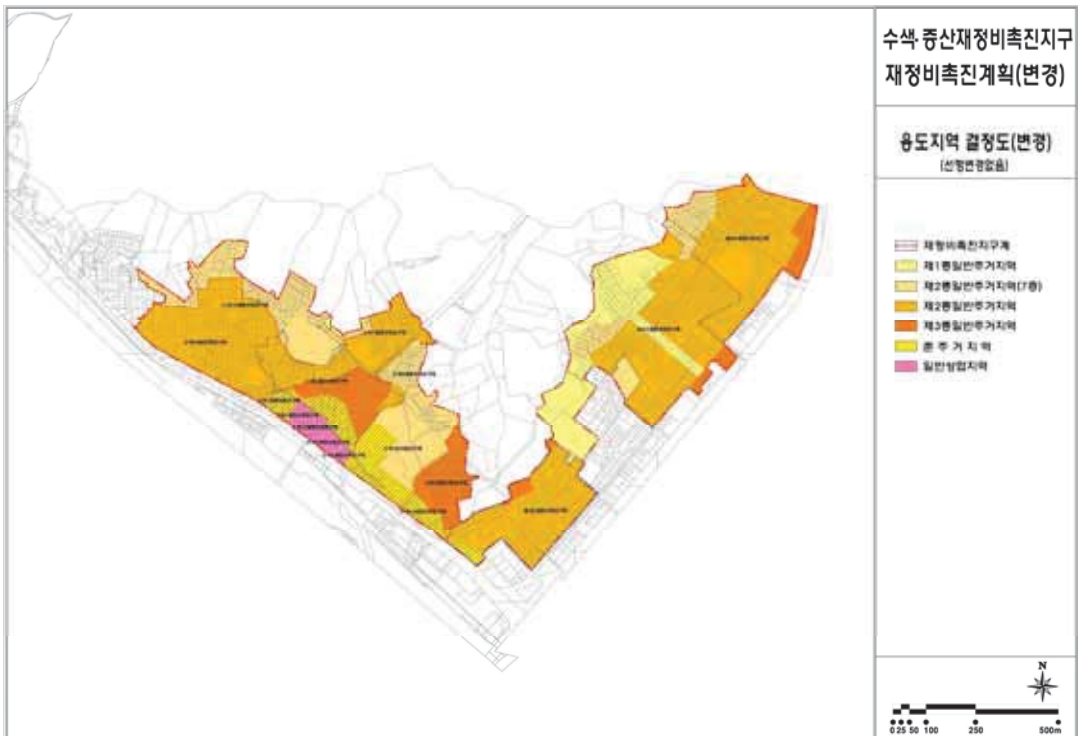
■ 수색·중산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 변경 (선형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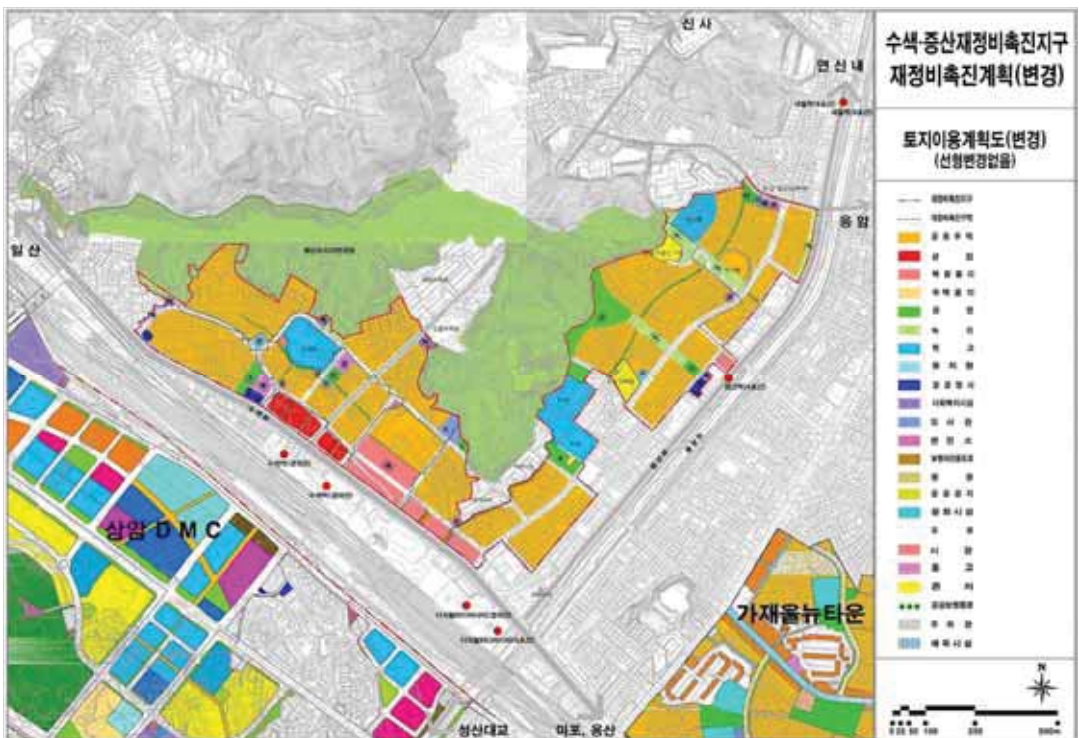
■ 수색·중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 (선형변경없음)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결정도 : 변경 (선형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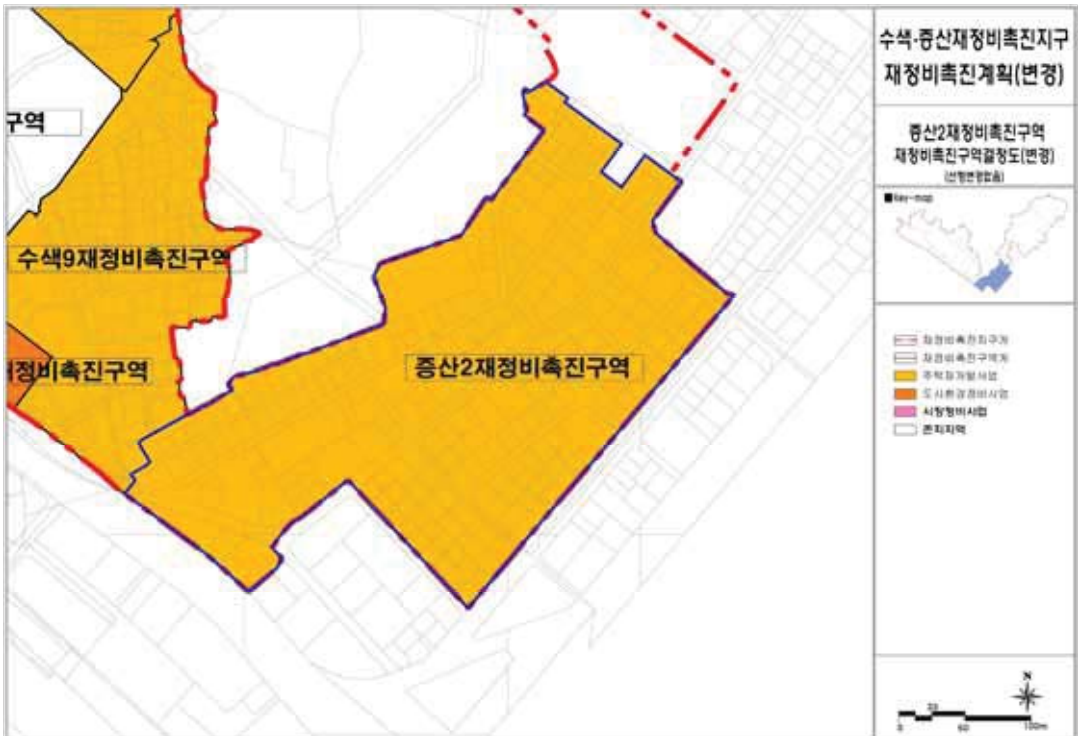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선형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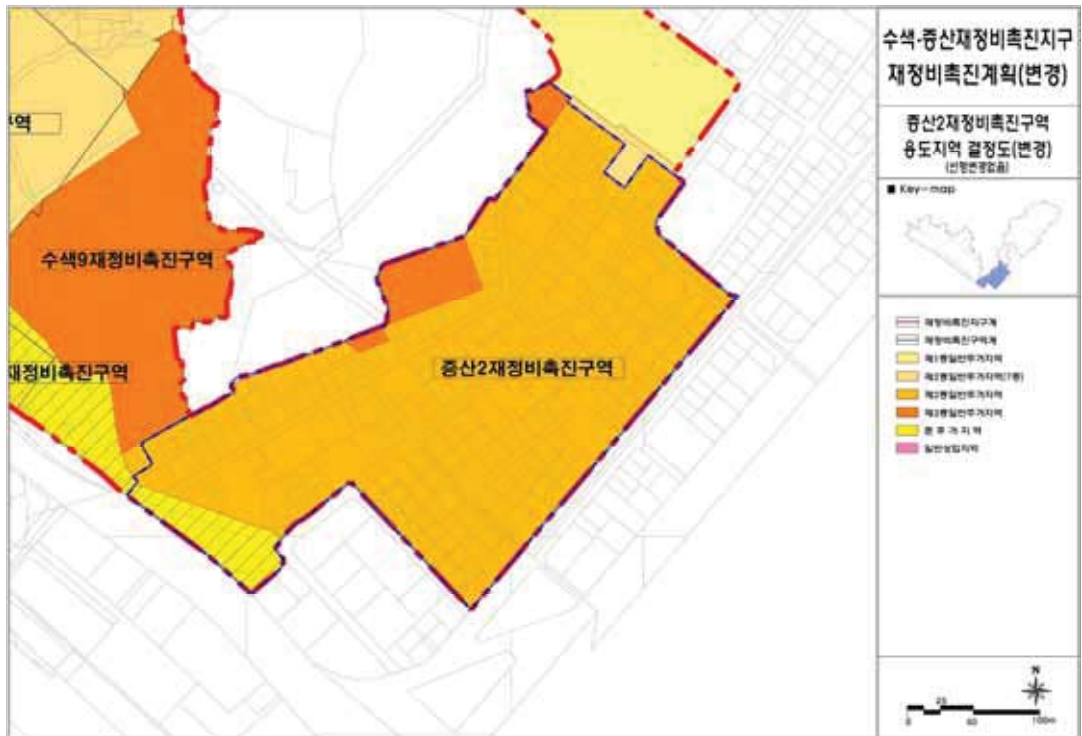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도 : 변경 (선형변경없음)



■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 (선형변경없음)



■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결정도 : 변경 (선형변경없음)



■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선형변경없음)



■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도 : 변경 (선행변경없음)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768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제4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을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계획

가.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 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관리자)
서울 특별시 유형 문화재	미타사 정수암 현왕도 (彌陀寺 淨水庵 現王圖)	1점	전체 크기 : 125×91 그림 크기 : 118×84	1844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6 (阿毘達磨大毗婆沙論 卷16)	1책 (24장)	34.1×12.1	고려 말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청자 퇴화 능화문 매병 (靑磁 退化 菱花文 梅瓶)	1점	높이 28.8, 입지름 4.8, 밑지름 10.6	고려 시대	마포구 (재)금성문화재단
	청자 표형 주자 (靑磁 瓢形 注子)	1점	높이 28.4, 굽지름 7.6~7.8, 입지름 3.6, 몸체높이 25.5~27.3, 뚜껑 폭 3.6	고려 시대	마포구 (재)금성문화재단
	백련사 용경삼년명 동종 (白蓮寺 隆慶三年銘 銅鐘)	1점	전체높이 65, 입지름 57.1	조선 1569년	서대문구 (태고종 백련사)
	임인진연도 병풍 (壬寅進宴圖 屏風)	1점	162.3×55.5 (그림 각폭) 199×620 (전체)	1902년	서초구 (국립국악원)
	임인진연도 병풍 (壬寅進宴圖 屏風)	1점	162.3×55.5 (그림 각폭) 199×620 (전체)	1902년	서초구 (국립국악원)

나. 예고(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여,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예고함.

■ 유형문화재

【미타사 정수암 현왕도(彌陀寺 淨水庵 現王圖)】

미타사 정수암 <현왕도>는 양식 표현 부분 및 화기가 잘 남아 있어 1844년의 조성연대가 분명함은 물론, 19세기 전반기 ~ 20세기 전반기까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약상을 보인 ‘희원’과 ‘혜호’에 의해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18세기 전반기 ~ 20세기 전반기까지 조성된 현왕도는 현재 100여 점이 전해지고 있는데 19세기에 조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 가운데 미타사 정수암 <현왕도>는 ‘희원’이 조성한 몇 점 안 되는 귀중한 불화라는 점, 19세기 전반기에 조성한 것으로 조성 시기가 비교적 빠른 사례에 속하는 가치가 있는 불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도상 형식 또한 1802년 조성의 파주 보광사 <현왕도>를 수용하고 1846년 조성의 남양주 홍국사 <현왕도>까지 계승시킨 불화로, 19세기 전반기에서 20세기 전반기의 화승 계보와 화풍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다.

이에 미타사 정수암 <현왕도>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6(阿毘達磨大毗婆沙論 卷16)】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의 조사 대상본은 재조(再造) 대장경의 인함(仁函)에서 일함(逸函)에 편입된 『아비달마대비바사론』으로 전체 200권 중에 권16에 해당하는 목판본 불경 1권이다.

본 조사본은 재조대장경으로 병풍처럼 접었다 펼칠 수 있는 절첩장 형태로 장황되어 있으므로 인경 시기가 여말선초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 앞뒤의 표지가 완전하고 내용에도 훼손된 부분이 전혀 없어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표지는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황염한 황지로 만들었으며, 표지의 중앙에 먹으로 쌍행의 테두리를 그려 넣고, 그 안에 ‘阿毘達磨大毗婆沙論 卷第十六 慈’과 같이 위로부터 개법장진언, 경명, 권수, 천자문 함자의 순서로 표제를 흑묵(黑墨)으로 써넣었다.

조사 대상본은 전체적으로 먹색이 선명하고 자획에 완결이 없는 인쇄상태로 보아 판각(1244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와 동일한 재조본이 매우 희귀하여 고려대장경 연구에 중요한 실물자료로 평가된다.

【청자 퇴화 능화문 매병(靑磁堆花菱花文梅瓶)】

조사대상 <청자 퇴화 능화문 매병>은 매병에 퇴화기법을 사용한 희귀한 사례 중 하나로 백토니(白土泥)와 자토니(赭土泥)를 붙여 활용한 안료의 사용 방식, 문양 소재의 선택과 크기·구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퇴화 청자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에 해당된다.

조사대상은 매병의 형태와 양감·비례 등이 균형 잡히고 안정감 있으며, 태도와 유색, 번조 상태 등이 양호하고, 파손되어 유실된 부분 없이 비교적 제작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조사대상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청자 표형 주자(靑磁瓢形注子)】

조사대상 <청자 표형 주자>는 고려시대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주자 중 품질이 우수하고, 크기와 형태·비례 등이 조화를 이뤄 예술성이 높고, 전해지는 작품의 수도 적어 희소성이 있는 등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다고 생각된다.

조사대상은 주구와 손잡이 일부가 손상되었고, 뚜껑이 복원된 것이지만, 태토와 유색, 번조 상태 등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하고, 비교적 제작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전라남도 강진, 전라북도 부안에서 제작된 양질 청자 주자의 사례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조사대상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백련사 용경삼년명 동종(白蓮寺 隆慶三年銘 銅鍾)】

백련사 용경삼년명 동종은 명문이 남아 있어, 1569년(宣祖 2) 4월 청동 2백근을 들여 제작한 사실과 다수의 후원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후대에 추가된 기록으로, 백련사 주지로 부임한 金西翁의 이름과 1907년(高宗 44) 이후의 소장 내력을 파악할 수 있다.

동종은 우수한 기술로 주조되었고 전체적인 외형과 세부 특징을 대체로 잘 유지하고 있다. 동종의 양식은 고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조선 16세기에 유행한 제작 유형을 따르고 있다. 현재 16세기에 제작된 동종은 8점이 알려져 있고 그 가운데 2점은 도난되거나 소실된 상황이므로, 백련사 소장품은 조선 전기 범종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백련사 동종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제작연대를 포함한 명문이 남아 있으며, 조선 전기 범종의 공예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인진연도 병풍(壬寅進宴圖 屏風)】

이 작품은 1902년(광무 6년, 임인년) 고종 황제가 51세로 망륙(望六)이 되자, 숙종과 영조의 뒤를 이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게 되었고, 황태자(순종)의 간청에 의해 진연(進宴)이 거행된 것을 기념하여 제작한 것이다. 처음 다섯 폭은 기로소와 관련된 것이고 다음 네 폭은 경운궁(현 덕수궁) 함녕전(咸寧殿)에서 열린 진연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다. 3월 27일과 28일에 행한 기로소 입소를 제1폭에서 제5폭까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진연례를 제6폭에서 제9폭까지 묘사했다. 마지막 폭은 좌목(座目)으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은 대한제국 시기 중요한 궁중행사를 상세하게 기록한 대형 병풍으로 역사적, 미술사적, 음악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회화적 완성도가 뛰어나서 대한제국 황실의 높은 회화적 역량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따라서 시지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임인진연도 병풍(壬寅進宴圖 屏風)】

이 작품은 1902년(광무 6년, 임인년) 고종 황제가 51세로 망륙(望六)이 되자, 숙종과 영조의 뒤를 이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게 되었고, 황태자(순종)의 간청에 의해 진연(進宴)이 거행된 것을 기념하여 제작한 것이다. 처음 다섯 폭은 기로소와 관련된 것이고 다음 네 폭은 경운궁(현

덕수궁) 함녕전(咸寧殿)에서 열린 진연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다. 3월 27일과 28일에 행한 기로소 입소를 제1폭에서 제5폭까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진연례를 제6폭에서 제9폭까지 묘사했다. 마지막 폭은 좌목(座目)으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은 대한제국 시기 중요한 궁중행사를 상세하게 기록한 대형 병풍으로 역사적, 미술사적, 음악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회화적 완성도가 뛰어나서 대한제국 황실의 높은 회화적 역량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따라서 시지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 의견 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① 전화 : (02) 2133-2632

② 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4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미타사 정수암 현왕도(彌陀寺 淨水庵 現王圖)】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미타사 정수암 현왕도 彌陀寺 淨水庵 現王圖
수 량	1점	규 격	전체 크기 : 125cm×91cm 그림 크기 : 118cm×84cm
재 료	비단 바탕에 채색	소유자	
시 대	1844년(道光 24年)	소재지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미타사 정수암에 봉안된 <현왕도>는 염라대왕상을 주존으로 그린 불화로 비단 바탕에 조성되었다. 그림의 전체 크기는 세로 125cm×가로 91cm이며, 화면 크기는 세로 118cm×가로 84cm이다. 나무로 틀을 만들어 판넬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네 귀퉁이에 주사(朱砂)로 다라니를 기록하였다. 2. 원형 유지 정도 도상들의 형태는 구별이 가능하나 화면 전반적으로 검게 변색되었고 화면이 꺾여 있거나 구멍 난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되며 곰팡이, 찌꺼기, 여러 오물 등으로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태이다. 3. 내용 및 특징 폭 40cm, 41.5cm, 10cm 정도 너비의 비단 천 세 폭을 잇대어 만든 바탕에 그린 현왕도로서, 6폭 병풍을 배경으로 중앙의 현왕상을 비롯하여 5위의 권속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왕상은 흰색 머리카락과 수염의 묘사로 노인 모습처럼 표현하였고 입가에 얹은 미소를 짓기는 하였지만 날카로우면서도 강직해 보이는 인상이다. 녹색의 두광을 구비하고 있으며 좌우측에 화려한 용머리 장식을 하고 짐승의 모피를 덮어 한껏 위엄스럽게 포장한 등받이 의자에 기대고 앉아서 화면 좌측(向左)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연화문과 구름문으로 시문한 붉은색 조복을 입고 허리띠를 착용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금강경』으로 짐작되는 경책을 반으로 나누어 접어 얹은 원유관을 쓰고 있고 왼손에는 홀(笏)을 잡고 오른손은 흰 수염을 만지며 있는 형상으로 묘사하였다. 현왕상 앞에는 책과 두루마리 문서, 옥으로 만든 인장(印章)과 복숭아 형태의 연적, 수양매월(首陽梅月)이라고 새겨진 최상품의 먹이 놓인 탁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좌우측으로 현왕의 협시인 전륜성왕상과 대륜성왕상 2위와 중앙에는 무릎 꿇고 두루마리에 판결문을 기록하는 녹사상이 자리하고 있다. 전륜성왕상		

과 대륜성왕상은 원유관을 쓰고 학문과 국화문이 시문된 붉은색 조복에 쌍학문 형상이 수놓인 흉배를 착용하고 있으며 공수한 자세로 근엄하게 서 있다. 한편 녹사상은 검은색 사모를 쓰고 연화문이 시문된 녹색 조복을 입고 있으며 단학문이 수놓인 흉배를 하고 있어 성왕들과 관등의 차이를 두어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화면 상단부 현왕상의 좌우측에는 판관으로 보이는 인물상과 양 갈래로 머리를 묶어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동자상을 표현하였다. 판관상은 홀을 양손으로 잡고 매서운 눈의 표현으로 강인한 인상을 하고 있으며 동자상은 작은 입과 양볼에 살집이 있게 묘사하였고 새침한 표정으로 어피(魚皮)로 만든 인괘(印櫃)를 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타사 정수암 <현왕도>는 간결하면서 기품이 느껴지는 화면 구성과 도상의 표현, 적색과 녹색의 색채 대비, 힘이 있으면서 유연한 필선, 의자의 화려한 용두 장식과 의복의 다양하고 정교한 금문양, 고급스러움과 양감을 표현한 지물의 고분기법 등 19세기 전반기 서울·경기 지역의 양식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화면 하단 좌우측에 화기란이 마련되어있다. 기록에 의하면 미타사 정수암 <현왕도>는 1844년 6월에 쌍운당 희원(雙雲堂 熙圓)과 중봉당 혜호(中峰堂 慧皓)등 5명의 화승과 도감, 별좌, 화주, 종두, 공양주 등 여러 비구니 스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 불화이다.

‘희원(熙圓)’과 ‘혜호(慧皓)’는 19세기 전반기~20세기 전반기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한 화승으로 ‘희원’은 남양주 내원암 <아미타후불도> (1831년), 서울 수국사 <감로왕도> (1832년) 등을 조성하였으며, ‘혜호’는 1846년에 남양주 홍국사 <감로왕도>와 <현왕도>, 1861년에 서울 화계사 <아미타후불도>와 <칠성도> 등을 조성하였다. 특히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남양주 천보산 석천암 <지장시왕도>(1848년)는 화승 ‘희원’과 ‘혜호’가 함께 조성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원도 용궁사(龍貢寺) 만봉당일형진영도(萬峰堂一涇眞影圖)의 찬문에는 “쌍운문인 중봉 혜호”라고 기록되어 있어 ‘혜호’는 쌍운당 ‘희원’의 문중에서 화업을 연마하였던 화승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802년에 화승 ‘경옥(慶郁)’이 조성한 파주 보광사 <현왕도>는 서울·경기 지역 현왕도의 도상 본보기로 볼 수 있는데 ‘경옥’은 ‘희원’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어 도상의 수용과 계승의 전개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18세기 전반기~20세기 전반기까지 조성된 현왕도는 현재 100여 점이 전해지고 있는데 19세기에 조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 가운데 미타사 정수암 <현왕도>는 ‘희원’이 조성한 몇 점 안되는 귀중한 불화라는 점, 19세기 전반기에 조성한 것으로 조성 시기가 비교적 빠른 사례에 속하는 가치가 있는 불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書記]

[향 우측]

道光二十四年甲辰六月初八日□

王會始役□

落成 奉安于終南山彌陀寺□庵

緣化秩

證明 印虛□□

誦呪 南冥□□

金魚 雙雲熙圓

中峰慧皓

比丘□□

比丘□□

比丘□□

持殿 比丘尼□□

都監 比丘尼□□

別座 比丘尼□□

化主 比丘尼□□

鍾頭 比丘尼□□

比丘尼□□

供養主 比丘尼□□

比丘尼□□

淨桶 比丘尼□□

[향 좌측]

大施主秩

乾命 壬寅生崔□□

坤命 甲寅生□□□

乾命 癸亥生金□□

坤命 庚午生□□□

子 丁酉生金□□

書記 比丘性□

조사 결과**4. 지정 여부 : 可**

이상에서 살펴 본 미타사 정수암 <현왕도>는 양식 표현 부분 및 화기가 잘 남아 있어 1844년의 조성연대가 분명한 물론, 19세기 전반기~20세기 전반기까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약상을 보인 ‘희원’ 과 ‘혜호’ 에 의해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도상 형식 또한 1802년 조성의 파주 보광사 <현왕도>를 수용하고 1846년 조성의 남양주 흥국사 <현왕도>까지 계승시킨 불화로, 19세기 전반기에서 20세기 전반기의 화승 계보와 화풍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다.

이에 미타사 정수암 <현왕도>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서울 미타사 정수암 현왕도(1844년)



남양주 흥국사 현왕도(불암사 소장, 1846년)



파주 보광사 현왕도(1802년)



미타사 정수사 현왕도 현왕상 및 탁자 부분도



향좌측 부분도(대륜성왕상, 동자상)



향우측 부분도(전륜성왕상, 판관상)



하단 중앙 부분도(사자상 및 화면 훼손 부분)



전륜성왕상 조복의 문양 부분도



향 우측 화기	향 좌측 화기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6(阿毘達磨大毗婆沙論 卷16)】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6 (阿毘達磨大毗婆沙論 卷16)
수 량	1책(24장)	규 격	34.1×12.1cm
재 료	종이(楮紙)	소유자	
시 대	고려 말	소재지	
조사 내용	1. 문화재 개요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의 조사 대상본은 재조(再造) 대장경의 인함(仁函)에서 일함(逸函)에 편입된 『아비달마대비바사론』으로 전체 200권 중에 권16에 해당하는 목판본 불경 1권이다. 이 불경은 기원전 2세기 무렵 인도 쿠산왕조의 카니시카왕이 5백명의 아라한을 모아 결집한 경전으로 656-659년 사이에 당나라 현장이 200권으로 한역한 논서다. 이 경은 설일체유부의 대표적인 논서인 『아비달마발지론(阿毘達磨發智論)』을 토대로 설일체유부의 이론을 상세하게 해설하였으며, 산스크리트경명은 Abhidharmamahāvibhāṣā Śāstra인데, 이를 줄여서 ‘대비바사론’ 혹은 ‘비바사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논(論)이라는 뜻에서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정리, 주석, 연구, 요약한 불전을 논서라고 한다. 이런 논서들은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조성되었으며, 이들을 모은 논장(論藏)이 성립되었다. 아비달마는 석가모니가 설한 교법을 연구하고 그 의미를 해명하여 새로운 교리도 발전시켰다. 「대비바사론」은 「발지론」의 주석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주석서에 그치지 않고 그 결함을 보충하여 설일체유부의 모든 교리를 집대성한 논서라고 한다. 2. 조사내용 고려시대 대장경은 2차에 걸쳐서 조성되었다. 먼저 첫 번째로 조성된 초조대장경은 11세기의 76년 동안이나 걸려 완성되었으나, 13세기 초에 몽고군의 침략으로 불에 타서 소멸되었다. 불탄 직후 고려 무신정권의 막대한 지원으로 재조대장경은 착수한 지 불과 15년만인 1251년에 조성이 완료되었다. 이때 판각된 재조대장경의 경판은 현재 합천 해인사의 판전에 보존되어 있어 그동안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경(印經)해 왔다. 이처럼 재조본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수집 차례 인경되어 주요 사찰과 일본 등에 하사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전래본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그래서 재조본의 간행 연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문헌 자료의 고증과 더불어 실물자료의 서지적 특징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재조본은 인경 시기에 따라 사용한 종이의 상태나 인경본의 장황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려시대 판각이 완료된 직후에 인경된 판본은 먹색이 선명하고 권자본 형태로 장황하였으며,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의 인경본은 주로 절첩본 형태이나 그 이후에 인경본은 대부분 선장본 형태로 장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존하는 재조본의 실물자료 중에 권자본과 절첩본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 선장본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본 조사본은 재조대장경으로 병풍처럼 접었다 펼칠 수 있는 절첩장 형태로 장황되어 있으므로 인경 시기가 여말선초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 앞뒤의 표지가 완전하고 내용에도 훼손된 부분이 전혀 없어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표지는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황염한 황지로 만들었으며, 표지의 중앙에 먹으로 쌍행의 테두리를 그려 넣고, 그 안에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第十六 慈’ 과 같이 위로부터 개법장진언, 경명, 권수, 천자문 함차의 순서로 표제를 흑묵(黑墨)으로 써넣었다.

권수제는 표제와 동일하며 다음 행에 저자와 역자, 그리고 품명이 정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문의 내용은 모두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장의 크기는 대략 48cm로 4절씩 접은 상태이다. 1절은 6행씩 4절로 접혀 있어 판수제 포함 24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행은 14자씩 배자되어 있다.

권말에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라는 판각 기록으로 보아 이 불경은 고려 1244년에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재조대장경이다. 이때 판각한 경판은 현재 해인사에 보존되어 있는데, 이 권은 각수 ‘天訓, 守山, 洪禮’ 등이 판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장의 끝에는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16 ○張 慈’ 와 같이 축약경명, 권수, 장수 그리고 천자문의 제54번째 함차가 차례로 기입된 판수제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조본의 서지적 특징은 초조본과 식별되는 주요 요소들이다. 조사 대상본은 절첩장 형태로 장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먹색이 선명하고 자획에 완결이 없는 인쇄상태로 보아 판각(1244)된지 얼마 되지 않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와 동일한 재조본이 매우 희귀하여 고려 대장경 연구에 중요한 실물자료로 평가된다.

3. 원형유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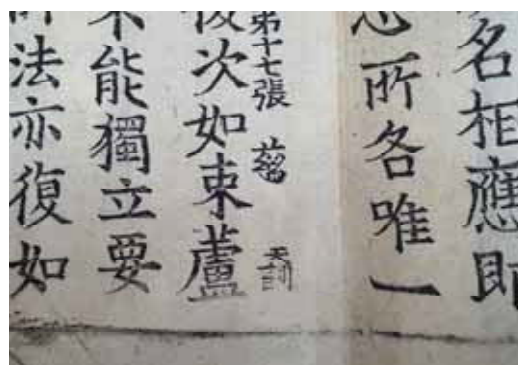
본 조사 대상본은 표지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아 비교적 원형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4. 지정 여부 및 사유 : 可

본 조사 대상본은 1244년에 판각된 경판에서 14세기 무렵에 후쇄한 재조본으로

	절첩장 형태의 목판본 1첩이다. 현재 전래본이 비교적 희귀한 실정이나 동일본이 대부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자료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	---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	---------

	
표지	권수제
	
각수	판각기

【청자 퇴화 능화문 매병(靑磁堆花菱花文梅瓶)】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청자 퇴화 능화문 매병 (靑磁堆花菱花文梅瓶)
수 량	1점	규 격	높이 28.8, 입지름 4.8, 밑지름 10.6cm
재 료	자기(磁器)	소유자	
시 대	고려시대	소재지	

1. 문화재 현황

조사대상 청자는 백토니(白土泥)와 자토니(赭土泥)로 문양을 그려 장식한 매병(梅瓶)이다. 조사대상처럼 짙은 농도의 진흙(백토니, 자토니)을 사용해 장식할 경우 문양이 그릇의 표면보다 도드라지는데, 이런 장식기법을 ‘퇴화(堆花)’라 한다. 주둥이는 사선으로 벌어진 납작하고 작은 원반 모양으로, 어깨와 몸체의 윗부분이 공처럼 둥글고 아래쪽으로 가며 폭이 급격하게 좁아지다 바닥 근처에서 살짝 벌어진 안정감 있는 형태다<도1-1·1-2·1-3>.

조사 내용



<도1-1>
<청자퇴화능화문매병>,
조사대상



<도1-2>
<청자퇴화능화문매병>,
조사대상



<도1-3>
<청자퇴화능화문매병>,
조사대상

짙은 농도의 안료를 사용해 효율적으로 장식하기 위해 단순한 형태의 문양 소재를 비교적 크게 장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몸체 네 면에는 십이곡 능화창 안에 꽃잎 혹은 구름처럼 보이는 문양 하나를 넣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였고, 어깨 부분에는 여의두문 네 개를 돌려 장식하였다<도2>. 백색과 흑색 안료를 함께 사용해 문양이 부각되는 효과가 있고, 몸체 아랫부분에 흑색 띠를 돌려 안정감을 더하였다.

태도는 기포와 모래 알갱이가 약간 섞여 있지만 전반적으로 색이 밝고 품질이 좋은 편이다<도3>. 유색은 전체적으로 밝은 회청색(灰青色)인데, 고려 전성기 비색(翡色) 청자에 비해서는 어둡고 탁한 편이다. 능화문 일부에 흑색 안료

를 그리지 않거나, 안료가 일부 벗겨진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변조상태는 양호하다<도4-1·4-2>. 굽은 안쪽으로 들어 깎은 안굽이고, 굽점지면의 유약을 닦아낸 후 황갈색 내화도빛음을 네 군데 받쳐 구웠다<도5>. 주둥이를 몸체에 붙인 부분과 구연 두 곳에 수리한 흔적이 남아 있지만, 파손되어 유실된 부분 없이 원래의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다<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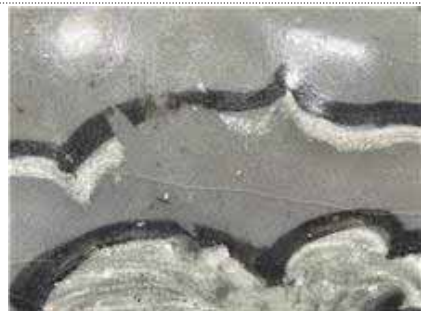
<도2> <청자퇴화능화문매병>, 여의두문



<도3> <청자퇴화능화문매병>, 태도 상태



<도4-1> <청자퇴화능화문매병>, 문양세부



<도4-2> <청자퇴화능화문매병>, 문양세부



〈도5〉 〈청자퇴화능화문매병〉, 굽부분



〈도6〉 〈청자퇴화능화문매병〉, 수리 흔적

2. 내용 및 특징

고려시대에는 발·대접·접시·완·잔 등의 음식기명(飲食器皿)과 호·병·유병·합·주자·매병·장고·화분·기대·배계 등 특수기종(特殊器種)에 퇴화기법으로 장식된 청자를 제작·사용하였다. 그중에서도 퇴화기법으로 장식된 매병은 전하는 수가 적은 편이고, 초화문(草花文)·엽문(葉文)·운학문(雲鶴文)·능화문(菱花文) 등이 문양 소재로 활용되었다. 퇴화기법은 짙은 농도의 진흙(白土泥·赭土泥)으로 문양을 그려 진흙이 그릇 표면에 ‘쌓이(堆)’는 것처럼 도드라지는데, 점이나 선, 바탕, 그리고 그림(문양) 중 하나로 표현된다.

전제품 중 퇴화기법으로 장식한 매병은 보물 제340호 <청자 철채퇴화 삼엽문 매병><도7-1>과 <청자 철채퇴화 운학문 매병><도7-2>처럼 매병 전체에 산화철 안료로 칠한 후 백토니로 문양을 그린 것과 <청자 퇴화 능화문 매병><도8-1>, <청자 퇴화 연학문 매병><도8-2>처럼 청자 위에 진흙(백토니, 자토니)으로 문양을 그린 두 종류가 있다.

조사대상은 청자 위에 퇴화로 장식한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데, 기형과 구연부 형태, 백토니와 자토니를 번갈아 사용한 안료 사용 방식 등도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두 번째 유형 중에서도 태토의 질이 좋고, 유색이 밝고 균일하며, 매병의 형태와 양감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퇴화기법은 음각·양각·상감기법 등에 비해 섬세한 문양 표현이 어려운데, 단순한 문양소재를 선택하고 단위 문양을 크게 장식하는 방법으로 장점을 극대화했다.

몸체에 주둥이가 부착되는 지점과 구연부 일부에 수리된 흔적이 있지만, 제작 당시 형태를 거의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참고할 때, 전라남도 강진 혹은 전라북도 부안의 가마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지정 여부 : 지정 가능



〈도7-1〉 〈청자철채퇴화삼엽문매병〉,
보물
높이27.6, 입지름4.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7-2〉 〈청자철채퇴화운학문매병〉,
높이35.2, 입지름5.8, 밑지름1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4459)



〈도8-1〉 〈청자퇴화능화문매병〉,
높이30.9, 입지름5.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2476)



〈도8-2〉 〈청자퇴화연학문매병〉,
높이30.3, 입지름5.1,
밑지름10.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동원1285)

- 조사대상 <청자 퇴화 능화문 매병>은 매병에 퇴화기법을 사용한 희귀한 사례 중 하나로 백토니(白土泥)와 자토니(赭土泥)를 붙여 활용한 안료의 사용 방식, 문양 소재의 선택과 크기·구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퇴화 청자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에 해당됨
- 조사대상은 매병의 형태와 양감·비례 등이 균형 잡히고 안정감 있으며, 태토와 유색, 번조 상태 등이 양호하고, 파손되어 유실된 부분 없이 비교적 제작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조사대상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청자 표형 주자(靑磁瓢形注子)】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청자 표형 주자(靑磁瓢形注子)
수 량	1점	규 격	높이 28.4, 굽지름 7.6~7.8, 입지름 3.6, 몸체높이 25.5~27.3, 뚜껑 폭 3.6
재 료	자기(磁器)	소유자	
시 대	고려시대	소재지	

1. 문화재 현황

조사대상 청자는 조롱박 모양의 몸체에 주구(注口)와 손잡이를 부착한 주자(注子)다. 몸체는 아랫부분의 양감을 풍부하게 만들어 안정감을 주었고, 윗부분은 작은 계란형으로 전체 형태가 무거워 보이지 않게 균형을 맞춘 모습이다. 주구는 주전자를 적당히 기울여도 내용물을 따르기 쉬운 높이에 부착하였고, 손잡이는 두 줄의 띠를 나란히 붙인 형태로 아랫부분은 능화형(菱花形)으로 장식하였다. 뚜껑의 꼭지와 손잡이 윗부분에 고리가 부착되어 있는데, 뚜껑이 떨어져 깨지지 않도록 끈을 끼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도1-1·1-2·1-3>.

조사 내용



<도1-1> <청자표형주자>, 좌향 조사대상



<도1-2> <청자표형주자>, 측면 조사대상



<도1-3> <청자표형주자>, 우향 조사대상

태토는 기포나 잡물 등이 거의 섞이지 않은 치밀한 청자토를 사용하였고, 시유 상태도 비교적 고른 편이다. 유색은 최고의 고려청자 색인 비색(翡色)으로 밝은 회색 태토가 은은하게 비쳐 보이는 맑은 녹색이다. 유약의 층은 얇은 편이고, 주구와 손잡이가 부착된 부분은 유약이 고여 다른 부분에 비해 조금 짙은 녹색을 띤다.

조사대상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환원번조(還元燻造) 되어 청자의 색이 균일하며, 자화(磁化)되기에 충분한 온도로 번조되었다. 다만 번조 중 주자가 한쪽

으로 약간 기울어져, 바닥면 일부를 갈아내어 높이를 맞춰 주었다. 굽은 따로 깎아 만들지 않고, 바닥 가운데를 밀어 넣어 오목하게 만들었다. 접지면은 유약을 대충 닦아낸 후 백색 내화도빛음을 여덟 군데 받쳐 번조하였다<도2-1·2-2>.

주구의 아랫부분은 깨진 것을 붙여 놓았고<도3-1·3-2>, 내용물이 나오는 출수구 윗부분은 깨진 곳을 보수 없이 그대로 두었다<도3-3>. 손잡이도 일부 갈린 흔적이 있고<도4>, 뚜껑은 다른 재질로 만들어 복원하였다. 조사대상은 일부 파손되거나 보수된 곳이 있지만, 제작된 시기를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도2-1> <청자표형주자>, 조사대상 기울어진 형태



<도2-2> <청자표형주자>, 조사대상 굽모양과 번조받침



<도3-1> <청자표형주자>, 조사대상 주구 파손부위



<도3-2> <청자표형주자>, 주구 파손 부위 세부①



<도3-3> <청자표형주자>, 출수구 파손 부위 세부②



<도4> <청자표형주자>, 손잡이 파손부위 세부

2. 내용 및 특징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전자(注子)가 제작·사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상형(象形), 병형(瓶形), 호형(壺形), 금속기형(金屬器形)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대상과 같은 표형(瓢形) 주자는 상형에 해당 되는데, 과형(瓜形)과

함께 고려시대에 가장 많이 만들어진 상형 주자이다.

고려시대에 청자로 제작된 표형 주자는 몸체의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본 이데미츠미술관(出光美術館) 소장 <청자 양각 연당초문 표형 주자 및 승반(靑磁陽刻蓮唐草文瓢形注子承盤)><도5>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음각 초화문 표형 주자(靑磁陰刻草花文瓢形注子)><도6>, 국보 제116호 <청자 상감 모란문 표형 주자(靑磁象嵌牡丹文瓢形注子)><도7>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일본 이데미츠미술관 소장품과 같은 유형은 몸체 상하부가 공처럼 둥근 형태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과 같은 유형은 몸체 하부에 비해 상부가 매우 작은 형태다. 그리고 국보 제116호와 같은 유형은 몸체 상하부가 모두 물방울 모양으로 다른 두 유형에 비해 가늘고 긴 형태가 특징적이다. 표형 주자는 초기에는 상하부가 둥근 형태로 높이가 낮은 형태가 많이 만들어지다가(<도5>참고), 점차 크기가 커지고 몸체의 무게중심이 하부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도6>참고). 목이 가늘어지고 상하부 몸체가 가늘고 긴 형태는 세 유형 중 가장 늦게 제작되기 시작했지만, 표형 주자의 주류를 형성한 유형이다(<도7>참고).



<도5>
<청자양각연당초문표형주자>, 높이 28.2, 승반 높이 6.2cm, 일본 이데미츠(出光)미술관



<도5>
<청자양각연당초문표형주자>, 높이 28.2, 승반 높이 6.2cm, 일본 이데미츠(出光)미술관



<도7>
<청자상감모란문표형주자>, 높이 34.5, 입지름 2, 밑지름 9.6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 10075)

조사대상은 세 유형 중 하부의 양감이 커지는 두 번째 유형(<도6>참고)과 주자의 형태가 가늘고 길어지는 세 번째 유형(<도7>참고)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형 주자 중 제작된 시기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은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청자 동화연화문 표형 주자(靑磁銅畫蓮花文瓢形注子)><도8>와 태안 마도 1호선 출수 <청자 상감모란연화문 표형 주자(靑磁象嵌牡丹蓮花文瓢形注子)><도9>가 있다.

국보 제133호로 지정된 삼성미술관 소장품은 강화도 최항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고려 고종(재위 1213~1259) 때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항의 몰년인 1257년을 하한으로 볼 수 있다. 태안 마도 1호선은 목간과 죽찰의 내용을 통해 전라도 나주, 해남, 장흥 등지에서 개경으로 곡물과 먹거리를 운송하던 도중

1208년 봄 안흥량에서 난파된 것을 알 수 있어, <청자 상감모란연화문 표형 주자>의 하한은 1208년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과 유사한 작품은 미국 메트로폴리탄뮤지움에 소장된 <청자 양각위로수금문 표형 주자(靑磁陽刻葦蘆水禽文瓢形注)><도10>가 있다. 형태와 크기, 태토와 유색 등이 거의 같으며, 몸체에 양각으로 갈대와 국화 등이 있는 물가에서 노니는 물오리를 장식한 점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메트로폴리탄뮤지움 소장품은 조사대상과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태안 마도 1호선에서 조사된 <청자 상감모란연화문 표형 주자>보다는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8>
<청자동화연화문표형주자>, 높이 33.2, 밑지름 11.4cm, 삼성미술관 Leeum



<도9>
<청자상감모란연화문표형주자>, 높이 25.9, 입지름 2.4, 밑지름 8.9cm, 국립문화재연구원



<도10>
<청자양각위로수금문표형주자>, 높이 26.7, 폭 20.0cm, 미국 메트로폴리탄뮤지움

3. 지정 여부 : 지정 가능

- 조사대상 <청자 표형 주자>는 고려시대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주자 중 품질이 우수하고, 크기와 형태·비례 등이 조화를 이뤄 예술성이 높고, 전해지는 작품의 수도 적어 희소성이 있는 등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다고 생각됨
- 조사대상은 주구와 손잡이 일부가 손상되었고, 뚜껑이 복원된 것이지만, 태토와 유색, 번조 상태 등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하고, 비교적 제작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음
- 전라남도 강진, 전라북도 부안에서 제작된 양질 청자 주자의 사례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음
-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조사대상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백련사 용경삼년명 동종(白蓮寺 隆慶三年銘 銅鍾)】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백련사 용경삼년명 동종 (白蓮寺 隆慶三年銘 銅鍾)
수 량	1점	규 격	전체높이 65cm, 입지름 57.1cm
재 료	청동	소유자	
시 대	조선 1569년 (宣祖 2, 隆慶 3)	소재지	
조사 내용	1. 현상 서울 백련사 약사전에 봉안된 조선시대 동종으로, 크기는 높이 65cm, 입지름 57.1cm에 이른다(도1, 2). 종의 몸체에는 두 종류의 명문이 남아 있다. 먼저 하단에는 “隆慶三年己巳四月日鑄鐘…”으로 시작하는 點刻으로 새긴 명문이 있어, 용경 3년 즉 1569년(宣祖 2)에 조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도3). 그리고 상단의 범자문 아래로 ‘…大鍾二百斤’이 포함된 내용이 짐작되어, 청동 2백근의 재료로 완성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상단의 연곽과 범자문 사이로 기존에 새긴 명문 주변에 후대 추가된 線刻 명문이 있으며(도4), 내용은 ‘高陽郡恩平面白蓮寺 大鍾當寺住持金西翁 主長金翠雲 朝鮮隆熙元年丁未’으로 파악된다. 양쪽의 명문은 글자를 새긴 방식과 서체가 뚜렷하게 다르다. 백련사에서 용경삼년명 동종을 소장하게 된 경위나 내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고 鍾身에 전하는 鑄鐘記에도 사찰 명칭이 언급되지 않아, 원래의 봉안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20세기 초에 추가된 명문을 통해, 隆熙元年인 1907년(高宗 44) 이후에는 백련사에서 소장했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명문에 등장하는 ‘住持金西翁’은 『奉恩本末寺誌』에 당시 백련사 주지로 부임하여 사찰을 중수한 것으로 전하고 있어, 동종과 연관된 유래를 추측할 수 있다. 2. 내용과 특징 동종은 전체적으로 진한 검회색이고 몸체는 완만하게 향아리형 곡선을 이루지만 종구는 살짝 벌어진 듯한 모습이다. 천관은 낮고 편평하며, 중앙에 單龍의 鍾鈕가 있고 한쪽에는 음통이 자리한다(도5). 종뉴는 한 마리의 용으로 구성되었고 몸체를 둥글게 하여 고리를 걸 수 있게 만들었다. 용의 머리 부분에는 구름이 함께 표현되어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이고 꼬리로 음통을 휘감고 있다. 용의 세부 표현이 사실적이고 당당한 인상이다. 음통은 짧고 표면은 선각으로 무늬를 표시하였으며, 내부는 몸체와 통하지 않고 막힌 상태로 만들었다. 천관과 연결되는 부분에는 三山形의 如意頭文으로 구성된 立狀花文帶가 있고 그		

아래는 上帶가 있다(도6). 上帶는 사각형 공간으로 구획한 연판문으로, 각각의 사각형에는 이중의 연판을 만들었다. 내부에는 가는 선의 격자문 위에 4개의 구슬이 연결된 무늬를 놓고 주변에도 구슬 장식을 둘렀다(도7). 다시 그 아래로 연곽 4개가 자리하며, 사이마다 梵字 4개를 번갈아 배치하였다. 연곽은 정사각형으로 테두리는 複葉蓮瓣으로 장식하고 그 안에는 9개의 연꽃송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주목된다(도8). 범자는 원형의 띠를 두른 공간 안에 ‘옴’ 자를 표기한 모습이다(도9). 종신의 중단과 하단 사이에는 횡대를 둘렀는데, 직사각형의 공간으로 구획하고 내부에 활짝 핀 보상화문을 배치하였다(도10).

백련사 동종은 1569년(宣祖 2)인 16세기 후반의 유물로 단룡의 용뉴와 음통, 입상화문대, 상대의 표현, 범자문 등 여러 특징에서 고려 후기의 범종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특징은 고려 1223년(고종10)으로 추정되는 大惠院銘 銅鍾(보물)과 비교할 수 있다(도11). 한편, 단룡의 용뉴와 용의 꼬리로 음통을 휘감은 모습, 여의두문의 입상화문대는 안동 광흥사 동종(보물, 1583년)과 완주 화암사 동종(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6세기 후반 추정) 등과 비교할 수 있어(도 12, 13), 16세기 후반에 유행한 동종 제작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3. 명문

동종은 鑄鍾記를 통해 1569년(宣祖 2) 4월 청동 2백근을 들어 제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명문은 종신 하단과 상단에 點刻으로 새겨 넣었다. 또한 후대에 추가로 선각한 기록도 있어, 1907년(高宗 44) 이후 백련사에서 소장한 동종의 내력을 파악할 수 있다. 명문의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고 다수의 후원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鐘身 하단의 點刻 명문]

隆慶三年己巳四月日鑄鍾」大施主 李叔文」大施主 □□□」施主 金天仁 兩主」施主 崔龜己 兩主」施主 金鈍 兩主」施主 申叔金 兩主」施主 金□□ 兩主」施主 金貢□ 兩主」施主 金□□ 兩主」施主 金良 兩主」施主 韓崇礼 兩主」施主 金叔良 兩主」施主 金□□ 兩主」… □□□ 兩主」金龜□ 兩主」金伊国 兩主」李德□ 兩主」韓士連 兩主」郭化□ 兩主」郭德名 兩主」郭仅先 兩主」郭今先 兩主」金世厚 兩主」李□□ 兩主」李光伊 兩主」金加□之 兩主」李軒山 兩主」李碩 兩主」李□含 兩主」林□金 兩主」宋□□ 兩主」金守伊 兩主」閔周元 兩主」文□連 兩主」閔□□ 兩主」□白□ 兩主」□□文 李□文 兩主」申孝仁 兩主」□ □介伊」比丘 德今」□□ □□□」□□ 丹仅□□」旻□ 欣德」比丘 □□」□□ □□」守衍 守云」太聰 惠仁」印惠 玄俊」敬□ □□」

[鐘身 상단의 點刻 명문]

幹善釋□納子雪□」子大大大化土惠寬」留□大鍾二百斤」无□□□」天□ 信□」

姓□ 碩奎」□□ □□」智□ □相」儀一 儀尙」琿玉 熙祖」□云 □□」行□ □□」定俊 天洽」□□ □□」□□ 衍裕」□熙 正惠」□能 上暹」智□ 上允」仅行仅根」

[鐘身 상단의 線刻 명문]

高陽郡恩平面白蓮寺」大鍾」當寺住持金西翁」主長金翠雲」朝鮮隆熙元年丁未」

4. 지정 여부 및 사유 : 可

백련사 용경삼년명 동종은 명문이 남아 있어, 1569년(宣祖 2) 4월 청동 2백근을 들어 제작한 사실과 다수의 후원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후대에 추가된 기록으로, 백련사 주지로 부임한 金西翁의 이름과 1907년(高宗 44) 이후의 소장 내력을 파악할 수 있다.

동종은 우수한 기술로 주조되었고 전체적인 외형과 세부 특징을 대체로 잘 유지하고 있다. 동종의 양식은 고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조선 16세기에 유행한 제작 유형을 따르고 있다. 현재 16세기에 제작된 동종은 8점이 알려져 있고 그 가운데 2점은 도난되거나 소실된 상황이므로, 백련사 소장품은 조선 전기 범종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백련사 동종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제작연대를 포함한 명문이 남아 있으며, 조선 전기 범종의 공예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의 명칭은 현재의 소장처, 명문에 언급된 제작연대, 기존 문화재 지정의 전례를 참고하여, ‘백련사 용경삼년명 동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응천, 『한국의 범종, 천년을 이어온 깨우침의 소리』, 미진사, 2022.

직지성보박물관, 『하늘꽃으로 내리는 깨달음의 소리: 한국의 범종 탁본전』, 2003.

國立文化財研究所, 『韓國의 梵鍾』, 1996, pp. 376-377.

廉永夏, 『韓國의 鍾』, 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pp. 409-410.

李浩官, 「寶巖寺 乙丑銘銅鐘과 白蓮寺 隆慶三年銘銅鐘」, 『考古美術』 123·124, 한국미술사학회, 1974.12, pp. 35-40.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도1. 백련사 용경삼년명 동종



도2. 백련사 용경삼년명 동종



도3. 종신 하단, 點刻 명문



도4. 종신 상단, 點刻과 線刻 명문



도5. 종뉴와 음통



도6. 입상화문대와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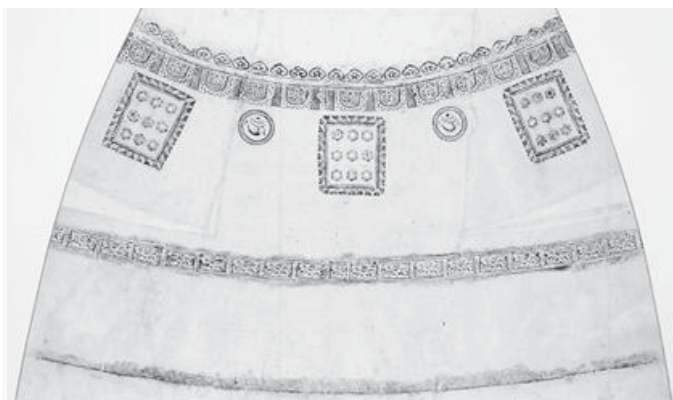
도7. 상대의 세부



도8. 연곽 부분



도9. 범자 부분



도10. 백련사 동종 종신 탁본 (직지성보박물관, 『하늘꽃으로 내리는
깨달음의 소리: 한국의 범종 탁본전』, 2003, p. 119.



도11. 大惠院銘 銅鍾, 고려 1223년 추정, 보물,
우학문화재단



도12. 안동 광흥사 동종, 조선 1583년,
보물, 불교중앙박물관



도13. 완주 화암사 동종
조선 16세기 후반 추정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송광사

【임인진연도 병풍(壬寅進宴圖 屏風)】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임인진연도병 壬寅進宴圖屏
수 량	1점	규 격	162.3×55.5cm (그림 각폭) 199×620cm (전체)
재 료	비단에 채색	소유자	
시 대	1902년	소재지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 현황 - 이 작품은 10첩 병풍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각 폭 화면의 상단과 하단에는 분홍색 꽃무늬 비단을 붙이고 테두리는 황색 비단을 둘렀다. 병풍 전체의 바깥쪽 네 면에는 나무쪽을 붙여 마감했으며, 제1폭과 제10폭에는 위아래에 금속 장식을 붙이고, 뒷면은 검은 천으로 배접했다. 제2폭부터 제9폭까지는 뒷면을 육각형 꽃무늬가 있는 종이로 배접했다. - 화면은 노화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오염, 균열, 박락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태는 안정적이고 양호하다. - 소장처에는 거의 동일한 유물이 2점 있으며 각각 소장번호 유물-000192-00000 및 유물-000193-00000으로 구분된다. 이 보고서는 유물-000192에 대한 것이다. 두 유물의 구분은 맨 우측 제1폭 중간에 둥근 모양의 흰 얼룩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유물-000192, 맨 우측 제1폭 중간에 수평 방향의 흰 얼룩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유물-000193이다.
	■ 특징 및 평가 - 이 작품은 1902년(광무 6년, 임인년) 고종 황제가 51세로 망록(望六)이 되자, 숙종과 영조의 뒤를 이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게 되었고, 황태자(순종)의 간청에 의해 진연(進宴)이 거행된 것을 기념하여 제작한 것이다. 처음 다섯 폭은 기로소와 관련된 것이고 다음 네 폭은 경운궁(현 덕수궁) 함녕전(咸寧殿)에서 열린 진연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다. 3월 27일과 28일에 행한 기로소 입소를 제1폭에서 제5폭까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행한 진연례를 제6폭에서 제9폭까지 묘사했다. 마지막 폭은 좌목(座目)으로 구성되었다. 각 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폭 어첩봉안: 3월 27일 기로소 영수각(靈壽閣)에 황제가 친히 쓴 어첩을 봉안하는 장면.

제2쪽 진계장: 기로소에서 황제가 계장(机杖)을 받는 장면

제3쪽 기사석연: 3월 28일 경운궁 덕경당(德慶堂)에서 황제가 기로소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장면

제4쪽 중화전 진하: 경운궁 중화전(中和殿)에서 신하들이 황제의 기로소 입소를 축하하는 장면

제5쪽 함녕전 친림석연: 함녕전에서 황제가 친히 연회를 베푸는 장면

제6쪽 함녕전 외진연: 4월 23일 황제를 위해서 대전에서 벌이는 잔치 장면

제7쪽 함녕전 내진연: 다음날 대비와 왕비를 위해 벌이는 잔치 장면

제8쪽 함녕전 야진연: 내외명부 여인들이 참석해 밤에 벌이는 잔치 장면

제9쪽 함녕전 익일회작: 그 다음날 황태자를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

제10쪽 좌목: 이 행사를 진행한 관리 11명의 관직과 이름을 기록. 여기에는 진연청 당상(進宴廳堂上)이었던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 찬정(贊政) 윤정구(尹定求),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학수(金學洙) 등이 등장한다.

- 이전의 진찬진연도 병풍은 행사 장면을 연폭으로 구성하거나, 두 폭에 표현했으나 이 작품은 한 폭에 한 장면씩 그렸다.
- 궁중 연회에 등장하는 각종 음악 연주와 무용 장면이 다양하고 상세하게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향령무, 수연장, 연백복지무, 제수창, 사선무, 쌍고무, 춘앵전, 선유락, 가인전목단 등의 공연이 묘사되었다.
- 이때의 진연을 상세히 기록한 『(고종임인)진연의궤』(규14487)이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화면에 등장하는 각종 악기와 무용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당시 진연도 병풍은 화원 박용훈(朴鏞薰) 등 7인이 제작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 섬세한 필치로 인물과 기물을 정교하게 묘사했으며, 선명한 채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부분적으로 금박을 이용하여 화려함을 더해 준다.
- 서양식 군복을 착용하고 총검을 지닌 신식군인이 등장하고, 대한제국 시기에 걸맞게 각종 의장물이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이며, 왕의 위엄을 나타내던 황룡기 대신에 태극기가 등장한다.
- 국립국악원에는 동일한 병풍이 소장번호 유물-000193으로 함께 소장되어 있다.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에도 동일한 병풍이 유물번호 운1471로 소장되어 있는데, 2017년 김채영이 기증한 것이다. 김채영은 고종의 증손자 이철의 배우자로 이 유물은 운현궁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전통을 따라 1902년에 동일한 병풍 여러 점을 함께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이 작품의 유래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진 바가 없다. 1932년에 설립되어 1945년까지 활동한 이습회의 처용무 공연 사진의 배경에 같은 병풍이 등장한다.

2. 원형유지정도

- 이습회 사진 자료에 나타나는 병풍은 조선시대의 형식과는 차이가 나며, 병풍 발이 붙어 있어 현재의 것과는 다르다. 즉 해방 이후 다시 현재의 모습으로 개장되었을 것이다.

3. 지정 여부 : 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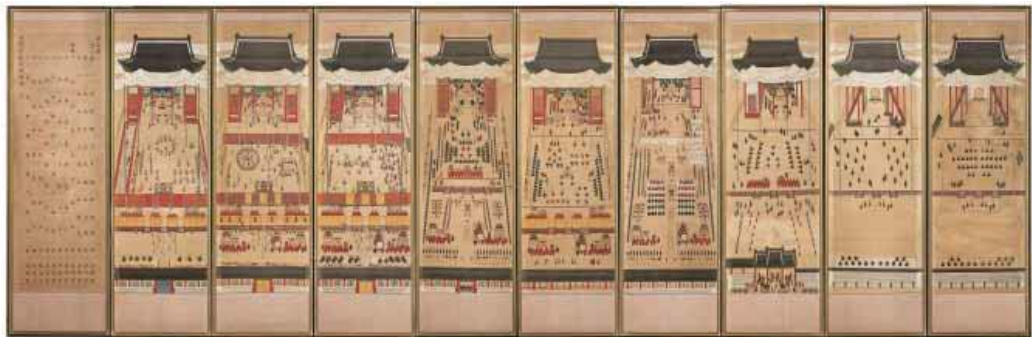
- 이 작품은 대한제국 시기 중요한 궁중행사를 상세하게 기록한 대형 병풍으로 역사적, 미술사적, 음악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 특히 회화적 완성도가 뛰어나서 대한제국 황실의 높은 회화적 역량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 시지정문화재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명칭은 “임인진연도 병풍(壬寅進宴圖 屏風)”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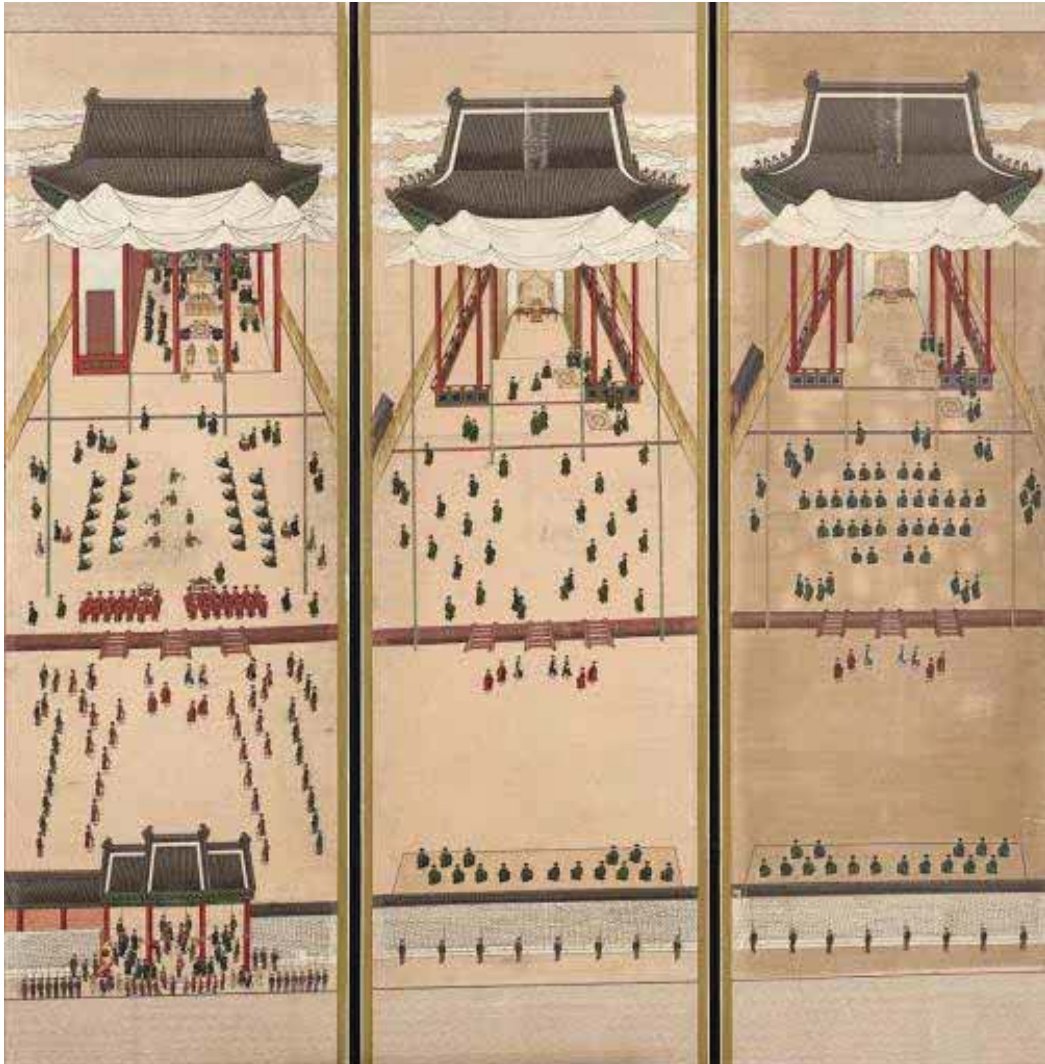
〈임진연도 병풍〉 국립국악원 000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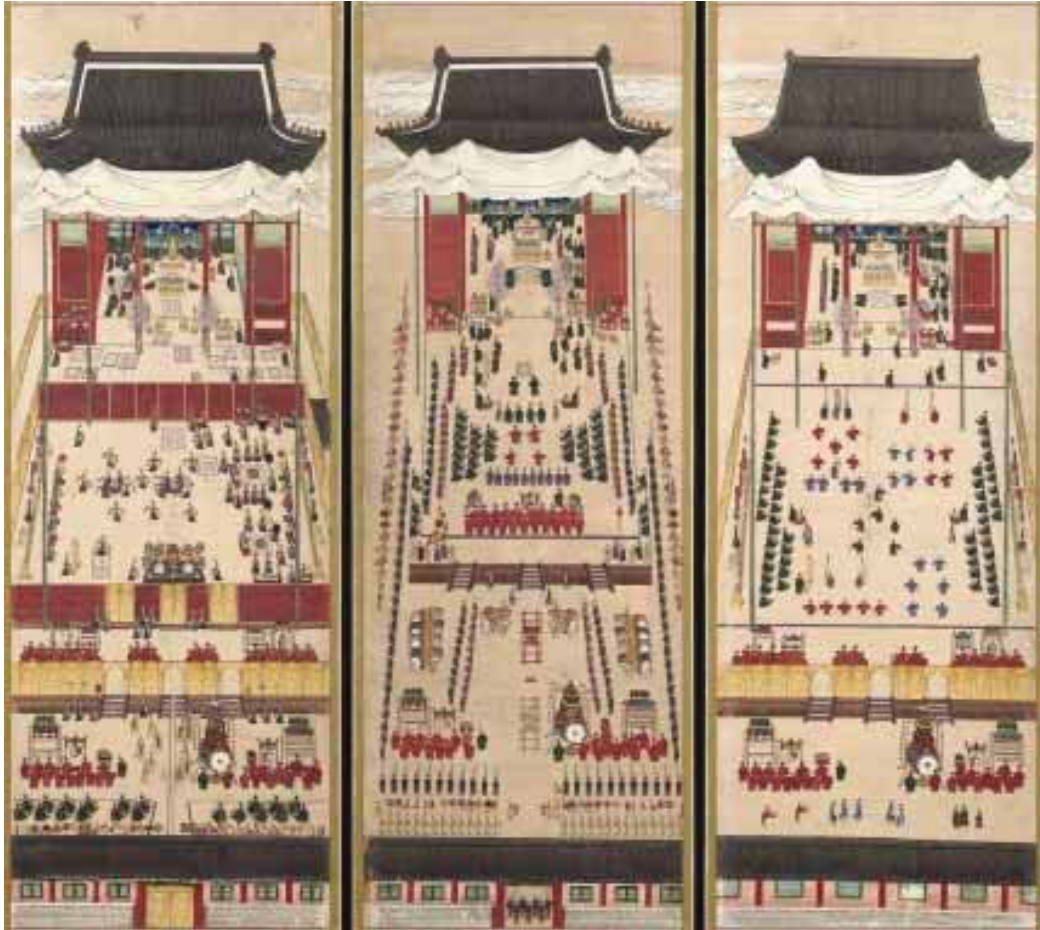
〈임진연도 병풍〉 국립국악원 000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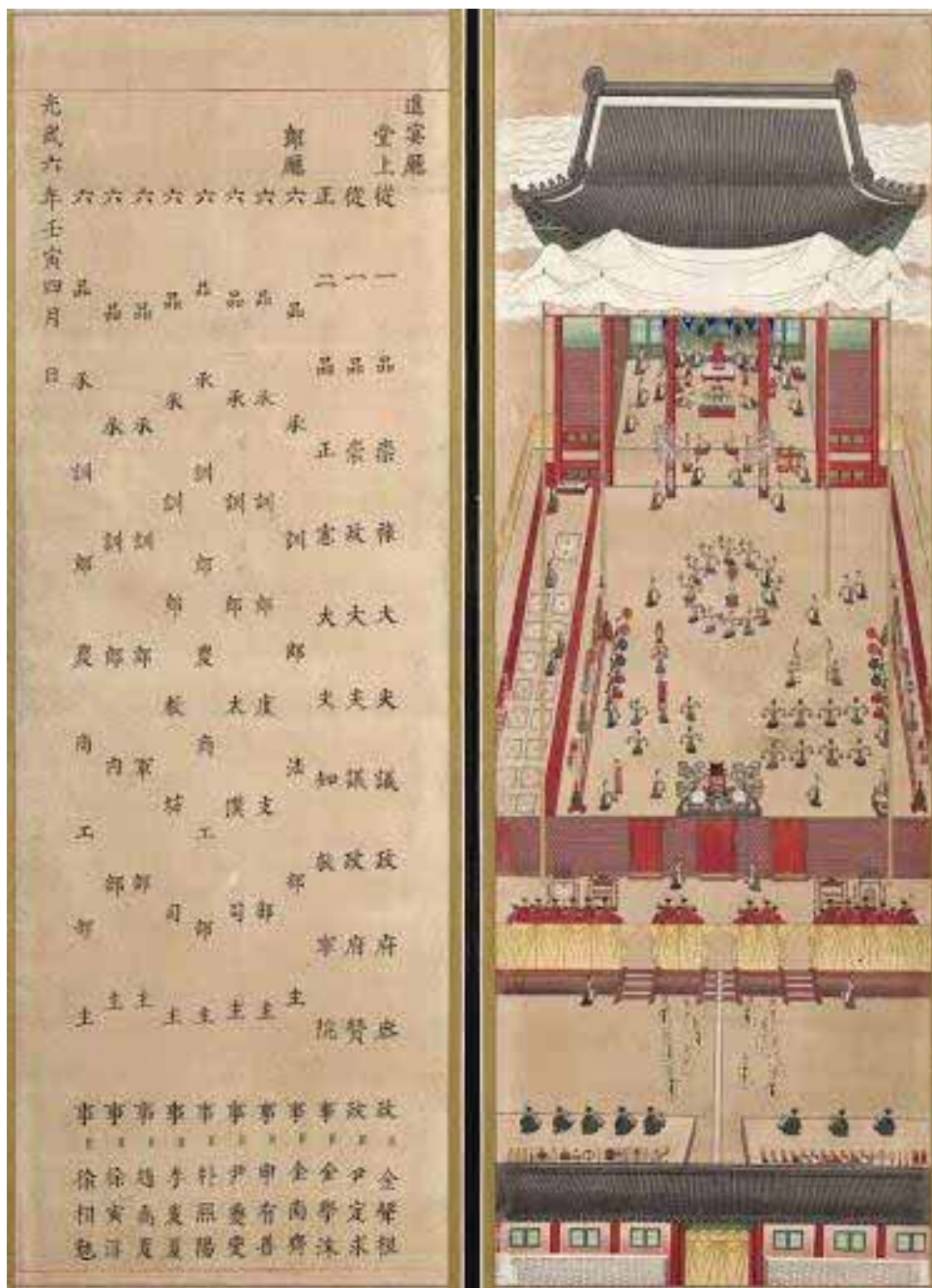
〈임진연도 병풍〉 서울역사박물관



〈임인진연도 병풍〉192
제1폭: 기로소 어첨봉안
제2폭: 기로소 진궐장
제3폭: 덕경당 기사석연



<임인진연도 병풍>192
 제5폭: 함녕전 친림사연
 제6폭: 함녕전 외진연
 제7폭: 함녕전 내진연



제9쪽: 함녕전 익일회작
제10쪽: 좌목





〈이습희 처용무 공연 1930-40년대〉

【임인진연도 병풍(壬寅進宴圖 屏風)】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임인진연도병 壬寅進宴圖屏
수 량	1점	규 격	162.3×55.5cm (그림 각폭) 199×620cm (전체)
재 료	비단에 채색	소유자	
시 대	1902년	소재지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 현황

- 이 작품은 10첩 병풍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각 폭 화면의 상단과 하단에는 분홍색 꽃무늬 비단을 붙이고 테두리는 황색 비단을 둘러쌌다. 병풍 전체의 바깥쪽 네 면에는 나무쪽을 붙여 마감했으며, 제1폭과 제10폭에는 위아래에 금속 장식을 붙이고, 뒷면은 검은 천으로 배접했다. 제2폭부터 제9폭까지는 뒷면을 육각형 꽃무늬가 있는 종지로 배접했다.
- 화면은 노화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오염, 균열, 박락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태는 안정적이고 양호하다.
- 소장처에는 거의 동일한 유물이 2점 있으며 각각 소장번호 유물-000192-00000 및 유물-000193-00000으로 구분된다. 이 보고서는 유물-000193에 대한 것이다. 두 유물의 구분은 맨 우측 제1폭 중간에 둥근 모양의 흰 얼룩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유물-000192, 맨 우측 제1폭 중간에 수평 방향의 흰 얼룩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유물-000193이다.

■ 특징 및 평가

- 이 작품은 1902년(광무 6년, 임인년) 고종 황제가 51세로 망륙(望六)이 되자, 숙종과 영조의 뒤를 이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게 되었고, 황태자(순종)의 간청에 의해 진연(進宴)이 거행된 것을 기념하여 제작한 것이다. 처음 다섯 폭은 기로소와 관련된 것이고 다음 네 폭은 경운궁(현 덕수궁) 함녕전(咸寧殿)에서 열린 진연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다. 3월 27일과 28일에 행한 기로소 입소를 제1폭에서 제5폭까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행한 진연례를 제6폭에서 제9폭까지 묘사했다. 마지막 폭은 좌목(座目)으로 구성되었다. 각 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폭 어침봉안: 3월 27일 기로소 영수각(靈壽閣)에 황제가 친히 쓴 어침을 봉

안하는 장면

제2폭 진계장: 기로소에서 황제가 계장(机杖)을 받는 장면

제3폭 기사석연: 3월 28일 경운궁 덕경당(德慶堂)에서 황제가 기로소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장면

제4폭 중화전 진하: 경운궁 중화전(中和殿)에서 신하들이 황제의 기로소 입소를 축하하는 장면

제5폭 함녕전 친림석연: 함녕전에서 황제가 친히 연회를 베푸는 장면

제6폭 함녕전 외진연: 4월 23일 황제를 위해서 대전에서 벌이는 잔치 장면

제7폭 함녕전 내진연: 다음날 대비와 왕비를 위해 벌이는 잔치 장면

제8폭 함녕전 야진연: 내외명부 여인들이 참석해 밤에 벌이는 잔치 장면

제9폭 함녕전 익일회작: 그 다음날 황태자를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

제10폭 좌목: 이 행사를 진행한 관리 11명의 관직과 이름을 기록. 여기에는 진연청 당상(進宴廳堂上)이었던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 찬정(贊政) 윤정구(尹定求),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학수(金學洙) 등이 등장한다.

- 이전의 진찬진연도 병풍은 행사 장면을 연폭으로 구성하거나, 두 폭에 표현했으나 이 작품은 한 폭에 한 장면씩 그렸다.

- 궁중 연회에 등장하는 각종 음악 연주와 무용 장면이 다양하고 상세하게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향령무, 수연장, 연백복지무, 제수창, 사선무, 쌍고무, 춘앵전, 선유락, 가인전목단 등의 공연이 묘사되었다.

- 이때의 진연을 상세히 기록한 『(고종임인)진연의궤』(규14487)이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화면에 등장하는 각종 악기와 무용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당시 진연도 병풍은 화원 박용훈(朴鏞薰) 등 7인이 제작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 섬세한 필치로 인물과 기물을 정교하게 묘사했으며, 선명한 채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부분적으로 금박을 이용하여 화려함을 더해 준다.

- 서양식 군복을 착용하고 총검을 지닌 신식군인이 등장하고, 대한제국 시기에 걸맞게 각종 의장물이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이며, 왕의 위엄을 나타내던 황룡기 대신에 태극기가 등장한다.

- 국립국악원에는 동일한 병풍이 소장번호 유물-000192로 함께 소장되어 있다.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에도 동일한 병풍이 유물번호 운1471로 소장되어 있는데, 2017년 김채영이 기증한 것이다. 김채영은 고종의 증손자 이철의 배우자로 이 유물은 운현궁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전통을 따라 1902년에 동일한 병풍 여러 점을 함께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이 작품의 유래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진 바가 없다. 1932년에 설립되어 1945년까지 활동한 이습회의 처용무 공연 사진의 배경에 같은 병풍이 등장한다.

2. 원형유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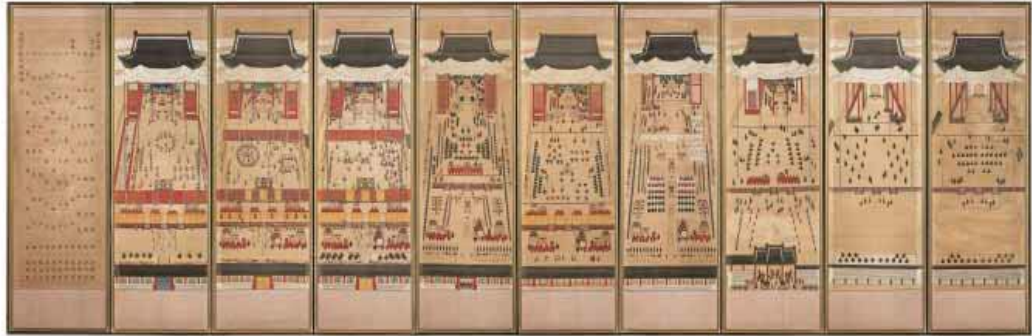
- 이습회 사진 자료에 나타나는 병풍은 조선시대의 형식과는 차이가 나며, 병풍 받이 붙어 있어 현재의 것과는 다르다. 즉 해방 이후 다시 현재의 모습으로 개장되었을 것이다.

3. 지정 여부 : 可

- 이 작품은 대한제국 시기 중요한 궁중행사를 상세하게 기록한 대형 병풍으로 역사적, 미술사적, 음악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 특히 회화적 완성도가 뛰어나서 대한제국 황실의 높은 회화적 역량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 시지정문화재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명칭은 “임인진연도 병풍(壬寅進宴圖 屏風)”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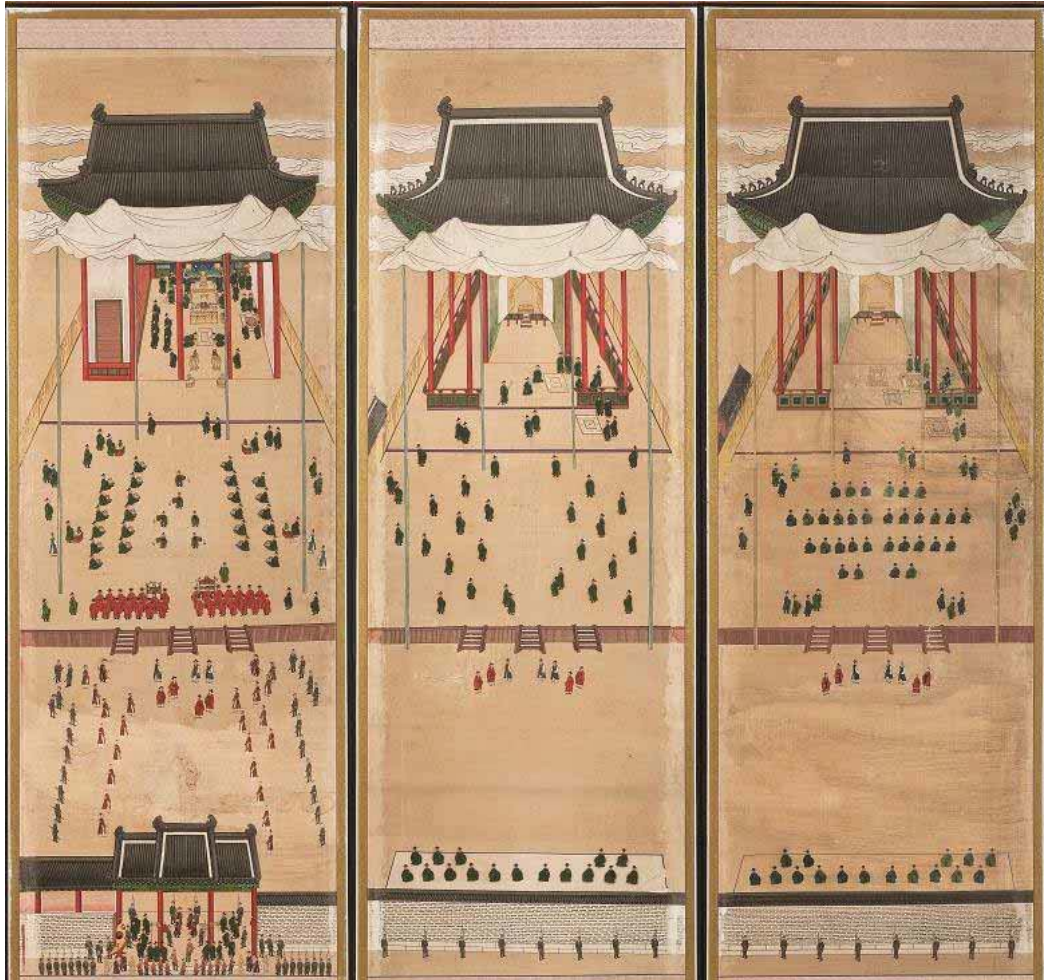
〈임진진연도 병풍〉 국립국악원 000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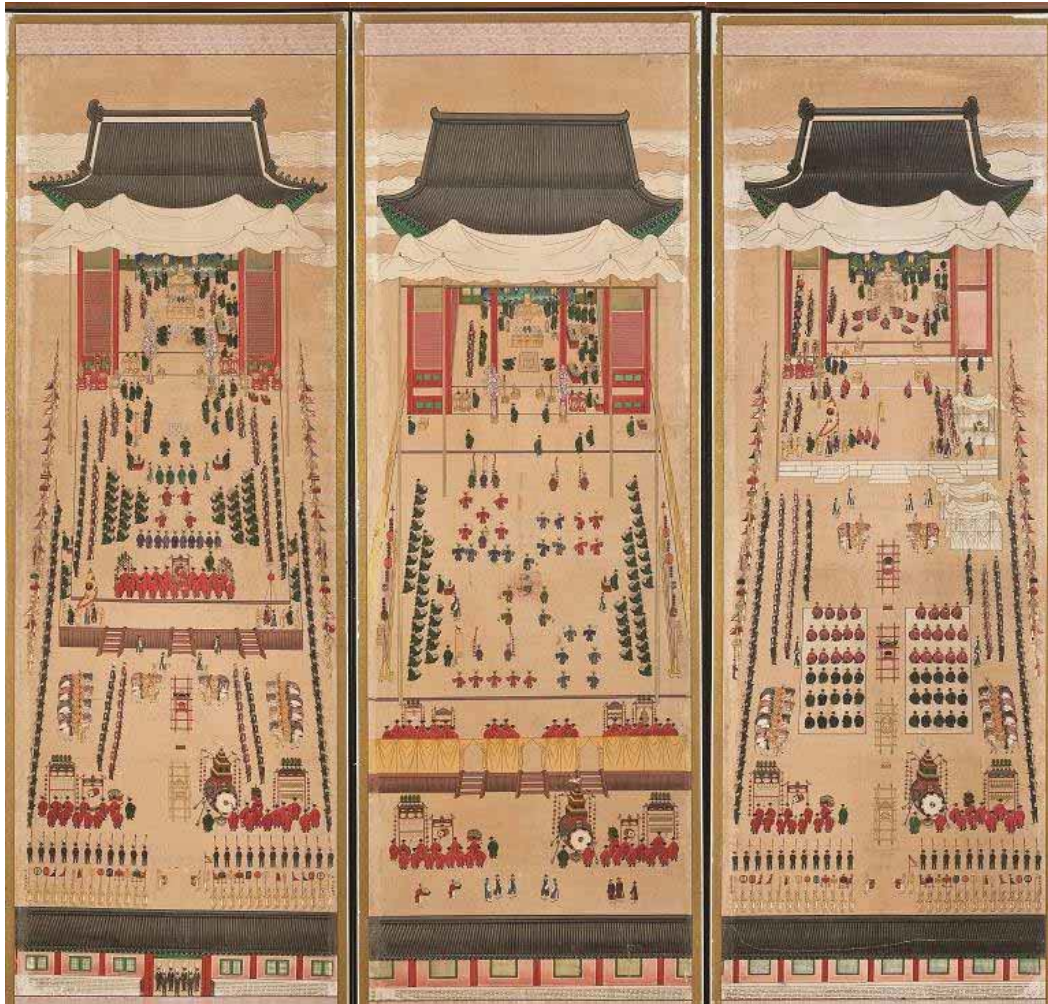
〈임진진연도 병풍〉 국립국악원 000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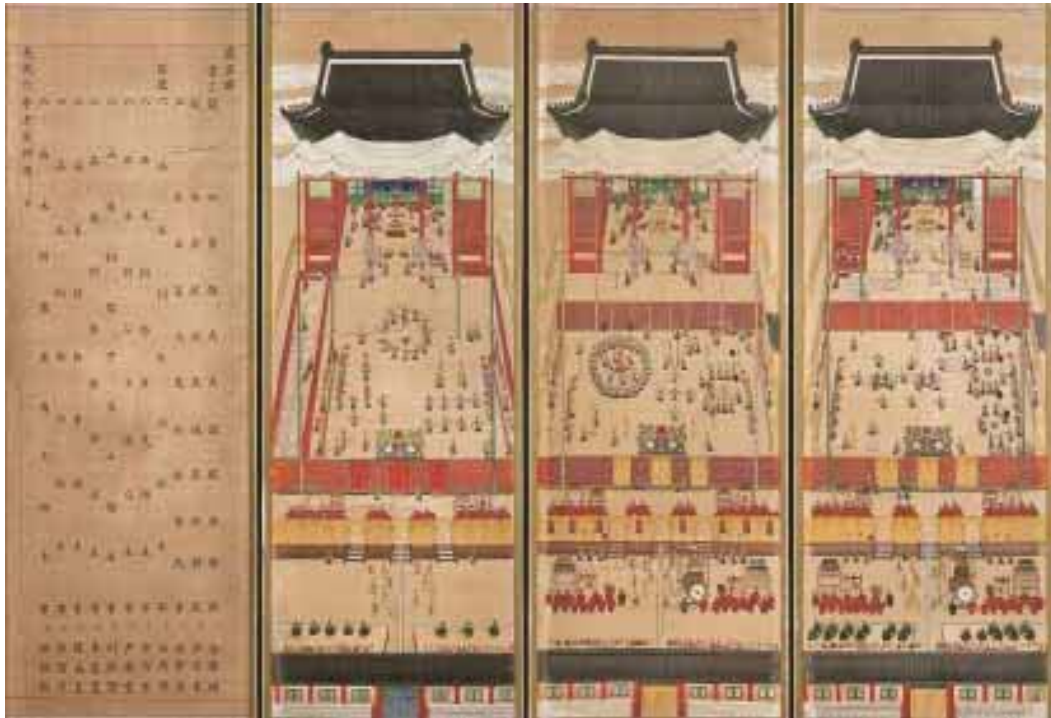
〈임진진연도 병풍〉 서울역사박물관



〈임인진연도 병풍〉193
제1폭: 기로소 여첩봉안
제2폭: 기로소 진궐장
제3폭: 덕경당 기사석연



〈임인진연도 병풍〉193
제4폭: 중화전 진하
제5폭: 함녕전 친림사연
제6폭: 함녕전 외진연



<임인진연도 병풍>193
 제7폭: 함녕전 내진연
 제8폭: 함녕전 야진연
 제9폭: 함녕전 익일회작
 제10폭: 좌목



〈이습희 처용무 공연 1930-40년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769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조합현황			취소사유	취소근거	취소일
인가번호	조합명(이사장)	정관상 소재지			
2011-7호	한국복지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박종욱)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1, 3층 (종로4가, 대연빌딩)	설립인가기준 미달 및 시정명령사항 미이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2022.9.26.

문의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5층, 전화 02-2133-536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771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706	22.10.05.	아브라텍 주식회사 (arvratech Co., Ltd.) 이민영, 최수현 110111-6413895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안로 1142, 하우스디더스카이벨리가산2차 804~808호(가산동)
2	203707	22.10.05.	주식회사 시그넵소프트 박영재 110111-7322699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FORHU 316호(성수동1가)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77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및 본점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2. 10. 13. ~ 2022. 10. 27.(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체납내역 및 압류에 관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고
		과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07199967	성북구 고려대로1길 89-1(삼선동5가)	수도요금	2020. 8. 31. 외 11 납기	12회	2,503,740원	2022. 9. 22. ~ 2022. 10. 14. 2022. 10. 17.~ (당초 압류예정일)	• 등기번호 : 1152101192695 • 반송사유 : 이사불명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소재지				
부동산 (건물)	성북구 고려대로1길 89-1(삼선동5가)	원*철강 주식회사	110111-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791(명일동)			2,503,740원	2022. 10. 31. ~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 고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07200002	성북구 보문로32길 6(삼선동5가)	수도요금	2021. 8. 31. 외 6 납기	7회	1,073,650원	2022. 9. 22. ~ 2022. 10. 14. 2022. 10. 17.~ (당초 압류예정일)	• 등기번호 : 1152101192696 • 반송사유 : 이사불명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성북구 보문로32길 6(삼선동5가)	박*화	50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6길 17(평창동)			1,073,650원	2022. 10. 31. ~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 고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01512633	성북구 보문로29길 48-10, 3층 301호 (삼선동5가, 베엘하이츠2차)	수도요금	2021. 2. 28. 외 9 납기	10회	681,580원	2022. 9. 22. ~ 2022. 10. 14. 2022. 10. 17.~ (당초 압류예정일)	• 등기번호 : 1152101192678 •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성북구 보문로29길 48-10, 3층 301호 (삼선동5가, 베엘하이츠2차)	김*자	440803-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9길 48-10, 101호(삼선동5가, 지하층)		681,580원	2022. 10. 31. ~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 고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33624563	성북구 보문로29길 88, 5층 501호 (삼선동3가)	수도요금	2021. 6. 30. 외 7 납기	8회	551,960원	2022. 9. 22. ~ 2022. 10. 14. 2022. 10. 17.~ (당초 압류예정일)	• 등기번호 : 1152101192685 •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성북구 보문로29길 88, 5층 501호 (삼선동3가)	박*남	720815-1*****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187번길 28-4, 401호(호정사인빌)			551,960원	2022. 10. 31. ~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 고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07433441	성북구 동소문로2길 91(동소문동3가)	수도요금	2021. 6. 30. 외 6 납기	7회	730,110원	2022. 9. 22. ~ 2022. 10. 14. 2022. 10. 17.~ (당초 압류예정일)	• 등기번호 : 1152101192680 •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성북구 동소문로2길 91(동소문동3가)	이*영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길 91(동소문동3가)			730,110원	2022. 10. 31. ~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 고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06108332	종로구 사직로8길 5-7(필운동)	수도요금	2020. 1. 31. 외 14 납기	15회	479,920원	2022. 9. 27. ~ 2022. 10. 21. 2022. 10. 24.~ (당초 압류예정일)	1152101192992 • 등기번호 : •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종로구 사직로8길 5-7(필운동)	박*진	61012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173번길 13, 101동 1402호(대림동, 신대림자이)		479,920원	2022. 10. 31. ~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 고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00156676	종로구 지봉로12길 44-2(송인동)	수도요금	2021. 7. 31. 외 6 납기	7회	742,450원	2022. 9. 27. ~ 2022. 10. 21. 2022. 10. 24.~ (당초 압류예정일)	1152101192995 • 등기번호 : •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소재지				
부동산 (토지)	종로구 지봉로12길 44-2(송인동)	수*건설 주식회사	284111-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37번길 47,0504-2호(별나라타워)			742,450원	2022. 10. 31. ~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채 납 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 고
		과 목	채납납기	채납횟수	채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01859448	성북구 정릉로10라길 5, (지하)2동 B02호 (정릉동, 보광)	수도요금	2020. 3. 31. 외 12 납기	13회	406,090원	2022. 9. 27. ~ 2022. 10. 21. 2022. 10. 24.~ (당초 압류예정일)	• 등기번호 : 1152101192999 •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성북구 정릉로10라길 5, (지하)2동 B02호 (정릉동, 보광)	박*형	88102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10라길 5, B01호(정릉동, 보광빌라)			406,090원	2022. 10. 31. ~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채 납 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 고
		과 목	채납납기	채납횟수	채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35344465	성북구 정릉로10길 110(정릉동)	수도요금	2021. 3. 31. 외 7 납기	8회	656,430원	2022. 9. 27. ~ 2022. 10. 21. 2022. 10. 24.~ (당초 압류예정일)	• 등기번호 : 1152101193001 • 반송사유 : 폐문부재	• 등기번호 : 1152101193001 (최*민) 1152101192996 (김*실)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성북구 정릉로10길 110(정릉동)	최*민	83080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10길 110(정릉동)		656,430원	2022. 10. 31. ~	
		김*실	80061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10길 110, 3층(정릉동)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재산압류예고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 발생일(2022. 10. 28.)이 납부기한임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예정일 전 채납액을 납부하실 의사가 있으신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윤석진 주무관 (☎ 02-3146-210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77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708	22.10.06.	지멘스로지스틱스지엠비에이치 (Siemens Logistics Gmbh)(영업소) 아로스와프미할얀코프스키 110184-001276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D타워 9층(청진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777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2. 10. 13.~2022. 10. 27.(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위 공고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가. 의견제출기간: 2022. 10. 13.~2022. 11. 11.
 -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의견제출처 및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처): 주 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교통지도과(서소문청사1동 2층 과태료과징팀)
전화번호: 02-2133-4570~4572
(의견제출 방법): 팩스 제출: 02-2133-1446, 이메일 제출: green5@seoul.go.kr
인터넷 제출: <https://oksign.seoul.go.kr>
6. 유의사항
 - 가. 사전의견제출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 과태료과징팀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에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과태료 자진 납부
 - 납부기한: 2022. 11. 11.

- 납부방법: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8. 문 의 : 의견제출,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 과태료과장팀 (☎ 02-2133-4570~4572)

-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1부.

연번	과태료	차량번호	납세자명	주민번호	주소	단속일자	본세금액	단속장소
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4우682*	김**	671010-1*****	서울특별시	2022-08-02 18:32	160000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7소385*	주식회사 금아테크	110111-7*****	서울특별시	2022-08-02 13:30	160000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4라698*	(주)원스탑투어	110111-6*****	서울특별시	2022-08-02 14:02	160000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회계로, 진입)
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9아785*	박**	70022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2-08-02 15:03	16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7소568*	이**	731128-1*****	전라남도 영암군	2022-08-02 20:28	8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7소385*	주식회사 금아테크	110111-7*****	서울특별시	2022-08-03 09:31	160000	해화문(청경로, 진입)
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4다557*	에이스지엠(주)	110111-6*****	서울특별시	2022-08-03 17:25	160000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1나444*	함**	680610-2*****	서울특별시	2022-08-03 11:41	160000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7소568*	이**	731128-1*****	전라남도 영암군	2022-08-03 09:16	80000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7버558*	사**	650220-2*****	서울특별시	2022-08-03 12:29	8000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1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5구115*	TUGUMISIRIZE *****	930101-5*****	경기도 안산시	2022-08-03 14:32	16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7도213*	김**	740529-1*****	경기도 안산시	2022-08-04 19:35	16000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1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4나508*	CHOEMUE ****	920101-5*****	경기도 화성시	2022-08-04 10:27	80000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1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5오370*	이**	470714-1*****	경상남도 양산시	2022-08-04 17:17	8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23라407*	주식회사 인아트웍	285011-0*****	경기도 고양시	2022-08-06 13:34	160000	남산3호터널(삼일대로)
1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59나539*	정**	730822-1*****	전라남도 순천시	2022-08-06 09:49	80000	남산3호터널(삼일대로)
1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7소568*	이**	731128-1*****	전라남도 영암군	2022-08-06 20:30	160000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1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7오231*	김**	670215-1*****	인천광역시	2022-08-07 14:15	80000	백범광장(소월로3길)
1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8버690*	남**	750408-2*****	인천광역시	2022-08-05 13:03	8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7주429*	윤**	611004-2*****	인천광역시	2022-08-07 15:36	80000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6가918*	(주)신원피애펜프	110111-2*****	서울특별시	2022-08-06 08:57	160000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0가928*	락키 유희회사	210114-0*****	전라북도 전주시	2022-08-06 08:51	8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서울33머410*	전***1(****)	680214-1*****	서울특별시	2022-08-06 08:40	8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연번	과태료	차량번호	납세자명	주민번호	주소	단속일자	본세금액	단속장소
2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8로338*	윤**	690824-1*****	경상남도 김해시	2022-08-05 17:13	8000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7소568*	이**	731128-1*****	전라남도 영암군	2022-08-05 13:38	160000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9다319*	MOON *****	820713-5*****	서울특별시	2022-08-07 18:20	80000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9조551*	박**	681008-1*****	서울특별시	2022-08-08 16:55	160000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9다705*	(주)하니스	110111-5*****	경기도 용인시	2022-08-08 13:22	16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기80거158*	(주)하나다엔엘	110111-1*****	경기도 수원시	2022-08-10 12:04	160000	반안트리(정충단로, 진입)
3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7조201*	윤**	930501-1*****	충청남도 서산시	2022-08-09 15:54	160000	반안트리(정충단로, 진입)
3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0다525*	최**	691207-1*****	인천광역시	2022-08-09 15:25	16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3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전북86사152*	박**	510715-1*****	전라북도 완주군	2022-08-09 07:12	80000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3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2가614*	김**	630622-1*****	전라북도 군산시	2022-08-09 10:04	8000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3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서울86자489*	임**	640105-1*****	서울특별시	2022-08-09 14:59	16000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3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9다705*	(주)하니스	110111-5*****	경기도 용인시	2022-08-10 14:36	160000	삼정공원(삼정로)
3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90수111*	주식회사 제이엔더블유	110111-6*****	서울특별시	2022-08-10 14:50	160000	홍인지문(청계천로, 진입)
3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0다525*	최**	691207-1*****	인천광역시	2022-08-10 16:24	16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3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4우682*	김**	671010-1*****	서울특별시	2022-08-10 18:48	160000	홍인지문(청계천로, 진입)
3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21가369*	오**	790815-1*****	경상북도 구미시	2022-08-10 19:08	80000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4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8조410*	김**	760130-1*****	경기도 오산시	2022-08-11 08:23	80000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4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5주296*	오**	441230-1*****	전라북도 전주시	2022-08-11 09:39	80000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4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4라698*	(주)원스탑투어	110111-6*****	서울특별시	2022-08-11 11:32	160000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4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47주315*	최**	630826-1*****	서울특별시	2022-08-12 11:44	160000	해화문(경경로, 진입)
4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9다705*	(주)하니스	110111-5*****	경기도 용인시	2022-08-11 13:22	16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4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5버321*	홍**	710415-1*****	경기도 파주시	2022-08-14 16:19	80000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4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9사246*	박**	790727-1*****	울산광역시	2022-08-13 08:32	8000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연번	과태료	차량번호	납세자명	주민번호	주소	단속일자	본세금액	단속장소
4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6도239*	주식회사 코너하우징	134811-0*****	서울특별시	2022-08-14 16:11	8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4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7루817*	김**	740521-1*****	충청남도 서산시	2022-08-12 20:49	80000	반안트리(정충단로, 진입)
4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6구586*	주식회사 이엠산업개발	285011-0*****	경기도 고양시	2022-08-12 17:49	160000	백범광장(소월로3길)
5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91버240*	주식회사 오엠시스템	124411-0*****	경기도 김포시	2022-08-12 09:34	160000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5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0가573*	주식회사선우이엔지	131111-0*****	서울특별시	2022-08-12 07:07	160000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5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9다319*	MOON *****	820713-5*****	서울특별시	2022-08-14 16:50	80000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5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9다705*	(주)하니스	110111-5*****	경기도 용인시	2022-08-15 12:04	16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5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4다857*	에이스지엠(주)	110111-6*****	서울특별시	2022-08-15 13:24	160000	해화문(경경공로, 진입)
5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3버395*	최**	771028-1*****	서울특별시	2022-08-15 15:41	160000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5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4우882*	김**	671010-1*****	서울특별시	2022-08-15 16:59	160000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5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0조285*	(주)포커스이엔티	110111-3*****	서울특별시	2022-08-15 17:51	160000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외계로, 진입)
5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0다525*	최**	691207-1*****	인천광역시	2022-08-15 19:37	16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5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9다705*	(주)하니스	110111-5*****	경기도 용인시	2022-08-17 16:10	16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6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4라543*	진**	620728-1*****	경기도 수원시	2022-08-16 19:13	8000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6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0가321*	유**	641101-1*****	인천광역시	2022-08-17 08:23	16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6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1나444*	함**	680610-2*****	서울특별시	2022-08-17 10:58	160000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6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4라698*	(주)원스탑투어	110111-6*****	서울특별시	2022-08-17 15:56	160000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6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9마952*	정**	690222-2*****	서울특별시	2022-08-21 11:39	80000	정충체육관(등호로, 진입)
6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5도123*	HA *****	900413-5*****	대구광역시	2022-08-20 06:12	8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6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7마794*	최**	691207-1*****	인천광역시	2022-08-20 06:05	16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6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9다705*	(주)하니스	110111-5*****	경기도 용인시	2022-08-19 13:25	16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6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0서315*	김**	671126-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2-08-19 12:42	80000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6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기77구269*	장**	571108-1*****	경기도 안양시	2022-08-19 07:58	80000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외계로, 진입)

연번	과대표	차량번호	납세자명	주민번호	주소	단속일자	본세금액	단속장소
7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서울50머242*	강**	650115-1*****	서울특별시	2022-08-19 06:33	80000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7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4우682*	김**	671010-1*****	서울특별시	2022-08-20 13:39	160000	홍인지문(청계천로, 진입)
7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3버395*	최**	771028-1*****	서울특별시	2022-08-20 12:19	160000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7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6구140*	LUO *****	680816-5*****	충청남도 아산시	2022-08-20 11:29	80000	홍인지문(종로, 진입)
7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7머794*	최**	691207-1*****	인천광역시	2022-08-18 19:26	16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7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3구735*	한**	701025-2*****	경기도 고양시	2022-08-20 16:04	16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7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0보396*	주식회사 리온솔	110111-5*****	서울특별시	2022-08-21 15:51	16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7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2타717*	NGUYEN *** *****	890307-5*****	충청북도 음성군	2022-08-20 18:52	80000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7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2우419*	BALICANTA *****	860429-5*****	충청북도 청주시	2022-08-22 11:13	80000	반안트리(정충단로, 진입)
7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서울83거792*	김**	640506-2*****	서울특별시	2022-08-20 07:01	16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8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8조410*	김**	760130-1*****	경기도 오산시	2022-08-20 07:59	160000	반안트리(정충단로, 진입)
8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4거388*	이**	650320-1*****	충청북도 음성군	2022-08-20 08:21	160000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8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4타551*	임**	400213-1*****	부산광역시	2022-08-20 10:08	80000	홍인지문 북측(올곡로, 진입)
8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7도424*	변**	630914-1*****	대구광역시	2022-08-20 14:21	8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8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4러698*	(주)원스탑투어	110111-6*****	서울특별시	2022-08-23 15:41	160000	백범광장(소월로3길)
8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6도213*	(주)제이비물산	110111-5*****	서울특별시	2022-08-23 11:11	160000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태계로, 진입)
8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충북80다529*	(주)중인	301-8*-*****	충청북도 청주시	2022-08-23 09:54	160000	홍인지문(청계천로, 진입)
8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94도959*	윤**	721027-1*****	충청남도 홍성군	2022-08-23 09:53	8000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8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4타957*	에이스지엠(주)	110111-6*****	서울특별시	2022-08-22 19:18	160000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8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6고279*	이**	830115-1*****	충청남도 아산시	2022-08-22 13:52	16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9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충북80다529*	(주)중인	301-8*-*****	충청북도 청주시	2022-08-22 13:31	160000	홍인지문(청계천로, 진입)
9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4타551*	임**	400213-1*****	부산광역시	2022-08-22 10:26	80000	등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9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기83터399*	박**	540203-1*****	경기도 부천시	2022-08-22 10:28	8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연번	과대로	차량번호	납세자명	주민번호	주소	단속일자	본세금액	단속장소
9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1나573*	김**	940206-1*****	경기도 고양시	2022-08-22 10:51	160000	백범광장(소월로3길)
9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9다705*	(주)하니스	110111-5*****	경기도 용인시	2022-08-22 12:52	160000	시창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9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6도213*	(주)제이비물산	110111-5*****	서울특별시	2022-08-24 14:18	16000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9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0다625*	최**	691207-1*****	인천광역시	2022-08-24 14:24	160000	시창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9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7로951*	박**	730413-1*****	전라북도 전주시	2022-08-24 15:46	80000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9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충북80다529*	(주)중인	301-8-*****	충청북도 청주시	2022-08-25 17:49	160000	홍인지문(청계천로, 진입)
9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4라698*	(주)원스탑투어	110111-6*****	서울특별시	2022-08-25 13:09	160000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0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6다384*	(주)간판적착	180111-0*****	경기도 남양주시	2022-08-25 06:42	160000	시창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0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기80가158*	(주)하나디엔엘	110111-1*****	경기도 수원시	2022-07-13 16:09	16000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0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4다357*	에이스저임(주)	110111-6*****	서울특별시	2022-08-25 18:00	160000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0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50누420*	이**	700216-1*****	서울특별시	2022-08-28 15:28	160000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10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5가943*	VIT ****	920719-5*****	전라남도 무안군	2022-08-26 10:55	80000	시창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0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9다705*	(주)하니스	110111-5*****	경기도 용인시	2022-08-26 14:18	16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0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3구735*	한**	701025-2*****	경기도 고양시	2022-08-26 17:09	160000	시창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0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6가918*	(주)신원피에프	110111-2*****	서울특별시	2022-08-27 09:36	160000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0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1너460*	최**	721116-1*****	경기도 수원시	2022-08-27 12:00	80000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0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4너702*	해인에이저아이에스(주)	110111-1*****	서울특별시	2022-08-27 16:01	160000	남산1호터널(녹사평대로)
11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9저451*	최**	720721-2*****	부산광역시	2022-08-27 18:19	80000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11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5노842*	한***(+**)	630123-1*****	경기도 수원시	2022-08-28 06:00	80000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외계로, 진입)
11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1너460*	최**	721116-1*****	경기도 수원시	2022-08-28 10:45	16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1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1라404*	이**	670313-1*****	대전광역시	2022-08-28 13:31	8000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1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0부870*	이**	750315-2*****	서울특별시	2022-08-28 14:50	80000	시창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1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4우682*	김**	671010-1*****	서울특별시	2022-08-29 20:43	160000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연번	과대로	차량번호	납세자명	주민번호	주소	단속일자	본세금액	단속장소
11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1나444*	합**	680610-2*****	서울특별시	2022-08-29 15:20	160000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11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충북80다529*	(주)중인	301-8-*****	충청북도 청주시	2022-08-29 13:31	160000	홍인지문(청계천로, 진입)
11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25우822*	조**	720119-1*****	서울특별시	2022-08-29 12:23	160000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1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3부721*	문**	640719-1*****	서울특별시	2022-08-29 09:08	80000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2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0다525*	최**	691207-1*****	인천광역시	2022-08-29 07:24	16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2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4라698*	(주)원스탑투어	110111-6*****	서울특별시	2022-08-30 12:25	160000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2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6다347*	남**	571001-1*****	서울특별시	2022-08-30 15:58	160000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12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4우682*	김**	671010-1*****	서울특별시	2022-08-30 19:01	160000	홍인지문(종로, 진입)
12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9다705*	(주)하니스	110111-5*****	경기도 용인시	2022-08-30 11:49	160000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12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90머472*	정**	700830-1*****	경상북도 안동시	2022-08-30 09:34	8000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2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충북80다529*	(주)중인	301-8-*****	충청북도 청주시	2022-08-30 12:06	160000	홍인지문(청계천로, 진입)
12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기87다393*	최**	621002-1*****	경기도 부천시	2022-08-31 06:12	8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2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4우682*	김**	671010-1*****	서울특별시	2022-08-31 08:38	160000	홍인지문(종로, 진입)
12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서울56나817*	한**	571015-1*****	서울특별시	2022-08-31 18:45	80000	백범광장(소월로3길)
13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0조285*	(주)포커스이엔티	110111-3*****	서울특별시	2022-08-31 16:38	160000	백범광장(소월로3길)
13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7나318*	강**	510412-1*****	경기도 용인시	2022-08-31 13:19	160000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3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서울85구583*	유**	550421-1*****	서울특별시	2022-08-31 08:10	8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3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3부721*	문**	640719-1*****	서울특별시	2022-08-31 08:56	80000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3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충북80다529*	(주)중인	301-8-*****	충청북도 청주시	2022-08-31 09:12	160000	홍인지문(청계천로, 진입)
13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0다525*	최**	691207-1*****	인천광역시	2022-08-31 13:03	16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3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52보620*	송**	640217-1*****	경기도 고양시	2022-08-31 19:29	160000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13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94가520*	황**	911108-1*****	경기도 안성시	2022-08-31 19:51	80000	홍인지문 북측(울곡로, 진입)
13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92모297*	김**	830206-1*****	충청남도 천안시	2022-08-31 20:09	80000	백범광장(소월로3길)

연번	과대로	차량번호	납세자명	주민번호	주소	납속일자	본세금액	단속장소
13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3부721*	문**	640719-1*****	서울특별시	2022-09-01 09:06	160000	송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4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3저624*	김**	670113-1*****	경기도 양주시	2022-09-01 13:58	160000	송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4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1나573*	김**	940206-1*****	경기도 고양시	2022-09-01 17:57	160000	백범광장(소월로3길)
14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4우682*	김**	671010-1*****	서울특별시	2022-09-01 18:43	160000	홍인지문(청계천로, 진입)
14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7소385*	주식회사 금아테크	110111-7*****	서울특별시	2022-09-01 19:39	160000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14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56도953*	김**	700327-1*****	경기도 부천시	2022-09-01 09:18	80000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14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92모297*	김**	830206-1*****	충청남도 천안시	2022-09-01 09:38	80000	백범광장(소월로3길)
14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충북80다529*	(주)중인	301-8*-*****	충청북도 청주시	2022-09-01 10:06	160000	홍인지문(청계천로, 진입)
14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강원28라222*	(주)유니콘엔지니어링	110111-2*****	강원도 횡성군	2022-09-01 11:00	80000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14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7부558*	서**	650220-2*****	서울특별시	2022-09-01 10:35	8000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14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8모628*	최**	600310-2*****	대구광역시	2022-09-03 08:42	160000	반안트리(정충단로, 진입)
15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52무442*	양**	710513-2*****	경기도 의정부시	2022-09-03 18:14	160000	홍인지문(종로, 진입)
15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9고836*	양**	610209-1*****	부산광역시	2022-09-03 14:42	8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5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3가924*	석**	650504-1*****	경상북도 영주시	2022-09-03 12:27	80000	정충체육관(등호로, 진입)
15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0부618*	장**	791020-1*****	서울특별시	2022-09-02 15:39	8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5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9부395*	이**	430816-1*****	전라북도 정읍시	2022-09-04 10:42	80000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15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7가851*	채**	680403-1*****	경상남도 양산시	2022-09-03 16:38	8000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5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90수405*	주식회사 릿지	135511-0*****	경기도 시흥시	2022-09-03 08:51	8000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5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90수405*	주식회사 릿지	135511-0*****	경기도 시흥시	2022-09-04 07:27	80000	반안트리(정충단로, 진입)
15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3부721*	문**	640719-1*****	서울특별시	2022-09-04 08:16	16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5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3부721*	문**	640719-1*****	서울특별시	2022-09-03 07:50	16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6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3부721*	문**	640719-1*****	서울특별시	2022-09-02 09:30	160000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16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7소385*	주식회사 금아테크	110111-7*****	서울특별시	2022-09-02 07:27	160000	해회문(청계천로, 진입)

연번	과태료	차량번호	납세자명	주민번호	주소	단속일자	본세금액	단속장소
16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47도944*	김**	600713-1*****	경기도 남양주시	2022-09-03 18:06	80000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6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2조629*	풍전건설 주식회사	110111-0*****	서울특별시	2022-09-02 10:31	80000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6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서울44두326*	이**	900325-1*****	서울특별시	2022-09-03 10:25	16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6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07821*	유**	641101-1*****	인천광역시	2022-09-02 06:13	16000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6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4라698*	(주)원스탑투어	110111-6*****	서울특별시	2022-09-02 12:48	160000	송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6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04우682*	김**	671010-1*****	서울특별시	2022-09-03 06:13	160000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16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1나573*	김**	940206-1*****	경기도 고양시	2022-09-02 15:04	160000	해화문(청경공로, 진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7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사업기간 정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161호(2022. 8. 11.)로 공사완료 공고된 「금호로 확장공사(금호동1가 506-3~526)」에 대하여 사업기간 정정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506-3 ~ 52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금호로 확장공사(금호동1가 506-3~526)
3. 사업의규모: 도로확장 폭15→20m, 연장 7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서울특별시장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기간: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2018. 8.16.)로부터 2022.6.31.까지
6. 준공 관련도서: 게재 생략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3) 및 성동구청 토목과(☎02-2286-57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787호
중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2. 10. 13. ~ 2022. 10. 26.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의견제출기한 및 장소	처분근거
㈜지성종합건축 (이민규)	건축공사업 02-124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19길 18 3층(양재동)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금지	영업정지 혹은 등록말소	2022. 11. 4.(금)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10층 건설혁신과	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제83조 제6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구 고 시

◆ 광진구고시 제2022-1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 1. 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어 광진구고시 제2020-67호(2020. 6. 1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내용 중 토지·물건조서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공고한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67-2~110-2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폭 6m, 연장 18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변경)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로과(☎450-78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 사업시행자 : 광진구청장
☐ 사 업 명 :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1	기정	화양동 67-2	대	50	8	김*욱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67-2					
	변경	화양동 67-5	대	8	8	김*욱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67-2					
2	기정	화양동 67-3	대	145	17	이*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은로 47, 308동 203호(고운동, 가락마을아파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근저당권	
	변경	화양동 67-6	대	17	17	이*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정로 311번길39, 203호(도안동)		화양동 세마을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2-5	근저당권	
3	기정	화양동 67-1	대	113	16	원*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6길 8(화양동)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근저당권	
	변경	화양동 67-4	대	16	16	원*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6길 8(화양동)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화양동지점)	근저당권	
4	기정	화양동 127-3	대	382	24	기독교한국**하 니님의교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27-3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6(방화동지점)	근저당권	
	변경	화양동 127-4	대	24	24	기독교한국오순 절교회서울**교 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27-3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방화동지점)	근저당권	
5	변경	화양동 125-2	대	38	38	박*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숭정동 40-3					
					1/2	김*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50 후곡마을 601-1404					
6	기정	화양동 124-2	대	165	5	표*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24-2					
	변경	화양동 124-3	대	5	5	표*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24-2					

토 지 조 서

- ☐ 사업시행자 : 광진구청장
☐ 사 업 명 :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번호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7	기정	화양동 70	대	241	27	1	강*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70				
	변경	화양동 70-1	대	27	27	8/10	강*웅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6길 14(화양동)				
						2/10	최*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6길 14(화양동)				
8	기정	화양동 74-2	대	231	9	6/10	박*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16길 12-11 (구의동)	화양동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2-5	근저당권	
						4/10	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16길 12-11 (구의동)				
	변경	화양동 74-5	대	9	9	6/10	박*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16길 12-11 (구의동)	화양동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2-5	근저당권	
						4/10	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16길 12-11 (구의동)				
9	변경없음	화양동 74-4	대	2	2	1	정*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74-2				
10	변경없음	화양동 110-24	대	79	79	1	주식회사**유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72-3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압류	
11	기정	화양동 110-10	도	218	143	1	김*주	부천시 오정동 505-5, 104호				
	변경	화양동 110-74	도	143	143	1	김*주	부천시 오정동 505-5, 1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압류	
12	기정	화양동 110-49	대	146	1	1	손*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10-49	화양동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양동 22-5	근저당권	
	변경	화양동 110-75	대	1	1	1	이*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6길 21 (화양동)	화양동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양동 22-5	근저당권	

토 지 조 서

- ☐ 사업시행자 : 광진구청장
☐ 사 업 명 :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폐인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13	기정	화양동 110-50	대	59	59	1	손*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10-8					
	변경	화양동 110-50	대	59	59	3/9	이*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6길 21 (화양동)					
						2/9	손*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72번길 22, 308동 703호(호계동, 무궁화 아파트)					
						2/9	손*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6길 19-4 (화양동)					
						2/9	손*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6길 13, 102동 402호(자양동, 금강케이씨아파트)					
14	기정	화양동 110-8	대	161	13	1	손*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10-49					
	변경	화양동 110-73	대	13	13	1	손*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6길 19-4 (화양동)					
15	변경없음	화양동 110-12	임	17	17	1	장*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9-16					

별첨 조서

- 사업시행자 : 광진구청장
□ 사업명 :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구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1	화양동 67-2	건물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20㎡	1	김*옥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67-2				
2	화양동 67-3	대문	시멘트	1㎡	1	이*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로311번길309, 203호(도안동)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근저당권	
3	화양동 67-1	담장	벽돌	1㎡	1	원*배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67-1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근저당권	
4	화양동 70	대문	벽돌	1㎡	8/10 2/10	강*웅 최*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6길14(화양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6길14(화양동)				
5	화양동 127-3	화단 울타리	콘크리트 목재, 콘크리트	6㎡ 1식	1	기독교한국순 절교회사서울** 교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27-3	수산업협동조 함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전동)	근저당권	
6	화양동 74-1	건물(2층) 담장	벽돌 벽돌, 철재	4㎡ 12㎡	1	권*배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파트 102-2303				
7	화양동 74-2	건물(2층) 건물(3층) 건물(4층) 샷시(4층)	벽돌조 평슬래브	4㎡ 4㎡ 2㎡ 1㎡	6/10 4/10	박*식 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16길 12-11(구의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16길 12-11(구의동)	화양동새마을 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2-5	근저당권	

물 권(영업권) 조 서

- ☐ 사업시행자 : 광진구청장
☐ 사업명 :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권의 종류	영업종류 (업태)	상호명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1	신설	화양동 67-2	영업권	철물·기계	명화철물	1식	1	박*욱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67-2					

◆ 도봉구고시 제2022-193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96호(2022. 7. 7.)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48-3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2-1249호(2022. 8. 25.)로 열람공고 및 사업 인정(의제) 의견청취 공고를 완료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련 내용은 도봉구청 문화관광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13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도봉구 창동 산48-3, 창동 345-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 명칭: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다. 사업의 규모: 문화시설 조성 3,501.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소: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고시일로부터 2026.03.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자 등 권리명세: 따로붙임

사. 문 의: 도봉구청 문화관광과(☎02-2091-2253)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용	
1	창동 348-3	임야	3,404	3,404	서울시 도봉구 미들로 656	서울특별시				
2	창동 345-3	대	97.6	97.6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40길**, *등***호(**동,**빌라)	마**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한****금고	근저당권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용	
1	창동 345-3	건물	철근콘크리트 조	전체 (지하층/지상2 층)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길**, *등***호(**동,**빌라)	마**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한****금고	근저당권	

영 업 권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용	
1	창동 345-3	음식	해동	1	창동 345-3	김*				
2	창동 345-3	음식	정원상회	1	창동 345-3	마**				
3	창동 345-3	소매	엠세티	1	창동 345-3	마**				
4	창동 345-3	건물면	도담 인테리어	1	창동 345-3	마**				

◆ 노원구고시 제2022-130호

관리처분계획(환지방식) 변경 인가 및 부분 공사완료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 [상계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건설부고시 제55호(81. 2.20.) [상계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로 구역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03호(79. 3. 2.) [상계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고시 제384호(81.10.23.) [상계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로 사업시행인가, 노원구 고시 제17호(91. 3.18.) [상계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고시 제22호(89. 1.17.) [상계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상계2·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일부)과 관련입니다.
2. 상계2·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일부)구역 내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의 미분양지 보류지 전환 등으로 「도시개발법」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 고시하고,
3. 사업시행인가와 같이 공공시설공사가 부분 완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제28조(분양처분)에 따라 부분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노 원 구 청 장

I.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상계2·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일부)

나.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1-445 일대
- 면 적 : 68,023.9㎡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II. 관리처분계획 변경

가. 관리처분계획 변경 내역

구 분		필지 및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195	68,706.1	194	68,023.9	감) 682.2	
일반지	일반환지	114	27,371.0	105	24,055.7	감) 3,315.3	
	일반환지+분양지			5	1,749.4	증) 1,749.4	
	일반환지+보류지			3	789.9	증) 789.9	

구 분		필지 및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소계	114	27,371.0	113	26,595.0	감) 776.0	
분양지 체비지 보류지	분양지	52	9,528.6	28	4,846.3	감) 4,682.3	미분양지 전환
	체비지	2	35.9	2	35.9		
	보류지			2	342.6	증) 342.6	
	분양지+ 보류지			22	4,339.7	증) 4,339.7	
	소계	54	9,564.5	54	9,564.5		
	기반시설 용지	도로	22	15,886.3	22	15,980.1	증) 93.8
	하천	3	13,967.4	3	13,967.4		
	철도	2	1,916.9	2	1,916.9		
	소계	27	31,770.6	27	31,864.4	증) 93.8	

1)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의 변경(공공용지)

동명	구획번호		면적(㎡)		비고
	구역	블록-롯트	변경 전	변경 후	
상계동	2	11-25	1,152.4	1,246.2	계획도로

2) 일반환지 + 분양지로 전환

동명	구획번호		용도		비고
	구역	블록-롯트	변경 전	변경 후	
상계동	2	11-20	일반환지	일반환지 + 분양지	
		12-9	일반환지	일반환지 + 분양지	
	6	40-21가	일반환지	일반환지 + 분양지	
		40-29나	일반환지	일반환지 + 분양지	
		40-37	일반환지	일반환지 + 분양지	

3) 일반환지 + 보류지로 전환

동명	구획번호		용도		비고
	구역	블록-롯트	변경 전	변경 후	
상계동	6	40-30	일반환지	일반환지 + 보류지	
		45-1	일반환지	일반환지 + 보류지	
		45-5-1	일반환지	일반환지 + 보류지	

4) 보류지로 전환

동명	구획번호		용도		비고
	구역	블록-롯트	변경 전	변경 후	
상계동	6	39-7	분양지	보류지	
		40-39	분양지	보류지	

5) 분양지 + 보류지로 전환

동명	구획번호		용도		비고
	구역	블록-롯트	변경 전	변경 후	
상계동	6	39-3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39-11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39-12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40-1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40-2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40-4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40-5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40-6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40-7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40-8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동명	구획번호		용도		비고
	구역	블록-롯트	변경 전	변경 후	
		40-10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40-14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40-16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40-17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40-20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40-22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40-23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40-24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40-26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40-27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40-28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40-32	분양지	분양지+보류지	

III. 부분 공사완료

가. 공사내역

- 도로개설 공사 A=15,980.1m²
- 철도용지 공사 A=1,916.9m²
- 하천공사 A=13,967.4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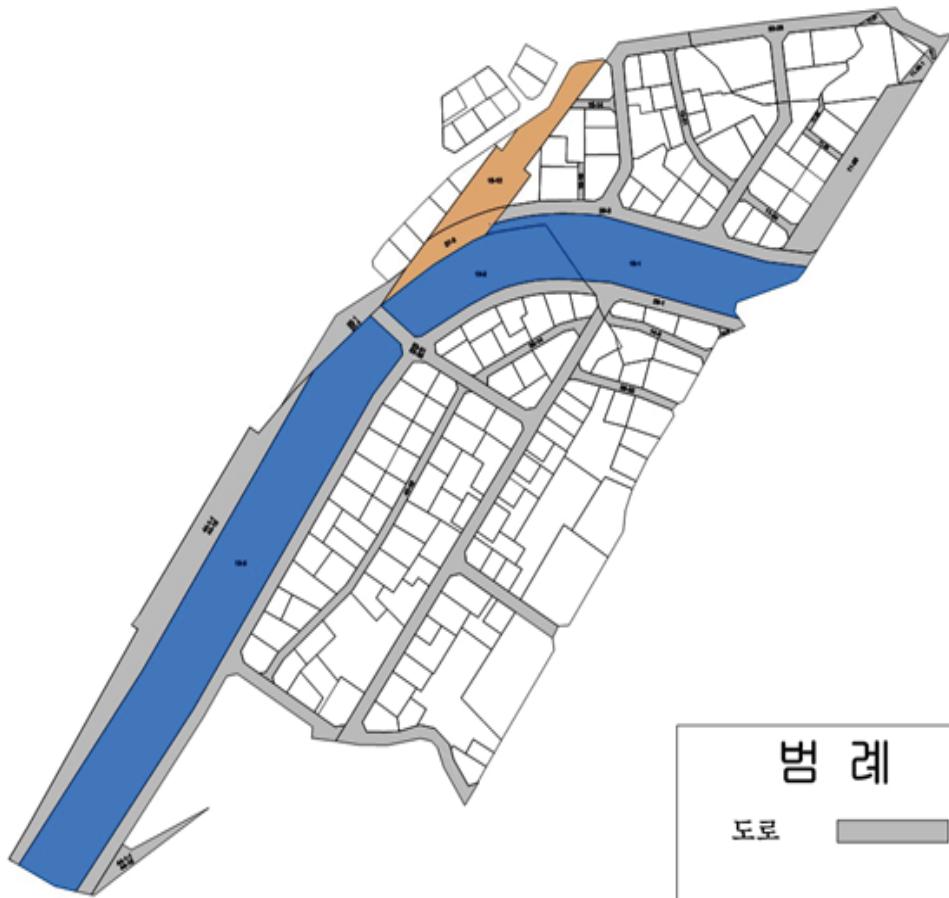
나. 부분 공사완료 내역

구 분	필지수	면 적 (㎡)	비 고
합 계	194	68,023.9	
일반지	113	26,595.0	
일반환지	105	24,055.7	
일반환지+분양지	5	1,749.4	
일반환지+보류지	3	789.9	

구 분	필지수	면 적 (㎡)	비 고
분양지	54	9,564.5	
분양지	28	4,846.3	
체비지	2	35.9	
보류지	2	342.6	
분양지+보류지	22	4,339.7	
공 공 용 지	27	31,864.4	
도 로	22	15,980.1	
하 천	3	13,967.4	
철 도	2	1,916.9	

다. 부분 공사완료 도면

상계2·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일부)부분 공사완료도



범례	
도로	
철도	
하천	

라. 안내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노원구 부동산정보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열람가능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부동산정보과(☎02-2116-3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고시 제2022-1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공동 131-1~124-1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구로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도로 구분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폭원(m)							
신설	소로	3	6	국지 도로	150	공동 131-1	공동 124-1	일반 도로	-	

나. 도로 결정사유

주민체육시설 진입도로로서 기존 진입로(현황도로) 협소로 지역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한 실정으로 기존 현황도로를 확폭하여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결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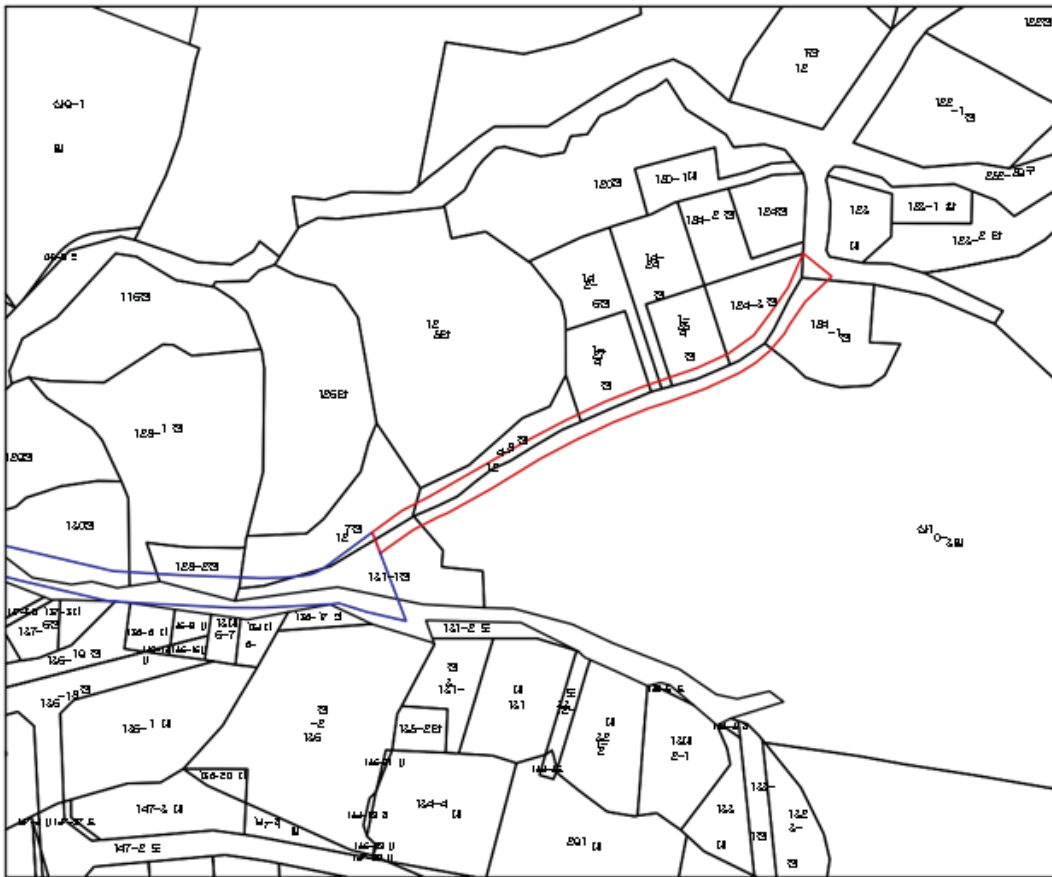
2. 지형도면 : 붙임참조

3. 관계도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295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구로구고시 제2022-15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고척동 253-124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구로구청장

1. 결정취지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 고척근린시장 인근 고척동 253-124일대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며, 주차장 설치로 인한 맹지 발생(고척동 253-280)을 방지하고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을 중복결정함.

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결정 조서

1)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고척동 253-124번지 외 5필지	-	증)852	852	-	· 주차면수 20면, 지상1층 (자주식 평면형)

2)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지번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	3~4	국지도로	30	고척동 253-171	일반도로	-	· 주차장 내 도로 중복결정

3)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852㎡ (지상1층, 자주식 평면형)	• 고척2동 저층주택 밀집 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및 주거 환경 개선 • 주차시설을 활용한 대량 구매고객 확보 및 매출 확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②	도로	• 도로 신설 : 134㎡ (주차장과 중복결정)	•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인하여 인접한 고척동 253-280번지 대지의 진입도로가 폐쇄되지 않도록 현재 진입도로인 고척동 253-171번지 도로를 존치하고 주차장과 중복결정

3. 지형도면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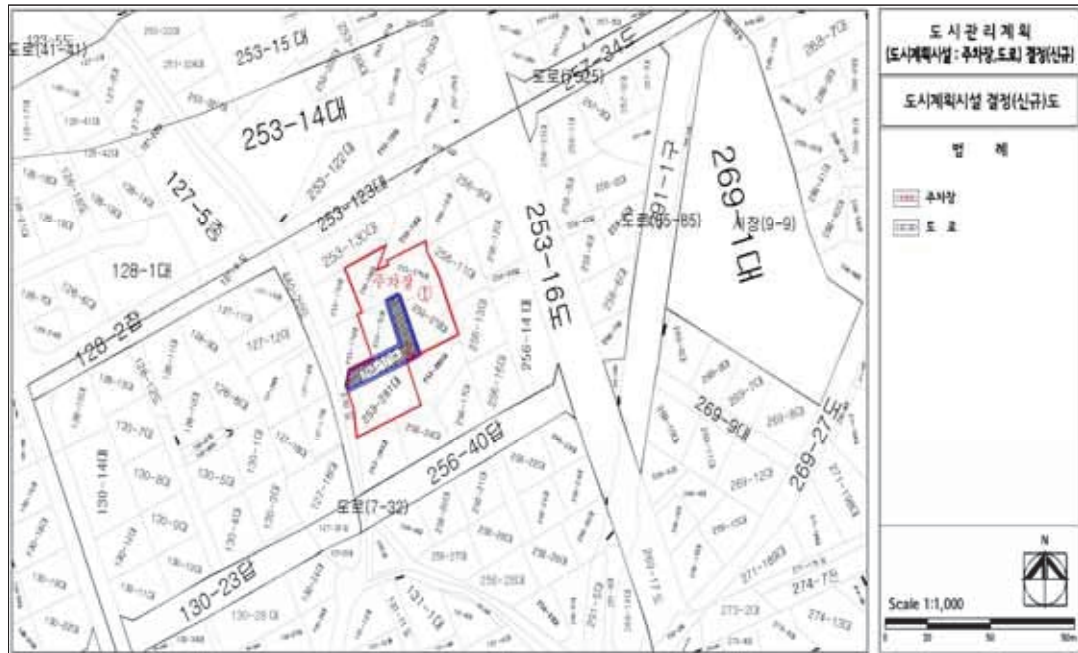
－ 구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44)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고시 제2022-147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폐지(취소) 고시

1.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2019-284호(2019.8.29.)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고시 제 2020-60호(2020.06.04.)로 실시계획인가, 동작구 고시 제2020-172호(2020.11.19.)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동작구 고시 제2022-25호(2022.2.10.)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25호(2022.2.10.)]를 폐지(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13일

동작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3-9번지 일대
- 면 적 : 15,964㎡
- 내 용 : 공원조성(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지장물 1동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장 사무위임)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동작구청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0. 6. 4. ~ 2022.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사. 실시계획 인가 폐지(취소) 사유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재협의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98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 업 명 :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3-9	수도용지	14,367	14,36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369 /15448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47-2	985 /15448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47-2	4656 /15448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47-2	890 /15448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47-2	548 /15448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3-5	수도용지	400	4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3-8	수도용지	1,197	1,19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 업 명 :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또는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서울시 동작구 본동 7-1	무허가 건물	세멘조	183	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			

위 치 도



◆ 강남구고시 제2022-200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공무원9단지)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 (2011.06.23)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9 (2017.10.26.)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11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강 남 구 청 장

I. 결정(경미한 변경) 취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 도로결정(변경)조서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1	72	50~53	주간선 도로	1,120 (50)	광장86	광로 1-28	일반 도로	-	서고시344호 (83.06.24)	영등대로 가감속차로 연장
변경	광로	1	72	50~53	주간선 도로	1,120 (50)	광장86	광로 1-28	일반 도로	-	서고시344호 (83.06.24)	
기정	중로	1	404	15~25.5	국지 도로	620 (120)	광로1-72	대로3-108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402	8~12	국지 도로	366 (62)	대로3-108	학교4	일반 도로	-	서고시 2014-208호 (14.06.05)	-

※ ()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의 해당임

■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1-72	광로 1-72	●가감속차로 연장변경 (42m→84m)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영등대로변(일원터널→일원초등학교) 가감 속차로 연장변경

※ 상기 변경 시설을 제외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교통시설은 변경없음

2) 주차장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없음

2) 녹지(변경)

■ 녹지결정(변경)조서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㉑	녹지	원충녹지	강남구 일원동 693	2,339.4	-	2,339.4	-	양재대로변 (폭10m)
변경	㉒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 일원동 688	3,131.8	감) 123.5	3,008.3	서고시 2017-379호 (17.10.26)	영등대로변 (폭12m)

■ 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㉔	녹지	●연결녹지 면적감소 : 3,131.8㎡→3,008.3㎡(감123.5㎡)	●광로1-72호선 가감속차로 연장 변경에 따른 연결녹지 면적축소

※ 상기 변경 시설을 제외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녹지시설은 변경없음

3) 광장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1~10,12~32 : 생략

■ 특별계획구역11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11	강남구 일원동 688 일대	57,492.6	-	57,492.6	공무원9단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단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변경)

■ 특별계획구역 1~10,12~32 : 생략(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1(변경)

구 분			계획지침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강남구 일원동 688 일대	●강남구 일원동 688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57,492.6㎡	●57,492.6㎡	
획지(계획대지) 면적			●51,021.0㎡	●51,021.0㎡	
공공시설 면적			●6,471.6㎡	●6,471.6㎡	
공공시설 비율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7.5% 내외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7.5% 내외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기반시설 계획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4,132.2㎡ - 연결녹지 1개소(영동대로변 폭 12m)(면적 : 3,131.8㎡) 계획 - 개원길·영동대로변 가감속차로, 일원 초교 앞 8m도로 설치(면적 : 1,000.4㎡) ※양재대로변 완충녹지 (폭10m)(면적 : 2,339.4㎡)를 특별계획구역에 포함 ※공공기반시설 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4,132.2㎡ - 연결녹지 1개소(영동대로변 폭 12m)(면적 : 3,008.3㎡) 계획 - 개원길·영동대로변 가감속차로, 일원 초교 앞 8m도로 설치(면적 : 1,123.9㎡) ※양재대로변 완충녹지 (폭10m)(면적 : 2,339.4㎡)를 특별계획구역에 포함 ※공공기반시설 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영동대로변 (일원터널→일원초등학교) 가감속차로 연장변경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계획	용도	불허 용도A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허용 용도a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주1)	기준 용적률	●190% 이하	●190% 이하	
		허용 용적률	●240% 이하	●240% 이하	●우수디자인 등 인센티브 10%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40%
		상한 용적률	●260% 이하	●26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5층 이하 ●저층구간(7층 이하) : 개원길변 폭25m	●최고층수 25층 이하 ●저층구간(7층 이하) : 개원길변 폭25m	

구 분		계획지침		비 고
		기정	변경	
배치	건축한계선	•개원길변 : 6m •양재대로변 : 10m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개원길변 : 6m •양재대로변 : 10m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기타에 관한사항	경 관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보행동선	•일원초등학교변 공공보행통로(8m)지정 •단지 주출입구, 중앙광장, 연결녹지를 연결하는 보행동선 조성	•일원초등학교변 공공보행통로(8m)지정 •단지 주출입구, 중앙광장, 연결녹지를 연결하는 보행동선 조성	
	차량동선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자전거도로	•영등대로변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폭3m 이상) •개원길, 양재대로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 (폭1.5m 이상)	•영등대로변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폭3m 이상) •개원길, 양재대로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 (폭1.5m 이상)	
	근린광장	•단지중심부 근린광장 조성	•단지중심부 근린광장 조성	

주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3항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4항에 의거 용적을 적용

-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임대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X 20% = 40%]

※ 허용용적률은 우수디자인 등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20년 이상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를 합산하여 적용

5. 인센티브 항목 : 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III.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1	72	50~53	주간선 도로	1,120 (50)	광장86	광로 1-28	일반 도로	-	서고시344호 (83.06.24)	영동대로 가감속차로 연장
변경	광로	1	72	50~53	주간선 도로	1,120 (50)	광장86	광로 1-28	일반 도로	-	서고시344호 (83.06.24)	
기정	중로	1	404	15~25.5	국지 도로	620 (120)	광로1-72	대로3-108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402	8~12	국지 도로	366 (62)	대로3-108	학교4	일반 도로	-	서고시 2014-208호 (14.06.05)	-

※ ()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의 해당임

■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1-72	광로 1-72	●가감속차로 연장변경 (42m→84m)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영동대로변(일원터널→일원초등학교) 가감 속차로 연장변경

※ 상기 변경 시설을 제외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교통시설은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없음

2) 녹지(변경)

■ 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㉑	녹지	원충녹지	강남구 일원동 693	2,339.4	-	2,339.4	-	양재대로변 (폭10m)
변경	㉒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 일원동 688	3,131.8	감) 123.5	3,008.3	서고시 2017-379호 (17.10.26)	영동대로변 (폭12m)

■ 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㉔	녹지	●연결녹지 면적감소 : 3,131.8㎡→3,008.3㎡(감123.5㎡)	●광로1-72호선 가감속차로 연장 변경에 따른 연결녹지 면적축소

※ 상기 변경 시설을 제외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녹지시설은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공공·기반시설 계획(변경)

■ 공공·기반시설계획(기정)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기반시설 계획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4,132.2㎡ - 연결녹지 1개소(영동대로변 폭 12m) (면적 : 3,131.8㎡) 계획 - 개원길·영동대로변 가감속차로, 일원초교 앞 8m도로 설치(면적 : 1,000.4㎡) ※양재대로변 완충녹지 (폭10m)(면적 : 2,339.4㎡)를 특별계획구역에 포함 ※공공기반시설 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4,132.2㎡ - 연결녹지 1개소(영동대로변 폭 12m) (면적 : 3,131.8㎡) 계획 - 개원길·영동대로변 가감속차로, 일원초교 앞 8m도로 설치(면적 : 1,000.4㎡) ※양재대로변 완충녹지 (폭10m)(면적 : 2,339.4㎡)를 특별계획구역에 포함	

※ '계획지침' 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금회 계획지침 변경 내용임

■ 공공·기반시설계획(변경)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기반시설 계획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4,132.2㎡ - 연결녹지 1개소(영동대로변 폭 12m) (면적 : 3,008.3㎡) 계획 - 개원길·영동대로변 가감속차로, 일원초교 앞 8m도로 설치(면적 : 1,123.9㎡) ※양재대로변 완충녹지 (폭10m)(면적 : 2,339.4㎡)를 특별계획구역에 포함 ※공공기반시설 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4,132.2㎡ - 연결녹지 1개소(영동대로변 폭 12m) (면적 : 3,008.3㎡) 계획 - 개원길·영동대로변 가감속차로, 일원초교 앞 8m도로 설치(면적 : 1,123.9㎡) ※양재대로변 완충녹지 (폭10m)(면적 : 2,339.4㎡)를 특별계획구역에 포함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영동대로변(일원터널→일원초등학교) 가감속차로 연장변경

※ '계획지침' 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금회 계획지침 변경 내용임

4.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IV. 관계도면 : 붙임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을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강남구청 제1별관 1층 ☎ 02-3423-6076), 개포2동 주민센터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22-1179호

도시공원(인왕산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인왕산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에 대하여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종로구청장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내역

공 원 명	위 치(소재지)	지 목	면 적(㎡)	비 고
인왕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종로구 부암동 산17-1	임야	31,329	

2. 부지사용 계약일 : 2022. 9. 29.

3. 부지사용 계약기간: 2022. 9. 29. ~ 2025. 9. 28.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공원녹지과(☎2148-2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공고 제2022-14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00호(2022.09.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최초 결정된 「방학동 726-65~707-20간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1-1)」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로과(☎2091-4054)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13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봉구 방학동 726-65 ~ 707-20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방학1동 707~715-12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및 내용

- 도로개설 : 폭 20m, 길이 8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720번지)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바. 열람공고 기간 : 공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사 업 명 : 방학1동 707~715-12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방학동 707-27	대	208.4	208.4	정00	정0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로 000(울창리)	1/2				
					한00	한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00길 00, 000동 000호 (중계동)	1/2				

물 건 조 서

사 업 명 : 방학1동 707~715-12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단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방학동 707-27	건물	세면블록	44.96	㎡	장0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로 000(울생리)	1/2				
						한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00길 00, 000동 000호 (중계동)	1/2				
		단장	벽돌	10.3	m	장0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로 000(울생리)	1/2				
						한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00길 00, 000동 000호 (중계동)	1/2				
		횡스	철제	5.3	m	장0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로 000(울생리)	1/2				
						한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00길 00, 000동 000호 (중계동)	1/2				
		대문	철제	1	개소	장0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로 000(울생리)	1/2				
						한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00길 00, 000동 000호 (중계동)	1/2				

위 치 도



위치도 설명

방학1동 707~715-12간 도로개설공사

현 황 사 진



사진설명

방학1동 707~715-12간 도로개설공사

◆ 서대문구공고 제2022-1268호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181호(1966.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종 결정(변경)되었으며, 건설부 고시 제20호(1990.4.25.)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68호(2021.12.9.)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백련근린공원에 대하여
2.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대문구청장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11번지 일대

나. 공원면적 : 527,838.1㎡(서대문 : 322,747.2㎡)

다. 공원세분 : 근린공원

라. 조성계획 변경(안)

1) 기반시설 : 29,667㎡ → 30,136㎡(서대문: 23,685㎡)

2) 조경시설 : 2,315㎡ → 2,437㎡(서대문: 2,437㎡)

3) 휴양시설 : 10,684㎡ → 10,948㎡(서대문: 2,153㎡)

4) 유희시설 : 2,802㎡(서대문: 1,823㎡)

5) 운동시설 : 27,375㎡(서대문: 26,291㎡)

6) 교양시설 : 23,726㎡ → 21,365㎡(서대문: 16,004㎡)

7) 편의시설 : 3,987㎡ → 4,020㎡(서대문: 2,870㎡)

8) 관리시설 : 250㎡(서대문: 250㎡)

8) 녹지 및 기타 : 427,032.1㎡ → 428,505.1㎡

(서대문: 247,234.2㎡)

마.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바.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330-1907)

아. 기 타 :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푸른도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대문구 홍은동 산11번지 일대) - 서대문구+은평구

구 분	변 경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전			후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계	527,838.10	100,806	10동	9,436.98	24,805.32	222	527,838.10	99,333	10동	9,436.98	24,908.32	237	감) 1,473㎡	
	소 계	29,667	29,667					30,136	30,136					증) 469㎡	
	도로	25,335	25,335					25,804	25,804					증) 469㎡	
	광장	4,332	4,332					4,332	4,332						
조 경 시 설		2,315	2,315				172	2,437	2,437				172	증) 122㎡	
휴 양 시 설		10,684	10,684				1	10,948	10,948				14	증) 264㎡	
유 회 시 설		2,802	2,802				6	2,802	2,802				6		
운 동 시 설		27,375	27,375	4동	4,181.18	10,742.52	42	27,375	27,375	4동	4,181.18	10,742.52	42		
교 양 시 설		23,726	23,726	2동	5,096.80	13,876.80		21,365	21,365	2동	5,096.80	13,876.80		감) 2,361㎡	
편 익 시 설		3,987	3,987	3동	51	78	1	4,020	4,020	3동	51	78	1	증) 33㎡	
관 리 시 설		250	250	1동	108	108		250	250	1동	108	108	2		
녹지,기타		427,032.10						428,505.10						증) 1,473㎡	
공원시설율 (법정40%)	(100,806㎡/527,838.1㎡)*100%=19.10%							(428,505.10㎡/527,838.1㎡)*100%=18.82%							
공원건폐율 (법정10%)	(9,436.98㎡/527,838.1㎡)*100%=1.79%							(9,436.98㎡/527,838.1㎡)*100%=1.79%							

※ 총괄표 (구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등수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계	527,838.10	100,806	10동	9,436.98	24,805.32	222	527,838.10	99,333	10동	9,436.98	24,805.32	237	감) 1,473㎡
서대문구	322,747.20	76,986	6동	6,829.18	18,608.77	134	322,747.20	75,513	6동	6,829.18	18,608.77	149	감) 1,473㎡
은평구	205,090.90	23,820	4동	2,607.80	6,196.55	88	205,090.90	23,820	4동	2,607.80	6,196.55	88	

2. 시설조서 (총괄)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변 경 전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변 경 후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물(㎡)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물(㎡)	
합계	소계		527,838.1	100,806		10동	9,436.98	24,805.32		221			527,838.1	99,333		10동	9,436.98	24,805.32		237
	도로																			감) 473㎡
기 반 시 설	가	10개소	4,332	4,332							가	10개소	4,332	4,332						증) 469㎡
	가-3	음암동 산6-46	312	312							가-3	음암동 산6-46	312	312						증) 469㎡
	가-4	홍은동 산26-170	2,638	2,638							가-4	홍은동 산26-170	2,638	2,638						
	가-5	홍은동 산11-279	220	220							가-5	홍은동 산11-279	220	220						
	가-6	홍은동 산11-313	207	207							가-6	홍은동 산11-313	207	207						
	가-7	홍은동 산11-313	71	71							가-7	홍은동 산11-313	71	71						
	가-8	홍은동 산11-313	118	118							가-8	홍은동 산11-313	118	118						
	가-9	홍은동 산11-41	175	175							가-9	홍은동 산11-41	175	175						
	가-10	홍은동 산11-41	96	96							가-10	홍은동 산11-41	96	96						
	가-11	홍은동 산11-41	87	87							가-11	홍은동 산11-41	87	87						
	가-12	홍은동 산26-134	408	408							가-12	홍은동 산26-134	408	408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조 경 시 설	소계		2,315.00	2,315.00					172			2,437.00	2,437.00					172	증 122㎡
	잔디밭	가	홍은동 산11-279	544	544					가	홍은동 산11-279	544	544						
	생태연못	나	2개소	398	398					나	2개소	398	398						
		나-2	홍은동 산11-313	277	277					나-2	홍은동 산11-313	277	277						
		나-3	홍은동 산11-41	121	121					나-3	홍은동 산11-41	121	121						
임석원	다	1개소	530	530						다	1개소	530	530						
	다-2	홍은동 산11-41	530	530						다-2	홍은동 산11-41	530	530						
초화원	야	홍은동 산11-41	709	709						야	홍은동 산11-41	709	709						
피크닉장	자	홍은동 산11-41	134	134						자	홍은동 산11-41	134	134						
생태육교	차	음암동산1-12 0							1	차	음암동산1-12 0							1	
잔디 마당										카	홍은동 산11-313	122	122						신설
장외자		시설지내							146		시설지내								146
야외탁자		시설지내							25		시설지내								25

조 경 경 시 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소계	나	5개소	10,684	10,684			건축면적	연면적	1	나	5개소	10,948	10,948				건축면적	연면적	14	중 264㎡	
	나-1	응암동 산7-84	6,619	6,619						나-1	응암동 산7-84	6,619	6,619								
	나-9	홍은동 산11-313	887	887						나-9	홍은동 산11-313	887	887								
	나-10	홍은동 산11-41	26	26						나-10	홍은동 산11-41	26	26								
	나-11	홍은동 산11-41	15	15						나-11	홍은동 산11-41	15	15								
	나-12	홍은동 산11-41	48	48						나-12	홍은동 산11-41	48	48								
등의자										①	시설지내								2	신설	
팔각쉼터	②	체력단련장내 (타-2) 홍은동산11-2 79							1	②	체력단련장내 (타-2) 홍은동산11-2 79								1		
야외 탁자 및 의자										③	시설지내								9	신설	
파고라										⑥	시설지내								2	신설	
노인정																					
휴게소	다	13개소	2,936	2,936						다	13개소	3,200	3,200							중 264㎡	
	다-1	응암동 산6-48일대	400	400						다-1	응암동 산6-48일대	400	400								
	다-2	홍은동	34	34						다-2	홍은동	34	34								

한양시정

[illegible]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아린이 놀이터	소계			2,802.00	2,802.00					6			2,802.00	2,802.00					6		
	라	5개소		2,764	2,764					5	라	5개소	2,764	2,764					5		
	라-1	홍은동 산11-279		1,223	1,223					1	라-1	홍은동 산11-279		1,223	1,223				1		
	라-2	응암동 산6-48		555	555					4	라-2	응암동 산6-48		555	555				4		
	라-3	응암동 산6-46		424	424						라-3	응암동 산6-46		424	424						
아래이 놀이터	라-4	홍은동 305-3		370	370						라-4	홍은동 305-3		370	370						
	라-5	홍은동 산11-325		192	192						라-5	홍은동 산11-325		192	192						
	타	홍은동		38	38					1	타	홍은동		38	38				1		
	산11-325			27,375	27,375		4동	4,181.18	10,742.52	42				27,375	27,375		4동	4,181.18	10,742.52	42	
	체육관	홍은동 산26-155일대		4,125	4,125						2	홍은동 산26-155일대		4,125	4,125						
아래이 놀이터	2																				
	3	홍은동 산11-275일대		9,930	9,930						3	홍은동 산11-275일대		9,930	9,930						
골프 연습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베드민턴 장	마	5개소	2,539	2,539						마	5개소	2,539	2,539					
	마-2	홍은동 산11-279	681	681						마-2	홍은동 산11-279	681	681					
	마-3	응암동 산6-48	523	523	철골/ 철근 콘크리트	지하층 지상층 1층	504 618.75			마-3	응암동 산6-48	523	523	철골/ 철근 콘크리트	지하층 지상층 1층	504 618.75		
	마-4	홍은동 산19-19	300	300						마-4	홍은동 산19-19	300	300					
	마-5	응암동 산6-48	327	327						마-5	응암동 산6-48	327	327					
	마-6	홍은동 산26-170	708	708						마-6	홍은동 산26-170	708	708					
테니스장	파	홍은동 산26-170	1,258	1,258						파	홍은동 산26-170	1,258	1,258					
다목적 운동장	바	2개소	8,400	8,400						바	2개소	8,400	8,400					
	바-1	홍은동	7,772	7,772						바-1	홍은동	7,772	7,772					

안민배 시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력 단원장		산26-157									산26-157								
	바-2	홍은동 산11-279	628	628						바-2	홍은동 산11-279	628	628						
	타	6계소	1,123	1,123						타	6계소	1,123	1,123						
	타-1	응암동 산6-48	234	234						타-1	응암동 산6-48	234	234						
	타-2	홍은동 산11-279	528	528						타-2	홍은동 산11-279	528	528						
	타-3	홍은동 산19-19	80	80						타-3	홍은동 산19-19	80	80						
	타-6	홍은동 산11-313	92	92						타-6	홍은동 산11-313	92	92						
	타-7	홍은동 산11-41일대	94	94						타-7	홍은동 산11-41일대	94	94						
			95							홍은동 산11-41	95	95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력 단련 시설		9개소							42		9개소						42		
		자연체합장내 (하-5) 응암동신6-46							2		자연체합장내 (하-5) 응암동신6-46						2		
		자연체합장내 (하-5) 응암동신6-46							2		자연체합장내 (하-5) 응암동신6-46						2		
		자연체합장내 (하-5) 응암동신6-46							2		자연체합장내 (하-5) 응암동신6-46						2		
		자연체합장내 (하-5) 응암동신6-46							2		자연체합장내 (하-5) 응암동신6-46						2		
		체력단련장내 (타-1) 응암동신6-48							4		체력단련장내 (타-1) 응암동신6-48						4		
		체력단련장 2개소내(타-1) 응암동신6-48							6		체력단련장 2개소내(타-1) 응암동신6-48						6		

이 단 배 우 시 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 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영구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력단련장내 (타-2)							9		체력단련장내 (타-2)					9	
		홍은동산11-279								홍은동산11-279							
		체력단련장내 (타-3.6)							8		체력단련장내 (타-3.6)					8	
		홍은동산19-19 홍은동산11-313								홍은동산19-19 홍은동산11-313							
		체력단련장내 (타-8)							4		체력단련장내 (타-8)					4	
		홍은동산1-41								홍은동산1-41							
		광장내 (가-7)							5		광장내 (가-7)					5	
		홍은동산11-313								홍은동산11-313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소 계	조각원	아	음암동 산6-46	23,726	123		2동	5,096.80	13,876.80		아	음암동 산6-46	21,365	123		2동	5,096.80	13,876.80	감2,361㎡
	청소년수원원	4	음암동 산6-46	2,974	2,974	철골/철근콘크리트	지하1층지상3층1동	2,064.80	5,511.80		4	음암동 산6-46	2,974	2,974	철골/철근콘크리트	지하1층지상3층1동	2,064.80	5,511.80	
	문화화관	5	홍은동 산305-3	4,712	4,712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지상3층1동	3,032.00	8,365.00		5	홍은동 산305-3	4,712	4,712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지상3층1동	3,032.00	8,365.00	
		하	5개소	15,618	15,618						하	5개소	13,257	13,257					감2,361㎡
		하-1	홍은동 산26-170	648	648						하-1	홍은동 산26-170	648	648					
자연학습장	하-2	홍은동 산11-313	3,185	3,185						하-2	홍은동 산11-313	824	824						부지면적 감소
	하-3	홍은동 산11-123	7,925	7,925						하-3	홍은동 산11-123	7,925	7,925						
	하-4	홍은동 산26-182	1,596	1,596						하-4	홍은동 산26-182	1,596	1,596						
		하-5	음암동 산6-46	2,264	2,264						하-5	음암동 산6-46	2,264	2,264					
관찰데크	마	2개소	92	92						마	2개소	92	92						
	마-1	홍은동 산19-19	60	60						마-1	홍은동 산19-19	60	60						
	마-5	홍은동 산11-313	32	32						마-5	홍은동 산11-313	32	32						

공 양 은 시 절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 양 양 시 설	소계			207	207		2동	5,096.80	13,876.80				207	207		2동	5,096.80	13,876.80		
	숙속교실	바	홍은동 11-332	87	87						바	홍은동 11-332	87	87						
	유아실	하	홍은동 산19-19	120	120						하	홍은동 산19-19	120	120						
	체험원																			
주 차 장	소계			3,987	3,987		3동	51	78	1			4,020	4,020		3동	51	78	1	증) 33㎡
	카	카	3개소	3,330	3,330						카	4개소	3,363	3,363						증) 33㎡
	카-1	카-1	홍은동 305-3	900	900						카-1	홍은동 305-3	900	900						
	카-2	카-2	홍은동 산11-275	1,875	1,875						카-2	홍은동 산11-275	1,875	1,875						
매 점	카-3	카-3	응암동 산6-46	555	555						카-3	응암동 산6-46	555	555						
											카-4	홍은동 산11-313	33	33						신설
공 중 전 화																				
	전망대	8	응암동 산7-266	583	583			27	54		8	응암동 산7-266	583	583	철근콘 크리트	지상2 층1동	27	54		
	전망데크	사	홍은동 산19-19	50	50						사	홍은동 산19-19	50	50						

편 이 시 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간이 화장실	10	2개소	24	24		2동	24	24		10	2개소	24	24		2동	24	24		
	10-1	자연체육장내	12	12	PE	지상층 1동	12	12		10-1	자연체육장내	12	12	PE	지상층 1동	12	12		
	10-2	홍은동산11-3 13일대	12	12	PE	지상층 1동	12	12		10-2	홍은동산11-3 13일대	12	12	PE	지상층 1동	12	12		
	㉞	홍은동 산11-325							1	㉞	홍은동 산11-325							1	
관리 사무소			250	250		1동	108	108				250	250		1동	108	108	2	
	9	홍은동 산26-170	250	250	조적	지상층 1동	108	108		9	1개소	250	250		지상층 1동	108	108		
시설 안내판										④	홍은동 산11-313일대							1	
										⑤	홍은동 산11-313일대							1	
특수 시설 기타			427,032.1									428,505.1						증)1,473㎡	

3. 도로조서 (총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9,838.8	25,335				
변경					10,120.8	25,804				
당초	중로	소 계			265	3,175				
당초		3	1	12	265	3,175	진 입 로	산책로15 (종점)	서측구역계	
당초	소로	소 계			1,274	6,183				
당초		2	1	7.5	126	880	진 입 로	남측구역계	소로2-2 (종점)	
당초		2	2	8	421	3,370	진 입 로	남측구역계	소로2-1 (종점)	
당초		3	2	2	348	696	산 책 로	소로3-7 (기점)	홍은동 산11-151	
당초		3	3	6	39	236	진 입 로	동측구역계	주차장 (카-2)	
당초		3	4	3	118	353	진 입 로	소로3-3 (분기점)	홍은동산11-276	
당초		3	5	4	7	29	진 입 로	홍은동 산11-279	광장(가-5)	
당초		3	6	5	33	165	산 책 로	광장(가-5)	소로3-7 (분기점)	
당초		3	7	2.5	182	454	산 책 로	소로3-2 (기점)	산책로16 (기점)	
당초		소 계			8,299.8	15,977				
변경					8,581.8	16,446				
당초	산책로	3	1	3	91	257	산 책 로	산책로37 (종점)	다목적운동장 (바-1)	
당초		3	2	3	129	388	산 책 로			
당초		3	3	1.5	100	150	등 산 로	응암동 산7-12임	산책로6 (분기점)	
당초		3	4	1.5	200	300	등산로	산책로6 (분기점)	산책로6 (분기점)	
당초		3	5	1.5	237	356	등산로	산책로6 (분기점)	산책로6 (분기점)	
당초		3	6	1.5	265	398	등 산 로	북측구역계	자연학습장 (하-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 책 로	3	7	1.5	188	282	등산로	북측구역계	산책로19 (분기점)	
당초		3	8	1.5	206	309	등 산 로	산책로7 (분기점)	산책로96 (종점)	
당초		3	9	1.5	451	677	등 산 로	산책로35 (종점)	응암동산7-270	
당초		3	11	1.5	21	32	등 산 로	홍은동 산11-18	산책로12 (분기점)	
당초		3	12	1.5	21	32	등 산 로	관찰데크 (마-5)	홍은동 산11-18	
당초		3	15	7	42	240	등 산 로	홍은동 산19-2	중로3-1 (기점)	
당초		3	16	1.5	114	171	등 산 로	산책로68 (종점)	홍은동 산11-1	
당초		3	19	1.5	199	298	등 산 로	산책로108 (분기점)	산책로98 (분기점)	
당초		3	20	1.5	160	240	등 산 로	산책로21 (분기점)	산책로29 (분기점)	
당초		3	21	1.5	61	92	등 산 로	산책로98 (분기점)	응암동 산7-276	
당초		3	22	1.5	197	295	등 산 로	산책로5 (분기점)	산책로98 (종점)	
당초		3	23	1.5	131	197	등 산 로	산책로8 (종점)	산책로22 (분기점)	
당초		3	24	1.5	16	24	등 산 로	응암동 산1-89	응암동 산1-27	
당초		3	25	1.5	205	308	등 산 로	응암동 산1-123	소로3-7	
당초		3	29	1.5	225	337	등 산 로	산책로9 (분기점)	산책로100 (분기점)	
당초		3	31	4	27	106	산 책 로	동측구역계	청소년수련원 -4	
당초		3	32	1.5	56	84	산 책 로	산책로31 (분기점)	자연학습장 (하-5)	
당초		3	33	2	93	186	산 책 로	응암동 227-8	산책로35 (분기점)	
당초		3	34	2	17	34	산 책 로	산책로33 (분기점)	배드민턴장 (마-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 책 로	3	35	2	116	232	산 책 로	휴게소(다-6)	산책로9 (기점)	
당초		3	36	2.5	26	65	산 책 로	산책로35 (분기점)	휴게소(다-1)	
당초		3	37	1.5	111	166	산 책 로	중로3-1 (분기점)	산책로1 (기점)	
당초		3	38	2	180	360	산 책 로	중로3-1 (분기점)	산책로106 (분기점)	
당초		3	39	2	226	451	산 책 로	산책로38 (분기점)	산책로106 (분기점)	
당초		3	40	2	145	289	산 책 로	산책로106 (분기점)	산책로106 (분기점)	
당초		3	41	2	247	494	산 책 로	산책로106 (분기점)	산책로42 (분기점)	
당초		3	42	2	168	336	등 산 로	홍은동 산19-19	홍은동 산11-54	
당초		3	54	1.5	77	115	산 책 로	휴게소 (다-13)	홍은동 산11-314	
당초		3	58	1.5	25	38	산 책 로	홍은동 산11-17	산책로100	
당초		3	62	1.5	14	21	산 책 로	산책로63 (분기점)	홍은동 산11-1	
당초		3	63	1.5	63	94	산 책 로	광장 (가-9)	임간휴게소 (나-12)	
당초		3	64	1.5	15	22	산 책 로	산책로16 (분기점)	임간휴게소 (나-12)	
당초		3	67	1.5	65	97	산 책 로	임간휴게소 (나-12)	체력단련장 (타-7)	
당초		3	68	1.5	44	66	산 책 로	광장(가-10)	소로3-7	
당초		3	69	1.5	3	5	산 책 로	산책로68 (분기점)	체력단련장 (타-8)	
당초		3	70	1.5	27	41	산 책 로	산책로72 (분기점)	임간휴게소 (나-10)	
당초		3	71	1.5	117	175	산 책 로	홍은동 산11-41	산책로16 (분기점)	
당초		3	72	1.5	84	126	산 책 로	광장(가-10)	산책로71 (분기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 책 로	3	73	1.5	74	111	산 책 로	광장(가-10)	산책로71 (분기점)	
당초		3	74	1.5	5	8	산 책 로	산책로72 (분기점)	산책로73 (분기점)	
당초		3	75	1.5	15	22	산 책 로	산책로72 (분기점)	산책로73 (분기점)	
당초		3	76	1.5	49	73	산 책 로	홍은동 산11-41	광장(가-10)	
당초		3	77	1.5	80	120	산 책 로	산책로76	산책로71	
당초		3	78	1.5	17	25	산 책 로	산책로77 (분기점)	광장(가-11)	
당초		3	79	3	189	682	산 책 로	산책로88 (종점)	광장(가-8)	
당초		3	80	1.2	40	48	산 책 로	산책로79	광장(가-8)	
당초		3	81	1.2	10.8	13	산 책 로	산책로79	산책로 82	
당초		3	82	1.2	61	73	산 책 로	휴게소 (다-2)	산책로79	
당초		3	83	1.2~5	54	192	산 책 로	산책로82 (분기점)	산책로88 (기점)	
변경		3	83	1.2~5	69	163	산 책 로	산책로82 (분기점)	산책로88 (기점)	
당초		3	84	1.2	133	160	산 책 로	산책로82 (기점)	산책로54 (분기점)	
변경		3	84	1.2	151	181	산 책 로	산책로82 (기점)	산책로54 (분기점)	
당초		3	85	1.2	13	15	산 책 로	광장(가-8)	관찰데크 (마-5)	
당초		3	86	1.5	28	42	산 책 로	산책로12 (분기점)	광장(가-8)	
당초		3	87	2	4	8	산 책 로	휴게소 (다-2)	산책로79 (분기점)	
당초		3	88	5~ 10	25	225	산 책 로	산책로83 (종점)	산책로79 (기점)	
당초		3	89	2	55	109	산 책 로	산책로91 (분기점)	응암동 산1-12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3	90	2	92	183	산책로	음암동 산1-194	홍은동 산11-1	
당초		3	91	2	56	112	산책로	홍은동 산11-1	생태육교 (차)	
당초		3	92							도자구역
당초		3	93	2	106	211	산책로	홍은동 산26-171	중로3-1 (분기점)	
당초		3	94	1.5	40	60	산책로	홍은동 산11-218	산책로2	
당초		3	95	1.5	91	136	등산로	산책로4 (기점)	자연학습장 (하-3)	
당초		3	96	1.5	158	237	등산로	산책로6 (분기점)	산책로8 (종점)	
당초		3	97	1.5	53	80	등산로	산책로98 (분기점)	산책로21 (종점)	
당초		3	98	1.5	200	300	등산로	음암동 산6-3	산책로22 (종점)	
당초		3	99	2	62	124	산책로	음암동 산6-46	청소년수련원(4)	
당초		3	100	3	452	1,355	산책로	체력단련장 (타-7)	자연학습장 (하-3)	
당초		3	101	1.2	69	83	산책로	산책로102 (분기점)	홍은동 산11-18	
당초		3	102	1.5	48	72	산책로	남측구역계	홍은동 산11-18	
당초		3	103	1.2	28	34	산책로	산책로102 (분기점)	홍은동 산11-18	
당초		3	104	1.2	22	26	산책로	산책로101 (분기점)	홍은동 산11-18	
당초		3	105	1.5	61	92	산책로	남측구역계	홍은동 산11-18	
당초		3	106	3	604	1,811	산책로	중로3-1 (분기점)	체력단련장 (타-7)	
당초		3	107	1.5	57	85	산책로	산책로106 (분기점)	홍은동 산11-18	
당초		3	108	1.5	43	64	산책로	광장 (가-12)	홍은동 산26-171	
당초		3	109							도자구역
당초		3	110							도자구역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산 책 로	3	111	2	29	59	산 책 로	산책로83 (분기점)	산책로 84 (분기점)	
신설		3	112	1.8	25	46	산 책 로	산책로83 (분기점)	산책로113 (분기점)	
신설		3	113	1.5~2.5	36	75	산 책 로	산책로83 (분기점)	산책로 84 (분기점)	
신설		3	114	1.8	22	40	산 책 로	산책로113 (분기점)	산책로116 (분기점)	
신설		3	115	2	11	23	산 책 로	산책로84 (분기점)	산책로116 (분기점)	
신설		3	116	2	76	173	산 책 로	휴게소 (다-14)	산책로118 (종점)	
신설		3	117	1	24	24	산 책 로	산책로116 (분기점)	산책로118 (분기점)	
신설		3	118	1.5	11	17	산 책 로	동측구역계	휴게소 (다-14)	
신설		3	119	1	20	20	산 책 로	산책로118 (분기점)	산책로118 (분기점)	

◆ 강서구공고 제2022-1825호

**도시관리계획(공향동 61-1번지 일원 송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주택법
의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1. 공향동 61-1번지 일원 송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주택법 의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공향동 61-1번지 일원 송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주택법 의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서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3일

강 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22. 10. 12. ~ 10. 26.(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주택과 (☎ 02-2600-6787/ FAX 02-2620-0465)
3. 열람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①	송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 계획구역	서울시 강서구 공향동 61-1와 82필지	-	증) 11,484.0	11,484.0	-	-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①	서울시 강서구 공향동 61-1와 82필지	11,484.0	◦ 송정역세권(500m)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2011.05.03. 적용)에 의거 기존의 노후한 저층 주택지를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 장기전세주택공급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임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1,484.0	-	11,484.0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8,026.0	감) 8,026.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3,458.0	감) 3,458.0	-	-	
	준주거지역	-	증) 11,484.0	11,484.0	100.0	

※ 측량성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비 고
		기 정	변 경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61-1와 82필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1,484.0	500% 이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2011.05.03. 적용)에 부합된 계획수립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고도지구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내용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고도지구	최고고도 지구	강서구 공항동 일대	수평표면 57.86m미만	-	1977.04.22	-

■ 시설보호지구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시설보호지 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강서구 공항동 일대	-	1977.04.22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 로	270	공항동 60-10	공항동 61-100	일반 도로	-	강서구고시 1994-22호 (94.04.28)	
변경	소로	3	1	6~8	국지도 로	270 (172)	공항동 60-10	공항동 61-100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가	6	국지도 로	83	공항동 67-28	공항동 66-37	일반 도로	-	-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관한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	소로 3-1	◦ 도로 변경 - 폭원 : 6m → 6~8m - 연장 : 확폭구간 연장 172m	◦ 원활한 차량 진출입 및 보차분리를 위한 일부구간 도로확폭
-	소로 3-가	◦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83m	◦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신설

나. 공공·문화 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	사회 복지 시설	어린이집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61-11번지 일원	-	증)732.24	732.24	-	지하3층~ 지상14층 공동주택 (비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회복지 시설	◦ 어린이집 신설 - 면적 : 중)732.24㎡	◦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인 어린이집을 자문의견(2016.03.07.)에 따라 비도시계 획시설인 공동주택 내에 입체적 시설결정을 통해 결정 하고자 함.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획 지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①	공향동 61-168번지 일대	10,650.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공향동 67-37번지 일대	833.2	도로
	계	-	11,484.0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①	공향동 61-1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	215% 이하 ◦ 기준용적률은 혼재지역(제2종7층, 제3종일반)으 로서 용도지역 면적에 따라 평균값 적용
			허용	399% 이하 ◦ 허용용적률까지 적용하지 못하여 399%이하로 결 정. (설계: 362.56%, 허용: 436.00%)
			상한	400% 이하 ◦ 사전자문(2016.03.07.)결과에 따라 용적률은 400%이하로 계획함.
		최고높이		48m 이하 ◦ 최고고도지구 수평표면 57.86m미만으로 제한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격하여 지정 -

④ 열람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 진행(업무추진)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주택과(☎02-2600-67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공고 제2022-18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호(1978.05.04.)” 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20-83호(2020.06.18.)” 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염창동 산30-71~20-100간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이 완료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서구 염창동 산30-71~20-100

나. 사 업 중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 업 명 : 염창동 산30-71~20-100간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라.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규 모 : 도로개설 (B=12.0m, L=170m)

마. 사업시행자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6층)

○ 성명 : 강서구청장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5년

사. 공사완료(도로개설) : 2022. 10. 6.

◆ 동작구공고 제2022-1631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상도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동 작 구 청 장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내역(상도도시자연공원구역)

연번	공원명	위치(소재지)	지목	부지사용계약면적(㎡)
		2필지		1,967
1	상도도시자연공원구역	상도동 산57-15	임야	1,591
2	상도도시자연공원구역	상도동 산57-98	임야	376

가. 계약목적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계약내용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다. 부지사용 계약일 : 2022. 9. 16.

라. 부지사용 계약기간 : 2022. 9. 16. ~ 2025. 9. 14.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4)

◆ 동작구공고 제2022-165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2019-284호(2019.8.29.)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고시 제 2020-60호(2020.06.04.)로 실시계획인가 되고, 동작구 고시 제2020-172호(2020.11.19.)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동작구 본동 산3-9번지 일대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3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3-9번지 일대
- 면 적 : 15,964㎡
- 내 용 : 공원조성(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지장물 1동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청 사무위임)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 (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동작구청 (변경없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2020. 06. 04. ~ 2021.12. 31.
- (변경) 2020. 06. 04. ~ 2023.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변경없음)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아. 열람장소 :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02-820-9846)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인 동작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 업 명 :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3-9	수도용지	14,367	14,36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369 /15448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47-2	985 /15448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47-2	4656 /15448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47-2	890 /15448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47-2	548 /15448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3-5	수도용지	400	4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3-8	수도용지	1,197	1,19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 업 명 :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또는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서울시 동작구 본동 7-1	무허가 건물	세멘조	183	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			

위 치 도



세부범위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4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국토안전관리원	경상남도 진주시 예나로 128번길 24	서울시계내 한강 (동호대교)	(선박2척) 353.64㎡	동호대교 정밀안전진단	' 22.10.04. ~ 12.30.	' 22.10.0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4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쥬동방	서울시 중구 통일로2길 16 3층	행주대교~잠실대교 인근 수상	(선박2척) 1,204㎡	서울도시철도 차량기지 연료전지 모듈 이송	' 22.10.11. ~ 11.30.	' 22.9.30.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45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광장티엔비	서울시 강동구 선사로6길 54	서울시계내 한강 (강서구 개화동657/강동구 고덕동 73-2번지상 한강)	(선박22척) 6,596.3㎡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 22.10.01. ~ ' 22.12.31.	' 22.10.0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46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청록환경 생태연구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15 921호	행주대교~잠실대교 인근 수상	(선박1척) 6.78㎡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평가 한강내 어류상 조사	' 22.10.04. ~ 10.07.	' 22.9.30.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47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내 한강 (성산대교)	(선박2척) 621.62㎡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공중비계 설치,철거)	' 22.10.05. ~ ' 22.12.31.	' 22.10.05.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49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라엔지니어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38	서울시계내 한강 (가양대교 인근)	(선박2척) 358.64㎡	대장~홍대 민간투자사업 지반조사	' 22.10.11. ~ 11.30.	' 22.10.0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5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청우기술(주)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41길 4	서울시계내한강 (행주대교~잠실대교 인근)	(선박1척) 8.56㎡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 22.10.13. ~ 10.31.	' 22.10.0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1905호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구 상암동 496-119번지상 한강)	(선박27척) 6,285.45㎡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 22.10.16. ~ ' 22.10.31.	' 22.10.06.
			(선박7척) 1,232.42㎡		' 22.10.01. ~ ' 22.10.31.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21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 1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시 관내 한강 L=41.5km
 - 면 적: (당초) 1,326,478㎡
(변경) 1,325,47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한강 르네상스 사업
 - 내 역: (당초) 한강습지공원 교량보행환경공사, 간이야구장, 자전거도로, 승강기 설치 등
(변경) 한강습지공원 교량보행환경공사, 간이야구장, 자전거도로, 승강기 설치 및 기존 풍납나들목 개선, 기허가된 나들목 2개소 제외
5. 점용기간: 2018.3.17. ~ 2023.12.31.
6. 공사기간: 2022.10.6. ~ 2023.6.30.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